

# 外國資本에 대한 課稅制度의 現況 및 改編方案

韓國租稅研究院

## 序 言

오늘날 경제활동의 환경이 國際化 時代를 거쳐서 世界化 時代로 급변함에 따라 대외무역보다 생산요소의 대외진출, 그 중 특히 資本의 國家間 移動이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본의 국가간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各國의 課稅制度를 개별 국가의 經濟的 利益의 極大化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선 외국인 투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 각국은 자국에 투자되는 기업의 稅負擔을 줄여주기 위한 각종 제도와 장치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또 해외진출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居住地國 稅負擔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추세에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外國人 投資를 되도록 많이 유치하기 위한 국가들의 노력에 초점을 두어 그러한 노력들이 올바른 정책수단의 선택과 더불어 과연 제대로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金裕燦 專門研究委員의 집필로 완성되었다. 또한 본 보고서를 발간하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수고가 많았는데 저자는 특히 자료제공에 협조하여 준 재무부 세제실 소득세과의 朴宰完 事務官(당시 국제조세과 근무)과 국제조세과의 吳世云 事務官 그리고 연구보고서 완성과정에서 많은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본인의 趙潤濟 博士, 安鍾錫 博士, 洪範教 博士, 梨花女大의 全周省 教授께 감사드리고 있다. 또 저자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도와준 본원 전산실 池星林 研究員과 자료의 정리 및 원고정리에 힘써 준 金勇周 研究員, 成周錫 研究員, 趙明熙 研究助員과 出版課 직원들의 노고에 진

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저자의 個人的인 見解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 둔다.

1994年 12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朴 宗 淇

# 目 次

I. 序 論 .....	11
II. 資本市場 開放과 外國資本에 대한 課稅制度 改編의 必要性	13
1. 우리나라의 外資導入政策과 資本市場 開放 日程 .....	13
가. 우리나라 外資導入政策의 基調와 變化 .....	13
나. 지금까지의 資本市場開放 推進現況과 向後 開放計劃 .....	14
2. 外國資本 流入의 形態別 推移 .....	18
3. 우리나라의 外國資本에 대한 課稅制度 改編의 必要性 .....	21
가. 外國資本에 대한 租稅支援의 必要性 .....	22
나. 外國資本에 대한 우리나라의 投資支援制度의 實效性 .....	25
III. 韓國의 外國資本에 대한 課稅制度 .....	27
1. 租稅條約과 國內法 .....	27
2. 우리나라의 租稅條約 締結現況과 租稅條約政策의 基本方向...	28
가. 우리나라의 租稅條約 締結現況 .....	28
나. 韓國의 租稅條約政策의 基本方向 .....	29
3. 租稅條約上의 外國資本에 대한 課稅制度 .....	32
가. 對象租稅 .....	32
나. 事業所得 .....	33
다. 配當所得에 대한 源泉地國 課稅의 制限 .....	37
라. 利子所得에 대한 源泉地國 課稅의 制限 .....	41
마. 讓渡所得 課稅 .....	46
바. 二重課稅 排除의 方法 .....	48

4. 國內法上の 外國資本에 대한 課稅制度 .....	50
가. 外國法人에 대한 課稅 概況 .....	50
나. 國內稅法에 規定된 外資導入에 대한 支援制度 .....	53
<b>IV. 開放化 時代의 企業課稅制度 改編方向 .....</b>	<b>59</b>
1. 우리나라의 現行 企業課稅制度에 대한 評價 .....	59
가. 有效租稅負擔率(課稅 前 資本收益率) 算出을 위한 모델 設定 .....	60
나. 比較對象 國家들의 外國法人에 대한 課稅制度 .....	68
다. 必要稅前收益率 算出 .....	77
2. 各種 投資支援制度의 投資支援效果 分析 .....	80
가. 法人稅率 引下의 支援效果 .....	80
나. 減價償却制度의 支援效果 .....	89
다. 投資支援金制度의 支援效果 .....	93
라. 租稅休日制度의 支援效果 .....	95
3. 綜合評價 및 向後 政策方向 .....	96
<b>V. 國際的 二重課稅 排除 方法에 대한 評價 및 改編方向 ...</b>	<b>99</b>
1. 國際的 二重課稅 排除 方法 .....	99
가. 國際的 二重課稅 排除 方法 .....	99
나. 國際的 二重課稅 排除 方法에 대한 評價의 準據 .....	101
2. 國際的 二重課稅 排除 方法에 대한 評價 .....	102
가. 公平性의 觀點에서 본 國際的 二重課稅 排除 方法 .....	102
나. 世界的 資源配分의 效率性 觀點에서 본 國際的 二重課稅 排除 方法 .....	105
다. 資本輸出國과 資本輸入國의 經濟的 利害 .....	112
3. 國際的 二重課稅 排除 方法에 대한 綜合的 評價 .....	114
<b>VI. 外國資本의 課稅와 關聯한 其他 問題點과 改編方案 .....</b>	<b>116</b>
1. 租稅條約政策의 問題點과 改編方案 .....	116

가. 租稅條約의 基本틀로서 OECD모델條約	116
나. 二重課稅 排除 方法의 基本으로 外國稅額 控除制度의 採擇	118
다. 固定事業場 歸屬事業所得 計算方法으로 歸屬主義의 採擇	119
라. 外國所得에 대한 租稅減免의 廢止나 看做外國稅額控除 制度의 擴大	119
마. 國內 證券讓渡에 대한 非課稅 規定	121
바. 租稅條約을 통한 租稅回避 防止	122
2. 現行 國內法上의 外國資本 課稅에 관한 其他 個別的인 問題點들	124
가. 人的對象의 判定基準	124
나. 固定事業場 關聯 課稅問題	127
다. 移轉價格 課稅制度	127
라. 使用料所得의 課稅에 관한 問題	129
마. 國內源泉所得 範圍의 不明確	130
바. 推計課稅에 관한 問題	130
사. 相互合議節次 進行中の 國內法上 權利救濟 節次の 進行	131
3. 現行 國內法上 未備된 外國資本 課稅規定	131
가. 過少資本規制	131
나. 國內外居住者에 대한 證券讓渡差益에 대한 資本利得 課稅의 衡平性 問題	132
다. 租稅條約의 精神에 違背되는 國內法 規定	133
<b>VII. 要約 및 結論</b>	134
〈參考文獻〉	143
〈附 表〉	147

## 表 目 次

〈表 II- 1〉 資本市場 開放計劃 要約 .....	16
〈表 II- 2〉 우리나라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 推移 .....	18
〈表 II- 3〉 外國人의 우리나라 株式市場 參與 推移 .....	19
〈表 II- 4〉 우리나라의 國際的 位置와 市場開放의 程度 .....	20
〈表 II- 5〉 外國人投資의 國民經濟的 位置(1992) .....	21
〈表 II- 6〉 外國人投資의 生産 및 附加價值 誘發 效果 .....	23
〈表 II- 7〉 實質金利 및 投資收益率(1981~91) .....	24
〈表 III- 1〉 租稅條約 締結現況 .....	28
〈表 III- 2〉 配當에 대한 制限稅率 .....	38
〈表 III- 3〉 配當所得에 대한 平均制限稅率 .....	40
〈表 III- 4〉 利子所得에 대한 制限稅率 .....	42
〈表 III- 5〉 利子所得에 대한 平均制限稅率 .....	45
〈表 III- 6〉 內國法人과 外國法人의 所得種類別 納稅義務 比較 ..	51
〈表 III- 7〉 外國法人에 適用되는 法人稅率 .....	51
〈表 III- 8〉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에 歸屬되지 않는 所得에 대한 法人稅率 .....	52
〈表 III- 9〉 外國法人에 대한 特別附價稅率 .....	53
〈表 III-10〉 外國人投資企業의 減免對象 所得 .....	54
〈表 IV- 1〉 一般投資分野 .....	70
〈表 IV- 2〉 特別投資分野 .....	72
〈表 IV- 3〉 一般投資分野에 대한 外生變數 .....	75
〈表 IV- 4〉 特別投資分野에 대한 外生變數 .....	76

〈表 IV- 5〉各國의 一般投資分野 必要稅前收益率 .....	77
〈表 IV- 6〉各國의 特別投資分野 必要稅前收益率 .....	79
〈表 IV- 7〉法人稅率과 一般投資分野의 必要稅前收益率 (閉鎖經濟下) .....	81
〈表 IV- 8〉法人稅率과 一般投資分野의 必要稅前收益率 (開放經濟下) .....	87
〈表 IV- 9〉法人稅率과 特別投資分野의 必要稅前收益率 .....	88
〈表 IV-10〉減價償却制度和 一般投資分野의 必要稅前收益率 ...	89
〈表 IV-11〉減價償却制度和 特別投資分野의 必要稅前收益率 ...	91
〈表 IV-12〉投資支援金과 必要稅前收益率(特別投資分野) .....	93
〈表 IV-13〉租稅休日制度和 必要稅前收益率(特別投資分野) .....	95
〈表 V- 1〉國際的 二重課稅 排除 制度의 比較 .....	101
〈表 V- 2〉國家의 損失과 國庫의 損失 比較 .....	104
〈表 V- 3〉純財政效果 I .....	109
〈表 V- 4〉純財政效果II .....	110
〈表 VI- 1〉外國人直接投資 規模와 內國人的 海外投資 規模 比較 .....	118
〈表 VI- 2〉우리나라의 外國企業에 대한 租稅減免 規模 .....	120

## 圖 目 次

[圖 IV-1] 限界資本收益率과 利子率에 의한 投資資本 決定 .....	84
[圖 VI-1] Treaty Shopping을 통한 租稅回避의 例 .....	122

## I. 序 論

최근 들어 國際間 資本移動의 制度的 障礙要因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국제간 상품교역 못지않게 資本의 移動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도적 장애요인이 줄어들면서 국제간의 자본이동은 각국의 資本所得課稅制度에 보다 더 민감한 반응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資本市場 開放이 더욱 加速化되면서 자본의 이동에 미치는 우리나라의 현행 과세제도의 經濟的 波及效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資本流出에 관한 문제와 資本流入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간의 租稅條約 締結過程이나 개별 국가가 課稅制度의 改編過程에서 직·간접적으로 자본교류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資本流出과 資本流入의 문제를 완전히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外國資本에 대한 課稅政策에 대해 주로 논의하되 우리 資本의 海外進出에 관한 문제도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정책과 상호 연관성이 있는 한도(특히 조세조약과 관련한 분야) 내에서 언급해 보기로 한다.

外國資本에 대한 課稅政策의 變化는 외국자본의 流入量과 流入形態, 그리고 그로부터의 租稅收入을 變化시킬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자본이 直接投資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그 유입량의 변화에 미치는 外國資本에 대한 課稅政策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그로부터의 조세수입의 변화에는 중점을 두지 않는다. 이는 조세수입보다는 外國資本이 우리에게 주는 技術移轉的, 巨視經濟的 效果가 더

큰 경제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우선 資本市場 開放과 外國資本課稅制度의 경제적 의미를 개괄한(제Ⅱ장) 뒤에 조세조약과 국내법으로 나누어서 韓國의 外國資本에 대한 課稅制度의 現況과 問題點(제Ⅲ장)을 특징지워 본다. 이어서 제Ⅳ장, 제Ⅴ장, 제Ⅵ장에서 우리나라의 外國資本에 대한 課稅制度의 問題點과 改編方案을 개방화 시대의 기업과세제도 개편방안, 이중과세 배제방법의 평가 및 개편방안, 그리고 기타 외국 자본 과세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편방안 등 부문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제Ⅳ장의 開放化 時代 企業課稅制度의 改編方案에서는 현행 제도 하에서 우리나라와 자본수출국, 그리고 자본수입 경쟁국가들과의 有效租稅負擔率(必要稅前收益率) 比較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投資支援制度의 實效性을 분석해 본다. 외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우리나라에 진출한 자본에 대하여 投資母國이 外國稅額控除制度를 통하여 二重課稅를 排除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음) 외국자본에 대하여 法人稅率을 인하하는 것보다 減價償却制度 등을 통한 투자지원이 실효성이 있다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제Ⅴ장에서는 國際的인 二重課稅 排除方法으로 사용되는 外國稅額控除制度和 外國所得免稅制度를 국제적 자원배분의 효율성, 국가간 공평성, 자본수출국의 경제적 이해 및 자본수입국의 경제적 이해라는 관점에서 상호 비교해 보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방법은 外國稅額控除制度라는 점에 대해 정책제안을 한다.

제Ⅵ장에서는 우리나라의 租稅條約政策과 기타 外國資本 關聯 問題點들을 정리해 보고 대략적인 개편방향만을 지적해 보는 것으로 의의를 두었다.

## II. 資本市場 開放과 外國資本에 대한 課稅制度 改編의 必要性

### 1. 우리나라의 外資導入政策과 資本市場 開放 日程

#### 가. 우리나라 外資導入政策의 基調와 變化

우리나라 外資導入政策은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라는 목표하에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외자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외자도입 방식을 차관위주에서 外國人直接投資와 證券投資 등으로 다양화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우리 경제의 규모확대 및 개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외국인투자를 중심으로 外資導入에 대한 規制의 緩和 및 自由化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제1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면서 1960년대 초반에는 외자의 도입을 통한 投資財源의 確保가 동 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었으며 특히 미국의 무상원조가 점차 감축됨에 따라 有償 外資의 導入을 양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적극적인 外資誘致政策을 추진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外資導入政策의 기조는 그간의 적극적인 外資誘致政策으로 商業借款의 導入이 크게 증가하여 차관기업의 부실화가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상업차관의 도입을 억제하는 대신 外國人直接投資를 擴大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산업과의 과도한 마찰이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稅制 및 勞務管理上의 惠澤을 제공하는 시책이 추진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우리경제는 제1차 석유과동의 충격을 벗어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세계경기의 회복과 중동지역에 대한 건설진출의 확대에 힘입어 1977년에는 經常收支가 처음으로 黑字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外資導入政策도 외자도입의 전과정에 걸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즉, 借款導入契約에 대한 事前申告制를 채택하여 정부가 외자사업에 대한 사전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現金借款과 조건이 불리한 資本財借款의 도입에 대한 規制를 크게 강화하였다.

1980년대에는 고도성장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정기조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그간의 政府主導型 經濟運用方式에서 탈피하여 民間主導型 經濟運用方式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自律化·開放化를 추진하였다. 이 가운데 외자도입정책도 관련법규와 제도를 통합 정비하고 外國人投資를 중심으로 외자도입에 대한 각종 規制를 合理的으로 緩和하는 등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데 역점이 두어졌다.

#### 나. 지금까지의 資本市場開放 推進現況과 向後 開放計劃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資本市場은 충분한 정도로 자유롭게 개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外國人直接投資 분야에서는 1984년 이래 外資導入法 施行令 改正을 통하여 종래의 外國人投資 許容業種 列舉方式을 制限業種 列舉方式으로 전환하고 외국인투자 허용비율을 철폐하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문호를 대폭 개방하였고 이후에 투자허용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987년에는 製造業의 경우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개방되었으나 서비스業의 경우에는 증권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늘리고 도소매업, 운송업, 금융보험업 등에 대한 개방폭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비스업의 전체적인 개방폭은 크지 않은 상태이다.

1992년 말에 정부는 外資導入法規를 改正하여 外國人投資時 申告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등의 勞動關係法을 위반한 외국인투자가가 재투자하는 경우 등에만 認可를 받도록 하여 外國人投資節次를 申告制로 전환하였다. 또 1994년 4월의 법개정은 다음의 경우에만 申告受理를 拒否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국가 및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경우,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의 보호를 위한 경우, 국제평화 및 안전과 관련된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 그리고 국민보건의 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sup>1)</sup>.

外國人證券投資 부문에서는 1991년 이전까지 外國人證券投資者(portfolio investor)에게 「코리아펀드」(Korea Fund), 「코리아유럽펀드」(Korea Europe Fund), 외국인전용 수익증권, 해외전환사채와 같은 海外發行證券 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한국의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는 단계에 있었고 1991년부터 비로소 外國證券會社の 國內支店 및 新規合作證券會社の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들이 전환사채 등 해외증권을 국내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轉換株式을 國內株式市場에서 매각한 대금으로 國內上場株式에 再投資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외국인의 直接證券投資를 허용하였다. 또 1992년부터는 일정 한도 내에서 일반 외국인의 직접증권투자를 허용하였다.

국내 자본시장 및 증권산업의 대외개방과 함께 정부는 內國人的 海外證券投資와 證券産業의 海外進出에 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국내증권산업과 기관투자자들이 해외시장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國際資本市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미 1988년

1) 입법예고된 外資導入法 改正案에 따라 경우 1995년 4월부터는 「윈스톱」서비스제도와 민원자동승인제 등의 도입을 통하여 외국인투자 관련 行政節次를 더욱 簡素化하고 있다.

7월부터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 機關投資家の 해외 증권투자를 허용하였으며 1991년부터는 一般法人의 해외 증권투자를 허용하였고 1993년부터는 一般個人에 대하여도 간접적인 해외증권투자를 허용하였다.

또한 증권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하여는 1989~90년 사이에 國內證券會社の 海外事務所 設置와 國際業務 取扱을 확대하고 1991년부터 國內證券會社の 海外支店 및 新規 合作證券會社の 設置를 허용하였다.

우리나라가 이미 시행하였거나 앞으로 시행할 資本市場 開放計劃은 <表 II-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자본시장 개방계획은 3段階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第1段階는 이미 시행이 완료되었으며 第2段階는 현재 시행중으로 1995년까지 마무리짓게 되어 있고 第3段階는 1996~97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表 II-1〉 資本市場 開放計劃 要約

	第1段階(~1993)	第2段階(1994~95)	第3段階(1996~97)
直接投資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를 원칙적으로 신고제로 전환(기초치)</li> <li>○ '외국인 투자개방예시계획' 마련</li> <li>○ 해외직접투자 절차 간소화 및 투자제한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개방예시계획'에 의거 개방업종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절차를 대폭 간소화</li> <li>○ 해외직접투자 절차 간소화 및 투자제한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투자의 신고제 정착</li> <li>○ 해외직접투자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자유화</li> </ul>
海外證券投資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투자자의 범위 및 투자한도 확대</li> <li>○ 수요에 맞추어 일반투자자의 투신사를 통한 간접투자를 확대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자유화</li> <li>○ 일반 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허용폭 확대</li> </ul>	

〈表 II-1〉의 繼續

	第1段階(~1993)	第2段階(1994~95)	第3段階(1996~97)
株式市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이상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 폐지(당해 기업 동의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 확대</li> <li>○ 국내거주자인 증권거래 법상 외국인의 주식투자시 내국민 대우(199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 확대</li> </ul>
債券市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구의 원화 채권발행 허용(1995)</li> <li>○ 주식연계채권 직접투자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CB(1994)</li> </ul> </li> <li>○ 금리수준이 국제금리와 유사한 국공채의 발행 시장인수 허용(1994)</li> <li>○ 채권형 펀드 허용(199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 직접투자 허용(1997)</li> </ul>
企業의 海外調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외화증권 발행을 신고제로 전환(기조치)</li> <li>○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연지급수입 기간 확대(기조치): 90일→120일</li> <li>○ 고도기술 수반 제조업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단기차입 허용(기조치) 및 대상기업을 고도기술 수반 서비스업으로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투자기업의 단기차입 허용 범위를 일반제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li> <li>○ 연지급수입기간 추가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수지, 내외금리차 등 경제여건 성숙에 맞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차관 허용</li> <li>· 연지급 수입기간의 국제 수준화</li> </ul> </li> </ul>

資料: 金融産業發展審議會 國際金融分科委員會, 『外換 및 資本去來自由化 推進方向』, 1993. 5. 10.

## 2. 外國資本 流入의 形態別 推移

國際間 資本移動은 크게 直接投資와 증권市場을 통한 포트폴리오 投資의 두 가지 形態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별로 우리나라의 外國資本 流入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2년에 시작된 우리나라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있어서 특정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政府의 規制를 받아 왔다. 따라서 <表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外國人直接投資는 총투자 기준으로 1962~66년간의 약 5천만달러에서 1977~81년간의 약 7억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外國人直接投資의 빠른 성장 속도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미흡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外國人直接投資가 198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 1982~86년간은

<表 II-2> 우리나라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 推移<sup>1)</sup>

(單位: 百萬달러, %)

	新 規 投 資		總 投 資 <sup>2)</sup>	
	規 模	增 加 率 <sup>3)</sup>	規 模	增 加 率 <sup>3)</sup>
1962~66	46.5		47.4	
1967~71	169.1	264.0	218.6	361.1
1972~76	610.5	261.0	879.4	302.3
1977~81	288.8	-52.7	720.7	-18.1
1982~86	686.9	137.8	1,767.7	145.3
1987~91	2,753.5	300.9	5,635.9	218.8
1992	328.0	-61.4	894.5	-35.9
1993	485.9	48.1	1,044.3	16.7
1962~93	5,369.3		11,208.6	

註: 1) 總認可 基準임.

2) 總投資는 신규투자와 투자증가분의 합계임.

3) 增加率은 1992년과 1993년이 전년대비, 그 밖의 기간들은 전기간 대비임.

資料: 財務部 經濟協力局, 『外國人投資動向』, 1994. 2. 28.

총투자 기준으로 약 18억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이전의 5년간에 비해 145.3%의 증가속도를 보였고 1987~91년간은 56억달러를 상회함으로써 218.8%의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sup>2)</sup>.

한편 우리나라의 證券市場 開放으로 인한 海外資本 流入規模도 급속히 불어나고 있다. <表 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개방된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外國人 株式投資는 순액 기준으로 개방 원년인 1992년<sup>3)</sup>에 20억달러를 상회함으로써 外國人直接投資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자본이 유입되게 되었고 1993년에는 약 57억달러를 기록, 前年對比 280.0%의 매우 급속한 增加速度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다 올해 7월 1일의 채권시장 개방으로 인한 해외의 우리나라에 대한 債券投資까지 감안한다면 海外資本의 流入이 보다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表 II-3) 外國人の 우리나라 株式市場 參與 推移

(單位: 百萬달러, %)

	1992年 末 現在	1993年 末 現在	
	規 模	規 模	增 加 率
總 流 入	2,716.1	7,639.3	281.3
債 還	681.5	1,942.8	285.1
純 額	2,034.6	5,696.5	280.0

資料: 韓國銀行 調査第2部 金融統計課.

이러한 海外資本 流入規模의 증가추세는 기본적으로 한국 증권시장의 높은 期待收益率에 기인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한국 경제의 國

2) 直接投資가 1980년대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急速한 經濟成長에 기인함은 물론 정부의 직접투자에 대한 規制緩和政策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Yoon Je Cho and Jong Seok An, "Transfer Pricing Regulations and the Practices of Foreign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Korea," Working Paper 94-03, Korea Tax Institute, May 1994).

3) 證券市場의 間接開放은 1981년부터 證券投資信託 形態로 이루어졌다.

際的 位置의 지속적 상승에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開放要求에 부응한 한국 정부의 점진적 개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商品交易에서의 不均衡 深化로 先進諸國들이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서비스産業(특히 金融産業)에 대한 개방압력이 높아졌고 우리나라 證券市場의 급속한 성장으로 국제 분산투자를 위한 韓國證券에 대한 需要가 증대함으로써 外國投資者의 證券市場 直接參與에 대한 開放과 證券業 參與 要求가 점증되어 왔다.

〈表 II-4〉 우리나라의 國際的 位置와 市場開放의 程度

	1980	1988	1992	1993
GNP(億달러) <sup>1)</sup>	603	1,822	3,079	3,308
1人當 GNP(달러) <sup>1)</sup>	1,589	4,295	7,007	7,466
交易規模(億달러) <sup>2)</sup>	398	1,125	1,584	1,660
交易의 世界市場 占有率(%)	1.05	1.94	2.2	..
輸出	0.94	2.14	2.1	..
輸入	1.16	1.76	2.1	..
輸入自由化率 <sup>3)</sup> (%)	68.6	96.3	97.7	98.1
外國人直接投資 自由化率 <sup>4)</sup> (%)	49.9	78.9 <sup>6)</sup>	81.7	85.1 <sup>8)</sup>
外換自由化(IMF)	제14조국 <sup>5)</sup>	제8조국 <sup>7)</sup>	제8조국 <sup>7)</sup>	제8조국 <sup>7)</sup>
證券市場規模(時價總額:億원) (世界順位)	25,266 (22위)	645,437 (10위)	847,120 (14위)	1,126,653 (10위권)

註: 1) 1984年 以前은 1985年 基準年, 1985年 以後는 1990年 기준年 개편결과임.

2) 通關基準임.

3) 品目基準임.

4) 外國人直接投資 自由化率은 각 연도 말 현재 外國人總投資業種(在外業종 제외)의 수에서 申告對象業種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5) IMF協定 第14條: 어느 정도 外換制限을 계속하는 것이 인정됨.

6) 1989年.

7) IMF協定 第8條: 外換制限의 撤廢義務. IMF의 승인 없는 국제수지의 경상지급에 대한 외환제한 철폐, 차별적 통화조치 철폐, 외국보유 자국통화잔액에 대한 교환의무를 짐.

資料: 南相祐 外, 『資本市場開放의 推進方向』, 韓國開發研究院, 1991, p. 4.

財務部, 『財政金融統計』, 1993. 8.

韓國證券去來所, 『證券統計年報』, 1992.

關稅廳 및 財務部 內部資料.

世界各國의 外國人投資 政策을 비교해 보면, 영국 등 先進國은 외국인투자 정책을 고용안정 및 선진국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 비해 中國 및 아세안國家들은 국내기업이 육성되지 아니한 여건에서 外國人投資를 國策事業으로 추진하여 양적 성장을 지향함으로써 이를 産業近代化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그 규모나 GNP대비 비율면에서 외국인투자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表 II-5>를 보면 우리나라의 外國人投資 規模는 1992년 현재 9억달러로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아세안국가들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外國人投資의 GNP對比 比率을 고려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0.3%를 기록함으로써 외국에 비하여 미미한 실정이다.

(表 II-5) 外國人投資의 國民經濟的 位置(1992)

(單位: 億달러, %)

	韓國	英國	中國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日本	臺灣
外國人投資規模	9	258	581	21	35	69	41	15
GNP 對比 比率	0.3	2.5	13.3	4.3	3.9	13.3	0.1	0.7

註: 認可 基準.

資料: 鄭德龜, 「外國人 投資誘致 基本戰略」, 外國人 投資環境 改善方案에 관한 討論會 發表資料, 1994. 5. 19.

### 3. 우리나라의 外國資本에 대한 課稅制度 改編의 必要性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資本流出入의 급격한 변동을 통하여 安定的인 換率管理 및 通貨管理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또 「핫머니」(Hot-Money)의 급속한 유출입으로 인해 국내경제는 커다란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資本去來 自由化의 추진과정에서는 우선 資本移動이 급속히 이루어지지 않도록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어야 하며 또 자본거래 규모가 증대되고 韓國이 기존의 資本輸入國의 立場에서 資本輸出國의 立場도 아울러 지니게 됨에 따라 종래에 자본수입국으로서 外資導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의 外國資本에 대한 課稅制度를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외국자본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제도가 제공하는 租稅支援의 實效性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국자본에 대한 課稅制度의 改編方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 가. 外國資本에 대한 租稅支援의 必要性

##### 1) 外國資本導入의 國民經濟的 效果

外國資本의 導入을 통하여 경제성장, 고용촉진, 기술이전, 국제수지 등의 國民經濟的 效果를 볼 수 있으나 그 중 經濟成長 效果만을 논한다면 1981~91년 사이에 外國人投資에 의해 유발된 우리나라의 總產出額은 약 2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附加價値誘發額은 총 6,700억원 추정)되며, 業種別로는 製造業이 전체 생산유발액의 80%, 서비스業이 전체 생산유발액의 20%를 차지하였다.

##### 2) 外資導入의 得失

양적인 국민경제적효과 이외에도 外國人投資는 經營技法과 技術을 가진 企業의 新規投資로써 투자국에 여러 가지 형태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가) 投資國 內의 企業·産業·消費者에 대한 影響

外國人投資 開放으로 새로운 企業의 進入은 어떤 국내기업이나 집단에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나고 또 다른 국내기업이나 집단에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또 長短期에 걸쳐서 利害得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表 II-6〉 外國人投資의 生産 및 附加價値 誘發 效果

(單位：百萬圓)

		1981~84	1985~87	1988~91	1981~91
生産 誘發效果	全 産 業	345,228	1,282,881	1,152,376	2,780,486
	農林水産業	416	3,214	1,580	5,210
	製 造 業	318,243	885,746	1,022,604	2,226,593
	서 비 스 業	25,325	387,591	127,774	540,690
附加價値 誘發效果	全 産 業	82,765	235,443	353,502	671,710
	農林水産業	34	555	388	977
	製 造 業	69,420	145,791	297,819	513,030
	서 비 스 業	12,948	87,126	55,173	155,240

資料：財務部·韓國産業銀行, 『韓國外資導入 30年史』, 1993.

既存 個別·國內企業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同種産業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經營技法 및 技術習得을 통한 國內企業의 效率性 提高效果가 있다. 외국인투자 개방으로 인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은 이와 같이 개인적 시각인 기업의 이익과 국민경제적 시각에서의 산업의 이익간에는 차이가 있으나 外國人投資政策에 있어서는 기업이이익이라는 시각보다는 産業의 發展이라는 시각이 좀더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外國人投資는 소비의 폭을 넓혀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기존 국내기업과의 경쟁촉발로 서비스, 품질의 향상 및 가격의 인하를 가져옴으로써 全體 消費者의 厚生에는 일반적으로 肯定的인 效果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나) 國內 競爭構造에의 影響

外國人直接投資는 시장에서 경쟁자의 수를 늘린다는 측면에서 일단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갖지만, 外國人投資企業의 시장력, 규모, 시장행동의 형태에 따라 경쟁을 저해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 外國人

直接投資에 國內競爭 促進 效果로는 시설확장 효과, 당해 업종에 국내기업이 없는 경우 수입대체 효과 및 무역수지개선 효과, 資源配分の 효율성 제고 및 선진 생산기법 도입 등 긍정적 효과를 들 수 있으며 또한 競爭沮害 效果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기술혁신의 사전차단, 다국적기업의 경제력 남용으로 개별국가의 경제교란의 발생이 가능하며 間接的 效果로 투자국에 과다투자로 인한 시장압도 및 다국적기업의 진출로 국내기업간 결함을 자극하고 국제적 수직결합으로 市場進入 障壁을 강화할 수도 있다.

### 3) 外國資本에 대한 投資支援制度의 必要性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外國人投資를 필요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表 II-7>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投資收益率은 美國, 日本, 獨逸, 英國 등에 비해 아직 훨씬 높은 수준이므로 많은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투자됨으로써 여전히 자본의 國際的 效率性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持續的인 經濟成長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表 II-7) 實質金利 및 投資收益率(1981~91)

(單位: %)

	韓國	日本	美國	英國	獨逸
實質株價收益率	18.0	12.6(-5.4)	8.3(-9.7)	7.8(-10.2)	10.7(-7.3)
實質會社債收益率	10.4	4.8(-5.6)	7.8(-2.6)	6.1(-4.3)	5.8(-4.6)
實質金利	4.8	3.7(-1.1)	6.2( 1.4)	2.6(-2.2)	4.6(-0.2)

註: 年平均收益率 基準임. ( ) 안은 우리나라 金利(收益率)와의 차이임.  
資料: 韓國證券去來所, 『主要 證券·經濟 統計』, 1992.

그러나 外國資本에 대한 投資支援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外國과의 投資收益率의 隔差를 더 크게 해줌으로써 資本流入을 도와주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외국자본을 필요로 한다

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外國資本에 대한 投資支援의 必要性에 관한 문제는 모든 투자분야나 혹은 전체 제조업과 같이 넓은 범위에 대한 투자지원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戰略高度技術部門에 대한 투자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인데 後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존재함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지원을 통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려 하는 경우 한국의 劣惡한 租稅外的 要因(임금수준, 이자비용) 때문에 아주 강력한 稅制上的 誘引動機를 주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분야의 외국자본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國內企業과의 不均衡, 國內租稅體制의 混亂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租稅支援을 통한 外資誘致는 이미 우리가 넘어서야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外國資本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戰略高度技術部門에 한정시키고 있다<sup>4)</sup>.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外國資本에 대한 支援制度를 전체 제조업이나 모든 투자분야로 그 支援對象의 幅을 넓혀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으나 여기서는 그에 대한 논의보다 우리나라가 제공하고 있는 戰略高度技術部門에 대한 投資支援의 實效性에 관한 논의로 이어가기로 한다.

#### 나. 外國資本에 대한 우리나라의 投資支援制度의 實效性

國內進出 外國企業에 대한 租稅優待는 외국자본의 투자유인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제공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각종 감면제도가 外國資本의 誘致에 實效性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외국자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政策手段別로 본다면 國內法上的

4) 外投企業에 대한 所得稅·法人稅의 減免(租稅休日制度)은 83개 고도기술부문 업종과 수출자유지역에 투자된 외투기업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租稅休日制度, 利子所得에 대한 減免, 資産再評價 그리고 租稅條約을 통한 看做外國稅額控除制度가 있다. 또 法定法人稅率을 年次的으로 引下함으로써 外國자본에 대한 유인동기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이들 정책수단 중에 조세휴일제도와 법정법인세율의 인하는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法定法人稅率의 引下와 租稅休日制度는 제Ⅳ장에서 보게 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投資를 促進시켜주지 못하고 이러한 방향의 세제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外國자본의 투자소득에 대한 租稅優待가 外國기업에게 유인효과를 가지기 위하여서는 감면혜택이 當該 投資企業에 歸屬되어야만 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감면된 소득이 본국에서의 과세에 있어서도 看做稅額控除制度(tax sparing credit system) 등으로 세액공제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의 租稅減免 效果가 나타난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감면된 소득이 본국에서 稅額控除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租稅收入의 外國移轉 현상만 나타나고 조세감면의 투자유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49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 중에서 35개국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看做外國稅額控除制度를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자본을 수출하는 나라 중 대표적인 나라인 美國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Ⅵ장의 〈表 VI-2〉에서 보게 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미국계 기업에 제공하는 매년 200억 이상 규모의 租稅減免이 투자유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稅收損失만 감수하게 되는 규모이다.

### Ⅲ. 韓國의 外國資本에 대한 課稅制度

#### 1. 租稅條約과 國內法

해외자본의 국내경제활동과 관련되는 법제도로써 국가간의 이중과세 배제를 위해 체결되는 租稅條約과 국내법으로는 法人稅法, 所得稅法 그리고 租稅減免規制法이 있으며 세법 이외에는 外資導入法 등이 있다. 자본의 국제간 거래에 관련된 관련법규 중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租稅條約이며 국내법으로는 외국법인과 외국인의 과세를 내국인, 내국법인과 과세의 형평을 견지하기 위하여 法人稅法 第4章에서 ‘外國法人의 各 事業年度의 소득에 대한 法人稅’(제53조~제59조)를 규정하였고, 所得稅法에서는 第3章에 ‘非居住者의 納稅義務’(제134조~제141조)를 규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外資의 導入이 절실하였던 만큼 외자를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外資導入法과 租稅減免規制法에 많은 과세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왔다. 따라서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인투자기업에 과세하기 위하여서는 위에서 언급한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租稅條約의 規定과 국내법상의 규정의 내용이 상치되는 경우<sup>1)</sup> 特別法 優先의 原則<sup>2)</sup>에 따라 海外資本에 대한 과세에 관해서 조세조약

1) 예를 들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制限稅率이 차이가 난다

2) 美國은 新法優先의 原則이 적용된다. 즉, 어떤 나라와의 조세조약이 이미 존재하더라도 국회가 이 조세조약의 규정과 상치되는 내용의 국내법을 새로 제정하는 경우 時間的으로 뒤에 제정된 新法의 規定이 優先한다.

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조세조약에 해당규정이 없는 경우 國內法이 적용된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課稅原則, 課稅權의 配分, 課稅對象 및 稅率 등에 대하여 포괄적인 규정만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조세조약의 규정이 실제 집행가능하기 위하여서는 施行에 관한 具體的 節次가 마련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租稅條約의 施行에 필요한 제도가 不備하여 집행에 곤란한 경우가 있다<sup>3)</sup>.

## 2. 우리나라의 租稅條約 締結現況과 租稅條約政策의 基本方向

### 가. 우리나라의 租稅條約 締結現況

1994년 11월 26일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租稅條約은 施行國이 39개국, 署名國이 5개국 그리고 假署名國이 7개국으로서 총 51개국과 조세조약 관계를 맺고 있는바, 이들은 <表 III-1>과 같다.

<表 III-1> 租稅條約 締結現況

(1994.11.30 現在)

旅 行 國 (39個國)			
일	본 ('70.10.29)	태	국 ('77.10.12)
영	국 ('78. 5.13)	덴	마 크 ('79. 1.17)
미	국 ('79.10.20)	캐	나 다 ('80.12.19)
싱	가 포 르 ('81. 2.11)	네	덜 란 드 ('81. 4.17)
핀	란 드 ('81.12.23)	스	웨 덴 ('82. 9. 9)
		독	일 ('78. 5. 4)
		벨	기 에 ('79. 9.19)
		프	랑 스 ('81. 2. 1)
		스	위 스 ('81. 4.22)
		말	레이시아 ('83. 1. 2)

3)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서 국내법을 전제로 할 것을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적용될 國內法 規定이 未備되어 있는 경우 문제가 되는 租稅條約 規定이 적용되지 않는다.

〈表 III-1〉의 繼續

旅 行 國 (39個國)		
뉴질랜드('83. 4.22)	호 주('84. 1. 1)	노르웨이('84. 3. 1)
방글라데시('84. 8.22)	터 키('84. 3.27)	스리랑카('86. 6.20)
인 도('86. 8.31)	필 리 핀('86.11. 9)	룩셈부르크('86.12.26)
파키스탄('87.10.20)	오스트리아('87.12. 1)	인도네시아('89. 5. 3)
튀니지아('89.11.25)	헝 가 리('90. 4. 1)	브 라 질('91.11.21)
에 이 레('91.12.27)	폴 란 드('92. 2.21)	이탈리아('92. 7.14)
몽 골('93. 6. 6)	이 집 트('94. 2. 6)	베 트 남('94. 9. 9)
중 국('94. 9.28)	루 마 니 아('94.10. 6)	스 페 인('94.11.21)
署 名 國 (5個國)		
체 코('92. 4.27)	러 시 아('92.11.19)	멕 시 코('94.10. 6)
슬로바키아('92. 4.27)	불 가 리 아('94. 3.11)	
假 署 名 國 (7個國)		
모 로 코('78. 3.16)	포 르 투 갈('93. 7.16)	쿠 웨 이 트('94. 6. 9)
나이지리아('88.10.13)	그 리 스('93.12. 9)	
피 지('92. 7.23)	몰 타('94. 3.11)	

註：( ) 안은 서명일자임. 署名國이란 정부대표에 의해서 條約案이 서명되었으나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치지 않아 발효되지 않은 조약의 상대국을 말하며, 假署名國이란 실무대표단에 의해 조약안의 내용은 확정되었으나 아직 정부대표에 의해서 서명되어지지 않은 條約의 相對國을 말함. 조약이 의회의 비준을 얻게 되면 條約相對國은 批准書를 교환하게 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資料：財務部 稅制室 國際租稅課.

### 나. 韓國의 租稅條約政策의 基本方向

#### 1) 1970年代의 租稅條約政策

지난 1960년대 및 1970년대에 한국경제가 질적·양적인 면에서 이룩한 괄목할 만한 고도성장은 外國의 先進技術과 資本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經濟政策에 힘입은 바 크다. 대외 지향적 성장위주 경제정책에 따라 1970년대의 韓國은 경제성장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外資의 圓滑한 誘致를 위하여 선진국과의 租稅條約 締結에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1970년 3월 3일 서명된 韓·日租稅條約을 시초로 하여 美國, 獨逸, 英國, 덴마크,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등과의 조세조약이 1970년대에 체결되어 外資導入政策에 기여한 바가 크다.

1970년대에 체결된 이러한 선진국들과의 조세조약은 二重課稅 排除에 의한 租稅障壁 緩和로 외국의 자본 및 기술도입을 촉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OECD모델租稅條約<sup>4)</sup>을 근간으로 하여 체결되었으며 所得源泉地國의 課稅權을 상당히 制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2) 1980~90年代의 租稅條約政策

### 가) 租稅條約政策의 方向轉換 必要性

우리나라의 課稅權을 축소함으로써 선진기술 및 자본의 도입촉진을 목표로 하였던 1970년대의 先進國 一邊倒의 租稅條約政策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方向轉換의 背景으로는 資源保有國들의 資源民族主義 경향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들 국가에 合作投資나 지사 등의 형태로 직접 진출하여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開發·輸入하여야 할 필요성이 增大되고

---

4) 租稅條約은 兩國에서 각기 작성한 서로 다른 草案을 토대로 협상을 거쳐 하나의 案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兩國은 실무자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상대국에게 自國草案을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오늘날 세계각국은 OECD모델條約과 UN모델條約을 자국의 경제현실이나 이익에 맞도록 수정하여 自國의 租稅條約草案 또는 모델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20년대부터 계속되어 온 租稅條約의 모델化作業은 현재 OECD모델條約과 UN모델條約으로 집대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自國草案을 작성함에 있어서 해외 진출이 많은 선진국들은 OECD모델條約을 주로 활용하며, 이와 반대입장에 있는 후진국들은 상대적으로 源泉地國課稅權이 OECD모델條約보다 확대되어 있는 UN모델條約을 自己草案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모델條約은 각국이 自國草案을 작성함에 있어서 자국의 입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며 先進國들의 保護貿易主義 強化로 迂廻輸出을 위하여 이들 나라에 현지법인의 형태로 진출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는 등 우리나라의 商品, 技術, 資本의 對外進出 必要性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租稅障壁 緩和 및 課稅上의 紛爭豫防 必要性이 증가하게 된다. 즉, 조세조약의 상대국으로서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자원보유국들도 고려대상이 되었고 韓國은 資本輸入國뿐만 아니라 資本輸出國의 입장도 가지게 되었다.

나) 1980~90年代의 政策方向

(1) 資源保有國과의 租稅條約 優先締結

우리나라는 資源이 빈약한 국가이므로 資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이 經濟政策의 주요과제이다. 따라서 資源保有國과의 租稅條約을 체결함으로써 과세장벽을 완화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미 상당수의 資源保有國들과의 租稅條約이 發效中에 있으나 최근 쿠웨이트와의 조세조약이 假署名된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 中東地域 國家들과의 조세조약은 체결되지 않고 있다.

(2) 開發途上國과의 租稅條約締結에 力點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高度成長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輸出增大 및 海外市場 確保가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經濟關係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國家와의 租稅條約을 역점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우리 상품, 기업 및 인력진출을 租稅面에서 지원할 것이 요청된다. 특히 최근에는 東歐圈 國家들과 국교가 정상화되고 직·간접 교역 및 기술교류 등 경제관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東歐國家들과의 租稅條約은 署名되어 있는 단계이며 舊蘇聯聯邦의 개별 국가들과의 조세조약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

(3) 租稅條約의 早期締結

開發途上國들의 源泉地國 課稅原則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

므로 현실적인 필요성이 없더라도 장래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와는  
 早期에 租稅條約을 締結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租稅條約締結을 기피하거나, 협  
 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相對國의 立場을 一部 受容하는 水準(상대  
 국의 이미 체결된 조약 중 가장 유리한 수준 또는 우리나라와 競爭  
 關係에 있는 國家와 相對國間에 맺은 水準)에서 早期妥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4) 適正水準의 租稅收入 確保

1990년대에는 租稅條約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과 새롭게 조  
 세조약을 체결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어야 하겠으나, 그 동안의 國內  
 稅制 및 經濟與件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오래 전에 체결된 先進  
 國과의 租稅條約을 면밀히 분석하여 改正하는 작업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先進國들과 이미 체결된 租稅條約을 改正하는 경우에는 所得發生  
 地國의 課稅權을 적정수준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租稅條約上 源泉地  
 國의 課稅權 縮小가 외자도입촉진 및 외자도입조건 개선에 반드시  
 기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外資導入에 逆作用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非居住者의 所得을 적절한 수준에서 과세하는 방향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정 조세수입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이다.

### 3. 租稅條約上의 外國資本에 대한 課稅制度

#### 가. 對象租稅

租稅條約은 國際的 二重課稅<sup>5)</sup>를 배제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므  
 로 消費地 課稅原則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중과세가 발

5) 國際的 二重課稅의 개념과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제 V장에서 자세히 설명하  
 기로 한다.

생되지 아니하는 間接稅 分野에는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直接稅에 관한 租稅條約은 所得 및 資本에 관한 租稅條約과 相續 贈與에 관한 租稅條約으로 대별되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은 前者에 해당된다.

조세조약에서는 兩 締約國이 자본소득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조세를 구체적으로 列擧하고 있다. 이 列擧된 稅目으로 인하여 兩 締約國에서 資本所得이 二重課稅되는 것을 조세조약을 통하여 조정하는 것이다.

그 동안 체결한 租稅條約에서 우리나라는 韓國의 對象租稅로 所得稅, 法人稅 및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防衛稅와 住民稅를 규정하고 있다. 즉, 총 49개국과 서명한 한국의 조세조약 중 조세조약의 대상조세로서는 거의 모든 조세조약에 所得稅, 法人稅, 住民稅, 防衛稅 등 4가지 稅目이 언급되어 있다. 예외로는 美國, 캐나다, 필리핀, 스리랑카 등과의 4個 租稅條約에 住民稅가 빠져 있는 것과 최근에 맺은 이집트, 폴란드, 몽골, 체코, 슬로바키아, 러시아, 中國, 베트남 등과의 租稅條約에 防衛稅가 빠져 있는 것이다. 이들 租稅條約 중 이집트와의 조세조약에는 防衛稅 대신 教育稅가 규정되어 있다.

#### 나. 事業所得

##### 1) 歸屬主義 課稅原則

우리나라는 非居住者에 대하여 國內 源泉所得에 대하여만 課稅權을 갖는다.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만이 國內 源泉所得에 해당되어 韓國에서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세조약에서는 사업소득에 관하여 歸屬主義 課稅原則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의 원천이 국내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固定事業場에 歸屬되는 所得은 同 事業場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國內 源泉所得일지라도 국내 소재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사업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sup>6)</sup>. 이는 兩締約國間의 經濟交流을 조세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논리적 근거는 一方締約國의 기업이 他方締約國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당해 他方國의 課稅權을 적용받을 만큼 他方國의 경제활동에 깊이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一方締約國은 비거주자가 固定事業場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課稅權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비거주자의 課稅所得 計算基準은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歸屬主義와 귀속여부를 불문하고 동 국가(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비거주자의 모든 소득이어야 한다는 總括主義로 구별된다.

歸屬主義란 一方締約國의 기업이 他方締約國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득에 한하여 固定事業場 所在地國에서 과세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국내지점과 실질적인 관련없이 외국에 있는 본점이 직접 내국법인에게 상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우리나라에서 課稅對象이 되는 國內源泉所得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總括主義는 一方締約國의 기업이 他方締約國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同 固定事業場에의 귀속 여부를 묻지 않고 他方國에서 발생한 당해 기업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他方國이 課稅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예컨대 외국기업이 상대국에 있는 固定事業場을 통하여 판매한 거래와 외국기업의 본사가 상대국의 고객에게 직

6) 국내세법상 非居住者의 事業所得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2%로 源泉徵收 分離課稅되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租稅條約에서는 국내에 非居住者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課稅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하나의 一般化된 國際的 課稅原則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들도 이와 같은 과세원칙에 따라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非居住者는 국내세법상 규정에 불구하고 非課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접 판매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물론이며, 본사가 상대국에 直接 投資하거나 貸付한 出資額 또는 貸付金으로부터의 配當과 利子 까지도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에서 固定事業場에 총괄하여 課稅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맺은 대부분의 租稅條約은 非居住者의 課稅所得 計算 基準에 있어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歸屬主義原則을 택하고 있으나 日本 및 인도네시아와 맺은 조약에서는 總括主義를 택하고 있어서 OECD기준에 비추어서 國內課稅對象 事業所得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 2) 獨立企業間 價格原則

租稅條約과 국제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칙 중의 하나로서 獨立企業間 價格原則(arm's length principle)이 있다. 이 원칙은 固定事業場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本店과 子會社를 완전히 獨立된 企業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基本原理를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日本과의 조세조약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課稅原則을 채택하고 있다<sup>7)</sup>. 경제적으로 볼 때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일부분이므로 본점과 지점의 거래는 內部去來이며, 따라서 兩者間에는 獨立性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恣意的인 造作을 통하여 租稅回避를 도모할 수가 있다. 獨立企業間 價格原則은 이러한 자의적인 조작을 방지함으로써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합리적 이윤을 결정하려는 것이다.

### 3) 固定事業場 關聯 課稅制度

外國法人의 國內事業所得은 그 외국법인이 國內에 固定事業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固定事業場에 관한 韓國의 政策은 주로 우리나라에 진출하고 있는 선진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고정사

7) 韓·日租稅條約은 본점과 지점을 一體로 보는 總括主義를 채택하고 있어 同原則이 규정되지 않았다.

업장의 범위를 넓게 규정함으로써 외국기업에 대한 課稅權을 擴大하는 것인 반면에, 우리나라가 주로 진출하고 있거나 진출할 것이 예상되는 資源保有國이나 後進國과의 租稅條約에서는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가급적 축소하여 우리 기업을 相對國의 課稅權으로부터 保護하는 것이다.

#### 가) 固定事業場의 例示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도 固定事業場이 될 수 있는 장소로 OECD모델조약이나 UN모델조약에서 열거된 事業場所들을 예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참고(日本, 泰國, 美國 등과의 조약), 농업용·목축업용·임업용 토지(濠洲와의 조약), 농장 또는 플랜테이션(말레이시아, 스리랑카와의 조약) 등을 추가로 예시하고 있는 조약도 있다. 우리나라의 고정사업장 관련규정이 외국에 비해 固定事業場의 概念을 擴大解釋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法人稅法에 규정된 固定事業場에 대한 정의이며 우리나라가 맺은 조세조약들에서는 특별히 외국에 비해 무리하게 固定事業場을 擴大 規定하고 있지 않다.

#### 나) 建設工事

우리나라는 租稅條約에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建設工事의 期限으로 대부분 6個月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OECD모델보다 건설공사와 관련된 固定事業場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는 UN모델조약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 다) 看做固定事業場(從屬代理人)

OECD모델조약 및 UN모델조약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租稅條約에서도 獨立代理人(independent agent)은 固定事業場의 範圍에서 除外하고 從屬代理人은 固定事業場의 範圍에 包含시킴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韓國이 외국으로부터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OECD모델조약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받는 것은 國稅廳의 慣行에 관한 지적이며 韓國이 맺은 租稅條約의 從屬代理人 關聯規定은 OECD모델조약의 내용과 같은 것이다.

#### 다. 配當所得에 대한 源泉地國 課稅의 制限

配當所得에 관한 租稅條約의 條文은 同 所得에 대한 課稅권을 源泉地國과 居住地國間에 互히 配分할 事인가를 規定하고 있다<sup>8)</sup>. 일반적으로 租稅條約은 源泉地國과 居住地國 中 어느 한 國家에만 不利益을 與할 事 없다는 點을 強調하여 課稅권을 兩 國家에 配分하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 즉, 源泉地國(資本輸入國)에 對하여는 外國投資家의 配當所得에 對하여 國內稅率 稅率보다 낮은 稅率로 課稅하도록 制限(制限稅率)하는 한편, 居住地國에 對하여는 源泉地國에서 課稅된 當해 配當所得에 對하여 稅額控除 方法이나 所得免除 方法에 의하여 二重課稅를 排除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지國의 課稅권도 일부 축소하고 있다.

따라서 配當所得과 關連하여 租稅條約에서 가장 重要한 內容은 源泉地國에서 配當所得을 多少로 課稅할 事인가의 問題, 即 制限稅率의 水準과 거주지國에서 同 所得에 對하여 二重課稅를 如何히 排除할 事인가의 問題, 即 二重課稅 排除 方法의 問題로 歸納된다. 租稅條約은 後者의 場合 二重課稅의 排除에 關한 條文에서 다루고 있으며 前者에 對하여만 配當所得에 關한 條文에서 說明하고 있다<sup>9)</sup>.

8) 配當所得에 對한 課稅問題는 締約當事國間의 資本 및 技術交流 狀況에 민감하게 影響을 받는다. 經濟發達 水準이 비슷하고 資本교류도 대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先進國 상호間에 條約을 맺는 場合에는 兩國間 經濟교류 증진을 爲하여 源泉地國의 課稅權을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 容이하다. 先進國間 租稅條約의 場合에는 원천지國의 課稅권 축소가 어느 一 國家에게만 惠택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兩國의 國益에 부합되므로 租稅條約 체결시에 크게 問題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先·後進國間 租稅條約의 場合에는 兩國間 利害關係가 상호 복잡하게 얽혀 있어 合點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해결하여야 할 重要한 課題는 이와 같은 兩國間 立場, 即 自國企業의 對外進出을 促進하는 先進國과 外國인투자 의 유치 및 適正 租稅收入의 確保라는 開發途上國의 상반된 立場을 如何히 조정할 事인가가 問題이다.

9) 租稅條約상 配當에 對한 制限稅率을 法人間 配當과 其他 配當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OECD모형條約」에서는 모회사가 25% 以上 소유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配當을 법인간 配當으로 보고 同 配當에 對하여는 지급액의 5%, 기타 配當에 對하여는 15%를 限度로 課稅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UN모형

우리나라가 그 동안 체결한 租稅條約上 配當에 대하여 源泉地國에서 과세할 수 있는 稅率의 限度는 <表 III-2>와 같다.

<表 III-2> 配當에 대한 制限稅率<sup>1)</sup>

(1994.6.30 現在)

番號	締約國	制限稅率 (%)	
		法人間配當(最小資本所有比率) <sup>2)</sup>	其他配當
1	日本	12 15(10% 이상 소유)	12
2	泰國 <sup>2)</sup>	20(25% 이상 소유)	25
3	美國	10(10% 이상 소유)	15
4	덴마크	15	15
5	캐나다		
6	벨기에		
7	노르웨이		
8	홍콩		
9	뉴질랜드	10(10% 이상 소유)	15
10	英國		
11	獨逸		
12	프랑스		
13	싱가포르		
14	네덜란드	10(25% 이상 소유)	15
15	스위스		
16	핀란드		
17	스웨덴		
18	말레이시아		
19	스리랑카	15(20% 이상 소유)	20
20	룩셈부르크		
21	인도		
22	방글라데시		
23	필리핀		
24	터키	10(10% 이상 소유)	25
25	파키스탄	10(10% 이상 소유)	25
		15(25% 이상 소유)	20
		10(20% 이상 소유)	12.5

協約에서는 자본금을 10% 이상 소유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배당을 法人間配當으로 규정하고 있다. 外國母會社(foreign parent company)가 子會社(subsidiary)로부터 받는 法人間配當은 여러 단계에서 重複課稅(recurrent taxation)되기 때문에 법인간 배당에 대하여는 其他配當보다 低率로 과세함으로써 국가간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表 III-2)의 繼續

番號	締約國	制限稅率 (%)	
		法人間配當(最小資本所有比率) <sup>4)</sup>	其他配當
26	오스트리아	10(10% 이상 소유)	15
27	인도네시아	10(25% 이상 소유)	15
28	브라질	15	15
29	이탈리아	10(25% 이상 소유)	15
30	튀니지	15	15
31	헝가리	5(25% 이상 소유)	10
32	아일랜드	10(25% 이상 소유)	15
33	폴란드	5(10% 이상 소유)	10
34	몽골	5	5
35	체코	5(25% 이상 소유)	10
36	슬로바키아	5(25% 이상 소유)	10
37	러시아	5(30% 이상 소유하고 동시에 100,000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	10
38	이집트	10(25% 이상 소유)	15
39	中國	5(25% 이상 소유)	10
40	베트남	10	10
41	쿠웨이트	10	10
42	루마니아	7(25% 이상 소유)	10
43	불가리아	5(15% 이상 소유)	10
44	피지	10	15
45	스페인	10	15
46	멕시코	0(10% 이상 소유)	15
47	포르투갈 <sup>3)</sup>	10(25% 이상 소유)	15
48	그리스	5(25% 이상 소유)	15
49	몰타	5(25% 이상 소유)	15

- 註: 1) 모로코 및 나이지리아와 韓國間의 假署名된 租稅條約은 재협상을 통하여 내용이 수정되어야 하므로 제외하였음.
- 2) 泰國의 경우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產業的 事業에 종사하고 同 配當의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 주식 중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5%, 그리고 配當支給法人이 產業的 事業에 종사하거나 배당지급법인의 의결권 주식 중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0%를 制限稅率로 하고 있음.
- 3) 포르투갈은 1997년 이후부터 적용하며 1996년까지는 10%의 單一稅率을 限時的으로 적용함.
- 4) ( ) 안은 법인간 배당이 되기 위한 最小 資本所有比率을 의미함.
- 資料: 財務部 稅制室 國際租稅課.

우리나라가 맺은 租稅條約에서 규정된 배당소득에 대한 制限稅率을 비슷한 성격의 국가군들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OECD 국가들과 맺은 租稅條約의 配當所得에 관한 制限稅率의 높이는 舊 社會主義圈 國家들을 제외한 開發途上國들과의 租稅條約의 制限稅率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두 국가군과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制限稅率은 <表 III-3>에서와 같이 뚜렷한 差異를 볼 수가 있다.

이 국가군들과의 조세조약에 있어서의 平均制限稅率과 OECD모델 條約이 추천하는<sup>10)</sup> 制限稅率의 差異를 비교해 볼 때 舊 社會主義圈 國家들과의 제한세율은 OECD모델조약보다 낮으나 다른 두 국가군들의 제한세율은 OECD모델조약의 제한세율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表 III-3> 配當所得에 대한 平均制限稅率

(單位: %)

	配 當 所 得	
	法人間 配當	其他 配當
OECD모델條約의 制限稅率 規程	5	15
O E C D 國 家 (23)	11.39	15.09
日 本	12	12
美 國	10	15
E C 國 家 (12)	10.42	15
其 他 國 家 (9)	12.78	15.56
아시아 및 南美·아프리카 및 中東 (16)	10.47	16.72
아 시 아 3 國 (1)	10	15
其他 아시아國家(9)	11.39	18.61
南美·아프리카·中東·其他(6)	9.17	14.17

10) UN모델條約은 制限稅率의 추천을 유보하고 있다.

〈表 III-3〉의 繼續

	配 當 所 得	
	法人間 配當	其他 配當
舊 社會主義圈 國家(10)	5.70	9.5
東 歐 國 家 (6)	5.33	10
러 시 아	5	10
아 시 아 國 家 (2)	7.5	7.5
中 國	5	10
합 계 (49)	9.93	14.48

資料 : 〈表 III-2〉를 근거로 자체작성함.

라. 利子所得에 대한 源泉地國 課稅의 制限<sup>11)</sup>

韓國이 맺은 조세조약 중에는 單一制限稅率을 채택하는 條約과 差等制限稅率을 채택하는 條約이 있다. 單一制限稅率은 國民經濟의 기여도나 償還期間 등에 따라 이자소득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이자에 대하여 支給總額의 一定比率(制限稅率)을 한도로 源泉地國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고 지급원인이 되는 外資의 國民경제 기여도를 감안하여 源泉地國에서 과세할 수 있는 세율을 차등화하는

11) 租稅條約上 利子所得에 대한 課稅關係는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兩 締約國間的 資本交流關係에 따른 利害關係를 매우 민감하게 반영한다. 資本輸出國(貸主의 거주지국)은 이자에 대한 과세권을 거주지국에만 부여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開發途上國은 주로 자본도입국이므로 자국의 조세수입 감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거주지국에만 과세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즉, 資本輸入國은 自國에서 이자소득에서 발생되었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同利子は 차관을 얻은 自國企業의 事業所得에서 지급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自國課稅權을 正當化하고자 하며, 資本輸出國은 이자는 源泉(資本)이 있어 야만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源泉(資本)의 형성과정이 自國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시하여 自國의 課稅權을 正當化하고자 한다. 따라서 거주지국이나 원천지국 중 어느 일방국에만 獨占의인 課稅權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妥協의 產物로서 利子受取人의 居住地國에서는 國內法에 따라 과세를 하고, 源泉地國에서는 制限稅率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것이 差等制限 稅率이다.

韓國이 맺은 조세조약에 나타난 利子所得에 대한 制限稅率은 <表 III-4>와 같다.

〈表 III-4〉 利子所得에 대한 制限稅率<sup>1)</sup> (1994.6.30 現在)

	國 名	制限稅率의 種 類	制限稅率 (%)	差等稅率의 條件
1	日 本	단 일	12	
2	泰 國	단 일	10	
3	美 國	단 일	12	
4	덴 마 크	단 일	15	
5	캐 나 다	단 일	15	
6	벨 기 에	단 일	15	
7	노 르 웨 이	단 일	15	
8	濠 洲	단 일	15	
9	뉴 질 란 드	단 일	10	
10	英 國	차 등	10	2년 이상의 장기차관 또는 채권의 이자
			15	기타
11	獨 逸	차 등	10	7년 이상의 장기채권에 대한 은행수취이자
			15	기타
12	프 랑 스	단 일	15	
13	싱 가 포 르	단 일	10	
14	네 덜 란 드	차 등	10	7년 이상의 장기차관에 대한 이자
			15	기타
15	스 위 스	단 일	10	
16	핀 란 드	단 일	10	

〈表 III-4〉의 繼續

	國 名	制限稅率의 種 類	制限稅率 (%)	差等稅率의 條件
17	스 웨 덴	차 등	10	7년 이상의 장기차관에 대한 은행수취이자
			15	기타
18	말레이시아	단 일	15	
19	스 리 랑 카	단 일	10	
20	룩셈부르크	단 일	10	
21	인 도	차 등	10	은행지급이자
			15	기타
22	방글라데시	단 일	10	
23	필 리 핀	차 등	10	공모발행된 채권의 이자, 장기투자분야의 법인이자
			15	기타
24	터 키	차 등	10	2년 이상의 장기차관 또는 채권에 대한 이자
			15	기타
25	파 키 스 탄	단 일	12.5	
26	오스트리아	단 일	10	
27	인도네시아	단 일	10	
28	브 라 질	차 등	10	7년 이상의 장기차관에 대한 은행수취이자
			15	기타
29	이 탈 리 아	단 일	10	
30	튀 니 지	단 일	12	
31	형 가 리	단 일	0	
32	아 일 랜 드	단 일	0	
33	폴 란 드	단 일	10	

〈表 III-4〉의 繼續

	國 名	制限稅率의 種 類	制限稅率 (%)	差等稅率의 條件
34	몽 골	단 일	5	
35	체 코	단 일	10	
36	슬로바키아	단 일	10	
37	러 시 아	단 일	0	
38	이 집 트	차 등	10	3년 이상의 장기차관 또는 채권의 이자
			15	기타
39	中 國	단 일	10	
40	베 트 남	단 일	10	
41	쿠 웨 이 트	단 일	10	
42	루 마 니 아	단 일	10	
43	불 가 리 아	단 일	10	
44	피 지	단 일	10	
45	스 페 인	단 일	10	
46	멕 시 코 <sup>2)</sup>	차 등	5	
			15	기타
47	포 르 투 갈	단 일	15	
48	그 리 스	단 일	8	
49	몰 타	단 일	10	

註: 1)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기타 公的 性格의 金融機關 등으로부터의 借款에 대한 利率에 대하여 一部 租稅條約에서는 免稅 適用하고 있음. 모로코 및 나이지리아와 韓國間의 假署名된 租稅條約은 再協商을 통하여 내용이 수정되어야 하므로 除外하였음.

2) 멕시코는 租稅條約 發效 後 5年間은 10%를 限時的으로 適用하며 5%는 그 이후에 적용하는 것임.

資料: 財務部 稅制室 國際租稅課.

利子所得에 대한 制限稅率을 비슷한 성격의 국가군들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OECD국가들과 맺은 租稅條約의 利子所得에 관한 制限稅率의 높이는 舊 社會主義圈 國家들을 제외한 개발도상국들과의 조세 조약의 제한세율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두 국가군과 舊 社會主義圈 國家들의 制限稅率의 差異가 <表 III-5>에서 뚜렷이 보여진다.

이 국가군들과의 조세조약에 있어서의 平均制限稅率과 OECD모델 條約이 추천하는<sup>12)</sup> 制限稅率의 差異를 비교해 볼 때 舊 社會主義圈 國家들과의 制限稅率은 OECD모델조약보다 낮으나 다른 두 국가군들의 制限稅率은 OECD모델조약의 제한세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表 III-5> 利子所得에 대한 平均制限稅率 (單位: %)

	利子所得
OECD모델條約의 制限稅率 規程	10
O E C D 國 家 (23)	11.61
日 本	12
美 國	12
E C 國 家 (12)	11.29
其 他 國 家 (9)	11.94
아시아 및 南美·아프리카 및 中東 (16)	10.59
아 시 아 3 國 (1)	10
其他 아시아 國家 (9)	11.39
南美·아프리카·中東·其他 (6)	9.50
舊 社會主義圈 國家 (10)	7.50
東 歐 國 家 (10)	8.33
러 시 아	0
아 시 아 國 家 (2)	7.50
中 國	10
合 計 (49)	10.44

資料: <表 III-4>를 근거로 자체작성함.

12) UN모델條約은 制限稅率의 추천을 유보하고 있다.

OECD모델條約이나 UN모델條約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現實的 必要性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몇 가지 종류의 利子 所得에 대해서는 利子所得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租稅條約에서 규정하고 있는 非課稅利子是, 政府·中央銀行 受取利子<sup>13)</sup>, 政府·中央銀行 出資機關의 受取利子<sup>14)</sup>, 輸出入銀行의 保證 또는 供與借款利子<sup>15)</sup>, 延拂販賣利子<sup>16)</sup>, 其他 免稅利子<sup>17)</sup> 등이 있다.

#### 마. 讓渡所得 課稅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에서는 不動產의 讓渡所得에 대

- 
- 13) 一方締約國에서 발생한 利子로 他方締約國의 政府(지방공공단체 포함) 또는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同 他方締約國(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租稅條約에서는 政府 및 中央銀行이 支給받는 利子에 대하여는 源泉地國에서 免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韓國政府 또는 韓國銀行이 相對締約國으로부터 받는 이자는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14) 일부 조세조약에서는 政府나 中央銀行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이 양자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기관이 지급받는 이자는 源泉地國에서 非課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日本·泰國·獨逸·英國·덴마크·美國·캐나다·네덜란드·노르웨이·브라질과의 조세조약에서 政府나 中央銀行이 所有하고 있는 機關이 受取하는 利子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한 국가에서 免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韓國輸出入銀行이 상대국으로부터 받는 이자는 이 규정에 따라 상대국에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5) 韓國의 輸出入銀行 및 相對締約國의 輸出入銀行(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공여하거나 보증하는 借款에 대하여 지급하는 利子에 대하여는 源泉地國에서 非課稅한다. 바꾸어 말하면 一方締約國 內에서 발생한 이자가 他方締約國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당해 이자가 輸出入銀行에 의해서 保證되거나 提供된 借款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他方締約國에서만 課稅된다. 우리나라는 英國, 캐나다, 프랑스, 싱가포르, 스위스, 스웨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모로코, 노르웨이, 방글라데시, 필리핀, 룩셈부르크, 이집트, 인도, 오스트리아 등과의 조세조약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16) 우리나라가 오스트리아 및 방글라데시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產業的·商業的·科學的 裝備 등의 외상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 利子受取人의 居住地國에서만 課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7) 말레이시아와의 조세조약에서는 말레이시아의 金融機關이 韓國金融機關에게 지급하는 利子和 長期借款(long term loan) 利子は 말레이시아에서 免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그 부동산의 所在地國에서 국내법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不動產所得의 1次的 課稅權은 당해 不動產이 所在한 國家에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서<sup>18)</sup> OECD모델조약이나 UN 모델조약의 내용에 부합된다.

株式의 讓渡所得에 관한 경우<sup>19)</sup> 우리나라는 영국,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이집트, 네덜란드, 스위스, 모로코, 스리랑카, 인도, 터키(단, 터키의 경우 취득시기와 讓渡時期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源泉地國에서도 과세), 인도네시아 등과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讓渡者의 居住地國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OECD모델조약이나 UN모델조약의 내용에 부합된다. 美國과 체결한 租稅條約에서는 주식 등 動產의 讓渡所得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居住地國에서만 과세 하되, 다만 投資會社 또는 特株會社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源泉地國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필리핀, 방글라데시, 뉴질랜드,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과 체결한 租稅條約에서는 법인의 재산이 주로 不動產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當該 法人株式의 讓渡代價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不動產 讓渡所得과 마찬가지로 당해 재산이 소재한 締約國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株式의 讓渡所得은 居住地國에서만 과세된다.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와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一方締約國의 거

18) 부동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讓渡差益 發生은 그 부동산 소재지국의 公共投資(도로·상하수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및 社會·經濟的 與件에 크게 의존하므로 應益原則 측면에서 그 不動產 所在地國에 1次的 課稅權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오늘날 조세조약상 확립된 과세원칙이다.

19) 오늘날 株式의 讓渡所得에 대한 課稅問題가 양도소득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는데 「OECD모델條約」에서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讓渡者의 居住地國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外國人直接投資를 주로 유치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나 자원보유국들은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액을 본국으로 회수해 가는 경우 자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 조세조약에서는 兩國課稅가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주자인 讓渡者가 단독으로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他方締約國의 會社에 25% 이상의 지분을 가지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當該 株式의 讓渡所得은 그 他方締約國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오스트리아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도 양도 직전 2년중 어느 때에 一方締約國 法人의 자본을 25% 이상 소유한 他方締約國의 거주자가 당해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득은 當該 利得의 10%를 한도로 一方締約國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무집행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實質的 參加權(substantial participation)의 讓渡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獨逸, 日本, 泰國, 싱가포르, 濠洲, 브라질과 체결한 조세조약하에서 株式讓渡所得은 당해 주식발행 법인의 所在地國(源泉地國)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日本, 泰國과 맺은 조세조약은 株式의 讓渡所得에 관한 조문이 없으므로 當該 締約國의 國內法에 따라 과세된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거주자가 우리나라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받는 소득은 所得稅法이나 法人稅法의 규정에 따라 韓國에서 과세된다. 濠洲와의 租稅條約에서는 양도소득 조문에서 株式讓渡所得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其他所得條文에 의하여 源泉地國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러한 讓渡所得에 대한 源泉地國의 制限的 課稅權 認定은 OECD모델조약에는 없고 UN모델조약에만 나타나 있는 규정이다.

#### 바. 二重課稅 排除의 方法

租稅條約에서 二重課稅 排除 問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는 한국거주자의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韓國에서의 二重課稅 排除 方法 問題와, 둘째는 상대국거주자의 韓國源泉所得에 대한 相對國에서의 二重課稅 排除方法 問題이다.

원칙적으로는 兩國이 동일한 이중과세 배제 방법을 租稅條約에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各國은 각기 다른 自國의 國內稅法 및 政策 등을 배경으로 하여 조세조약에서 이중과세 배제 방법을 규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서로 다른 방법이 규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居住者의 二重課稅 排除方法으로 모든 조세조약에서 국내세법과 마찬가지로 一般外國稅額 控除方法을 채택하고 있으며, 과세권이 포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所得免除方法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相對締約國 역시 自國居住者의 二重課稅 排除方法으로 우리나라처럼 外國稅額 控除方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나 프랑스, 獨逸,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西歐諸國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累進附 免除<sup>20)</sup>를 조건으로 外國所得免除方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채택하고 있는 二重課稅 排除方法은 一般外國稅額控除方式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계약상대국에 따라 看做外國稅額控除와 間接外國稅額控除를 추가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6월 말 현재 효력을 발생하고 있거나 傭名 혹은 假傭名을 통하여 내용이 확정된 49개 租稅條約 중에서 주로 開發途上國인 23個 國家(이탈리아 제외)에서 발생한 우리 法人의 外國所得에 대하여 看做外國稅額控除制度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49個 締約相對國 중 35個國이 看做外國稅額控除制度를 허용하고 있다<sup>21)</sup>. 또 우리나라는 英國, 덴마크, 美國, 브라질과 間接外國稅額控除制度를 상호 허용한다는 조세조약 규

20) 외국에 원천이 있는 國內居住者의 所得을 면세하고 이를 국내거주자의 국내 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경우 또는 같은 수준의 전세계소득이 있으나 이 소득이 전부 국내거주자의 국내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경우, 源泉이 있는 다른 國內居住者와의 課稅衡平에 어긋나게 되는데 이는 累進稅率構造下에서는 국외원천소득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外國所得免除制度下에서는 累進附免除가 課稅衡平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21) 구체적인 내용은 〈附表〉에 나타나 있다.

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체결한 많은 조세조약에서는 稅額控除에 관한 國內法の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러한 稅額控除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租稅條約의 경우 稅額控除에 관한 당해 조약의 내용은 國內稅法の 내용을 확인하는 효과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최근까지도 現行 國內法에 규정되지 않은 看做外國稅額控除 및 間接外國稅額控除는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韓國은 국내법상의 규정 미비 때문에 同 控除를 韓國居住者에게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1986년 세법개정시에 租稅減免規制法 제28조의 3(外國納付稅額의 擬制)을 신설함으로써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도 당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稅額控除 또는 損金算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看做外國稅額控除制度를 실현할 수 있는 국내법적 기반을 가지게 된 것이다<sup>22)</sup>.

二重課稅 排除方法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租稅條約의 내용은 〈附表〉에 나타나 있다.

#### 4. 國內法上의 外國資本에 대한 課稅制度

##### 가. 外國法人에 대한 課稅 概況

法人稅에서는 법인을 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國內에 있는가 또는 國外에 있는가에 따라 內國法人과 外國法人으로 나누고 있다. 즉, 우

22) 租稅減免規制法 제28조의 3에는 國外源泉所得이 있는 內國인이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租稅條約)의 상대국에서 當該 國外源泉所得에 대하여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감면받은 稅額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損金算入 또는 所得稅法 제76조 및 法人稅法 제2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稅額控除의 대상이 되는 外國所得稅額 또는 外國法人稅額으로 본다 고 규정되어 있다.

리나라 법인세법은 내·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本店所在地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고, 外國法人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의미한다(法人稅法 제1조 제1항 및 제3항).

內國法人과 外國法人의 納稅義務를 비교하면 <表 III-6>과 같다.

<表 III-6> 內國法人과 外國法人의 所得種類別 納稅義務 比較

法人類型		各事業年度 所得에 대한 法人稅	土地等讓渡差益에 대한 特別附價稅	清算所得에 대한 法人稅	
內國法人	營利法人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과세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과세	과세	
	非營利法人	국내·외 수익사업 소득에 과세		비과세	
外國法人	營利法人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			
	非營利法人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 소득에만 과세			

國內源泉所得을 綜合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國內事業場 등이 있는 外國法人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算出稅額은 課稅標準에 다음의 세율(法人稅法 제22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法人稅法 제57조).

<表 III-7> 外國法人에 適用되는 法人稅率

課稅標準	稅率
1億원 以下	18%
1億원 超過	1,80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32%

國內에 事業場<sup>23)</sup>이 없는 外國法人의 各 所得別 課稅標準에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당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한 法人稅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法人稅法 제59조 제1항).

〈表 III-8〉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에 歸屬되지 않는 所得에 대한 法人稅率

所得의 種類	稅 率
利 子 所 得 配 當 所 得 使 用 料 所 得 其 他 所 得	25%
船 舶 等 賃 貸 所 得 事 業 所 得	2%
人 的 用 役 所 得	20%
有 價 證 券 讓 渡 所 得	양도가액의 10% } 중 적은 금액 양도차익의 25%
不 動 產 讓 渡 所 得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18%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 1,80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32%

이때 外國法人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源泉徵收은 내국법인과 동일하다(豫納의 源泉徵收). 또 이자소득, 기타소득, 증권투자신탁수익의 分配金을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에 지급하는 자는 法人稅法 제39조에 따라 源泉徵收하여 납부한다. 반면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源泉徵收은 內國法人에 대한

23) 國內事業場의 개념은 조세조약에서의 固定事業場에 해당한다.

源泉徵收 規定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特別規程인 法人稅法 제59조가 적용된다(完納的 源泉徵收).

外國法人의 土地 등 讓渡에 대한 特別附價稅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과 같이 내국법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法人稅法 제57조).

〈表 III-9〉 外國法人에 대한 特別附價稅率

(單位：%)

區 分	稅 率
未登記 讓渡土地 等	과세표준금액의 40
其 他	과세표준금액의 25

나. 國內稅法에 規定된 外資導入에 대한 支援制度

開發途上國들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을 국내저축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으므로 外國의 資本에 크게 의존하게 되며, 따라서 外資의 圓滑한 誘致와 도입을 위하여 많은 稅制上의 特典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가 이룩한 고도 성장 역시 外資의 圓滑한 導入과 效率的 活用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對外開放의 진전과 國際收支의 개선에 따라 내국·외국기업간 공정한 경쟁관계를 정립하고 外資導入의 效率化를 위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非合理的인 租稅減免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外資導入에 대한 租稅減免制度를 계속 縮小해 오고 있다.

1) 外國人投資企業의 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 法人稅의 減免

外國人投資企業의 所得稅, 法人稅 減免은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당해 租稅의 算出稅額에 한정되며 加算稅나 清算所得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에 대한 特別附價稅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表 III-10〉 外國人投資企業의 減免對象 所得

所得의 種類			減免與否
각 사업연도 소득	인가영업소득	산출세액	감면
		가산세액	감면배제
	인가외 영업소득		감면배제
청산소득			감면배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事業開始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全額을 減免하며, 그 다음 2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50%에 상당하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감면한다(外資導入法 제14조 제2항).

外國人投資企業이 增資하는 경우에 당해 增資分에 대하여는 자본 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全額을 減免하며, 그 다음 2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50%에 상당하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감면한다(外資導入法 제16조 제1항).

準備金 또는 再評價積立金의 資本轉入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株式에 대한 租稅減免은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며(外資導入法 제16조 제2항), 감면기간이 새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2) 外國投資家의 配當所得에 대한 法人稅 所得稅 減免

外國投資家가(고도기술 수반사업,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사업,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租稅減免이 불가피한 사업에 투자하고) 취득하는 株式 또는 持分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는 事業開始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와 그 후 5년 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中에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減免한다(外資導入法 제14조 제3항).

### 3) 資産再評價 特例

外資導入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外國投資家와 합작하여 당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當該 出資의 目的物에 대하여 資産再評價法 제4조(再評價日: 法人의 경우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 個人의 경우는 매년 1월 1일) 및 제38조(再評價의 제한: 資產을 再評價한 者는 그 再評價日을 기준으로 都賣物價指數가 25% 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재평가 불가), 그리고 同法 施行令 제1조 제5항(再評價日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都賣物價指數가 25% 이상 증가한 자산에 한하여 재평가 가능)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再評價日로 하여 資産再評價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 4) 商業借款利子에 대한 免稅

外資導入法の 개정으로 1991년 3월 1일 이후에 外資導入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公共借款協約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가 감면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1991년 2월 28일 이전에 인가된 借款契約의 내용에 따라 貸主<sup>24)</sup>가 취득하는 利子 또는 당해 公共借款協約<sup>25)</sup>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貸主가 개인인 경우) 또는 법인세(貸主가 법인인 경우)를 부과하지 아니한다(舊外資導入法 제21조).

24) 貸主라 함은 公共借款協約에 의하여 借主에 대하여 債權을 가지고 있는 외 국정부·외국인 또는 그 채권을 양수받은 자를 말한다(外導法 제2조 제15 호). 따라서 내국인이라 할지라도 당해 債權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貸主가 될 수 있으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제한적으로 貸主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借款利子是 국내지점에서 처리할 수 있다.

25) 여기에서 '公共借款協約'이라 함은 우리나라 國民 또는 法人이 外國人 또는 外國法人(經濟協力機構 제외)으로부터 對外支給手段을 차용하거나 資本財·原資材 등을 長期決濟方式으로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당해 계약에 의한 償還 期間 또는 決濟期間이 3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그 금액이나 가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것을 말한다(外資導入法 施行令 제4조).

## 5) 公共借款利子에 대한 免稅

公共借款의 導入과 직접 관련하여 貸主가 부담하여야 할 租稅, 公課金 등은 당해 公共借款協約<sup>26)</sup>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外資導入法 제28조 제1항). 따라서 公共借款利子에 대한 조세 등이 면제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에 관한 내용이 공공차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6) 國家 또는 內國法人의 外貨表示債券利子에 대한 免稅

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 內國法人이 발행하는 外貨表示債券<sup>27)</sup>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면제한다(租稅減免規制法 제94조 제1항 제1호).

## 7) 外貨債務利子에 대한 免稅

外國換銀行이 外國換管理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外國金融機關으로부터 借入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外貨債務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면제한다(租稅減免規制法 제94조 제1항 제2호).

26) 여기에서 '公共借款協約'이라 함은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정부·경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또는 우리나라 법인이 外國政府나 經濟協力機構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차용하거나 자본재·원자재 등을 수출신용제도에 의하여 도입하는 협약 또는 계약을 말한다(外資導入法 施行令 제2조 제11호).

27) 이 채권은 자본차입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確定利子附 金錢債務證券이며, 발행자는 차주가 되며 인수자는 채권자가 된다. 채권은 차주가 거주하는 국가 내에서 발행되는 채권을 內國債라 하며, 차주의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國際債(international bond)라 한다. 국제채는 外國債券(foreign bond)과 「유러본드」(euro-bond)로 구분되는데, 외국채권은 외국에서 자금공여국 통화로 발행되며, 자금공여국의 인수단 또는 판매단에 의하여 인수되고 매각된다. 반면 「유러본드」는 1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데, 국제적인 인수단 및 판매국을 통하여 발행된다. 外貨表示債券은 長期의 外貨資金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에 발행되는데, 이는 특정목적 또는 조건에 구애 받은 tied loan이 아니고 차입된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자금코스트가 싼 長期外貨資金을 조달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

8) Off-Shore 金融去來所得에 대한 免稅

Off-Shore 金融去來(域外金融去來)는 주로 非居住者間的 金融거래를 증대하는 국제금융거래이기 때문에 세계각국이 소요외자의 원활한 조달, 금융산업의 국제화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外換, 稅制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租稅減免規制法 제94조 제2항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外國換銀行<sup>28)</sup>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豫受 또는 借入하거나 外國換管理法 施行令 제3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外貨證券을 국외에서 발행하여 조달된 외화자금을 非居住者에게 預置 또는 貸出하거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免除”하도록 되어 있다.

9) 國外發行 有價證券의 國外讓渡所得에 대한 免稅

국외에서 발행되고 국외에서 양도되는 有價證券의 讓渡所得은 다음의 경우에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면제하도록 租稅減免規制法이 규정하고 있다(租稅減免規制法 제94조 제3항). 免稅對象이 되는 有價證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으로서 外國換管理法 施行令 제3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화증권이 면세대상이 된다. 즉, 면세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에는 普通債券(회사채, 금융채, 공채 등 모든 형태의 채권), 轉換社債(CB), 新株引受權

28) ‘外國換銀行’이라 함은 外國換管理法 제8조 제1항(외국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의 外國換業務 認可를 받은 자와 韓國外換銀行 및 韓國輸出入銀行을 의미하는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을 수 없다(外國換管理法 施行令 제5조).

- ①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 ②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
-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④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⑤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附社債(BW), 株式預託證書(외국에서 국내주식 또는 지분 대신 유통되는 증권), 회전발행이 보장되는 약정에 따라 발행되는 中·短期 債務證書 등의 外貨表示證券이 있는데 이러한 有價證券을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免除한다.

## IV. 開放化 時代의 企業課稅制度 改編方向

우리나라의 現行 企業課稅制度가 外國人 直接投資에 얼마나 友好的인가 하는 것을 韓國의 企業課稅制度(외국자본에 대한 과세제도)의 投資支援效果를 外國과 比較함으로써 평가하고 그 改編方案을 살펴 보기로 한다.

### 1. 우리나라의 現行 企業課稅制度에 대한 評價

投資에 대한 有效租稅負擔率(effective tax rate)의 분석을 통해 租稅制度가 각국 또는 각 분야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 노력은 1960년대 이후부터 있었다<sup>1)</sup>. 有效租稅負擔率은 어떤 투자로부터 오는 限界資本收益이 과세액을 포함한 資本費用과 일치하는 한계투자상태에서의 조세부담률을 의미한다<sup>2)</sup>. 이와 같은 유효조세부담률의 추정에 있어서는 企業의 法人稅率 이외에 투자재에 대한 減加償却制度, 租稅減免制度는 물론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源泉所得稅나 투자자가 부담하는 個人所得稅와 같이 실제로 투자된 자본에 부담을 주는 조세제도의 모든 관련규정이 고려됨으로써 단순히

1) R.E. Hall and D.W. Jorgenson, "Tax Policy and Investment Behavior,"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7, 1967, pp. 391~414.

2) 有效租稅負擔率은 有效限界租稅負擔率(effective marginal tax rate)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개념은 흔히 實效稅率, 有效稅率 또는 平均稅率이라고 불리우는 개념과 구별되어야 한다. 實效稅率은 어느 법인이나 개인 또는 어느 국가 내의 모든 법인이나 개인투자자의 총소득에서 각종 조세감면액을 차감한 실제납부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企業法人稅率만 비교되는 것보다 투자자본의 조세부담이 훨씬 정확히 진단될 수 있다. 有效租稅負擔率은 限界投資 상태에서 投資로부터의 課稅 前 資本收益率로부터 課稅 後 收益率을 뺀 뒤 이를 다시 課稅 後 收益率로 나누어서 산출된다. 課稅 後 收益率이 일정할 경우 課稅 前 資本收益率만으로도 투자자본의 有效租稅負擔 比較가 가능하다.

비교대상 국가로서는 우리나라에 자본을 주로 수출하는 美國, 日本, 獨逸, 英國,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아시아의 경쟁국가들인 싱가포르, 臺灣, 말레이시아와 泰國를 선택하였다<sup>3)</sup>.

#### 가. 有效租稅負擔率(課稅 前 資本收益率) 算出을 위한 모델 設定

資本輸出國의 母會社는 資本輸入國의 子會社에 투자자금을 設立資本의 형태(Equity Financing)로 혹은 借入金의 형태(Debt Financing)로 제공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Debt Financing의 경우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有效租稅負擔率 算出을 위한 모델로서 1984년 美國, 英國, 獨逸 및 스웨덴의 유효조세부담률 추정에 사용된 King and Fullerton(1984)의 모델<sup>4)</sup>을 다소 변형시켰다.

우선 課稅 前 資本收益率을 P, 課稅 後 資本收益率을 S라고 하면 收益率의 差 W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W \equiv P - S \dots\dots\dots (1)$$

이는 한계투자상태에 있는 화폐 한 단위의 투자에서 오는 자본수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有效租稅負擔率 T는 W와 P의 관계나 W와

3) 資本輸出國과 資本輸入國의 分類는 그 나라의 純流出(net flow)이나 純流入 규모와 꼭 연관지을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美國은 자본수출뿐만 아니라 자본수입 규모도 커서 純流出 規模는 미미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에 자본을 수출하는 주요국 중의 하나이므로 資本輸出國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4) M. M. King and D. Fullerton(eds.), *The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A Comparative Study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Sweden and West German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S의 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

$$T \equiv W/S = (P-S)/S \text{ 혹은}$$

$$T \equiv W/P = (P-S)/P \dots\dots\dots (2)$$

資本의 課稅 後 實質收益率은 우선 투자자의 個人소득세율에 좌우된다. 거주지국 과세를 잠시 논외로 하면 源泉地國의 源泉所得稅率이 個人소득세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利子所得에 대한 源泉所得稅率을  $m_z$ 라 하면 利子所得의 課稅 後 實質收益率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 = (1 - m_z)i - \pi \dots\dots\dots (3)$$

( $\pi$ : 物價上昇率,  $i$ : 名目利子率)

한편 단위투자프로젝트에 있어서 課稅 前 資本收益率 P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P = MRR - \delta \dots\dots\dots (4)$$

(MRR: 投資財의 年間 實質的 減價償却을 包含하는 總資本收益率,  
 $\delta$ : 投資財의 實質的 減價償却率)

이 모델에서는  $\delta = 0.1$ , 즉 모든 나라에 있어서 기계류가 10년의 壽命을 가지며 그 資產價値는 매년 10분의 1씩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sup>5)</sup>.

---

5) 機械類의 自然減價償却이 매년 最低자산가치의 10분의 1씩 줄어든다는 가정은 상당히 임의적이거나 모든 비교대상국가의 기계류자산의 實際 自然減價償却率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有效租稅負擔率 水準의 國際比較를 위하여 꼭 필요한 가정이다. 다만 이 가정으로 인하여 산출된 각 경우의 유효조세부담률의 절대치는 큰 의미가 없고 국가들간의 相對值만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有效法人稅率을  $t$ , 企業의 內部割引率을  $\rho$ 라 하면 단위투자로 인해 미래에 실현될 純利益의 現在價値  $V$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V = \int_0^{\infty} (1-t) \text{MRR} e^{-(\rho+\delta-\pi)u} du = (1-t) \text{MRR} / (\rho + \delta - \pi) \cdots (5)$$

여기서  $V$ 는 物價上昇率이 높을수록, 自然減價償却率이 낮을수록 그리고 企業의 內部割引率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수학적 전개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投資費用이 1이라고 하자. 이때 비용 1에 포함된 정부의 각종 投資支援策의 現在價値  $A$ 를 고려하면 企業의 實際負擔分  $C$ 는 대개 1보다 작다.

$$C = 1 - A \cdots \cdots \cdots (6)$$

균형상태에서 限界收益과 限界費用이 같아야 하므로  $C=V$ 이다. 이때  $P$ 와  $\rho$ 의 함수적 관계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P = \{(1-A) (\rho + \delta - \pi) / (1-t)\} - \delta \cdots \cdots (7)$$

특정한  $\rho$ 값 하나에는  $C=V$ 를 가능하게 하는 특정한  $P$ 값 하나가 존재하게 된다. 이 투자프로젝트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最小限 이러한  $P$ 값을 지녀야 한다. 즉,  $P$ 의 의미는 사실상의 課稅前 資本收益率이 아니라 必要稅前收益率(required pre-tax rate of return) 개념이다. 역으로 특정한  $P$ 값 하나에는  $V=C$ 를 가능하게 하는  $\rho$ 값 하나가 존재하는데 이는 투자프로젝트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最大限의 값이다.

$A$ 는 정부의 다양한 投資支援策의 現在價値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A = A_1 \cdot i + A_2 \cdot j + A_3 \cdots \cdots \cdots (8)$$

(A<sub>1</sub>: 正常的인 減價償却制度로부터의 지원효과,

A<sub>2</sub>: 高速減價償却制度(Accelerated depreciation system)로부터의 지원효과,

A<sub>3</sub>: 投資補助金制度로부터의 지원효과,

i=0, j=1: 高速減價償却制度를 投資支援策으로 활용하는 경우,

i=1, j=0: 高速減價償却制度를 投資支援策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

A<sub>1</sub>의 값은 우선 稅制上 許容되는 減價償却 方法에 좌우된다. 定額法에서는 투자재가 세제상 허용된 減價償却年度 L분의 1씩 L년이 될 때까지 매년 減價償却된다. 따라서 A<sub>1</sub>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_1 = \int_0^L t(1/L) e^{-\rho u} du = t(1 - e^{-\rho L})/\rho L \dots\dots\dots (9)$$

여기서 1/L을 l로 다시 표현하면,

$$A_1 = t l(1 - e^{-\rho l})/\rho \dots\dots\dots (10)$$

定率法下에서는 투자재의 殘存價値가 매년 一定率 a(0 < a < 1) 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A<sub>1</sub>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_1 = \int_0^\infty t a e^{-(a+\rho)u} du = t a / (a + \rho) \dots\dots\dots (11)$$

高速減價償却制度로부터의 投資支援 效果 A<sub>2</sub>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A_2 = b \cdot t + (1 - b) A_1 \dots\dots\dots (12)$$

(b: 總投資規模 中 高速減價償却되는 部分의 比率)

b=1은 總投資規模 전체가 투자 즉시 減價償却됨을 의미한다. 한편

投資補助金이 투자단위당  $g$ 만큼 제공된다면 다음 식이 성립한다.

$$A_3 = g \dots\dots\dots (13)$$

이제 有效法人稅率과 法定法人稅率의 관계가 밝혀져야 한다. 有效 法人稅率  $t$ 는 法定法人稅率  $t_g$  이외에 소위 租稅休日로 불리우는 잠 정적인 조세면제 내지 조세감면제도를 고려한 개념이다.

$$t = t_{g1} + (t_{g2} - t_{g1}) e^{-(\rho + \delta - \pi)H_0} + (t_{g3} - t_{g2}) e^{-(\rho + \delta - \pi)H_1} + (t_g - t_{g3}) e^{-(\rho + \delta - \pi)H_2} \dots\dots\dots (14)^{6)}$$

( $t_{g1}, t_{g2}, t_{g3}$  : 各 租稅休日 期間 內에 減免된 法定法人稅率,  
 $H_0, H_1, H_2$  : 各 期間이 끝나는 時點)

企業割引率  $\rho$ 는 市場利率  $i$ 의 함수이다. Debt Financing에서는

$$\rho = i (1 - t_g^w) \dots\dots\dots (15)$$

가 성립하며 이는 名目利子所得에 대한 課稅와 利子費用에 대한 非 課稅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 거주지국의 법인세율  $t_g^w$ 를 적용 시키는 것은 기업이 자금을 거주지국으로부터 차입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i$ 도 居住地國(또는 國際市場)의 이자율이다.

6) 이 식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X$ 와  $Y$ 를 각각 投資프로젝트의 年間收益의 現在 價值 및 未來稅額의 現在 價值로 정의하면 다음 식이 성립한다.

$$X = R + R/(\rho + \delta - \pi) + R/(\rho + \delta - \pi) + \dots + R/(\rho + \delta - \pi),$$

$$Y = \int_0^{H_0} t_{g1} \cdot R \cdot e^{-(\rho + \delta + \pi)s} ds - \int_{H_0}^{H_1} t_{g2} \cdot R \cdot e^{-(\rho + \delta + \pi)s} ds + \int_{H_1}^{H_2} t_{g3} \cdot R \cdot e^{-(\rho + \delta + \pi)s} ds + \int_{H_2}^k t_g \cdot R \cdot e^{-(\rho + \delta + \pi)s} ds$$

이때  $k$ 년까지의 연간수익을 나타내는  $R$ 이 매년 일정하며  $k \rightarrow \infty$ 를 가정하면  $X = R/(\rho + \delta - \pi)$  및  $t = Y/X$ 로부터 식 14가 구해진다.

한편 Equity Financing에 있어서는  $\rho$ 와  $i$ 의 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租稅差別指數  $\theta$ 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theta$ 는 社內留保利益의 과세 전 총배당수익에 대한 機會費用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서 이는 한 단위의 기업이익 분배시에 주주가 추가로 받게 되는 株式配當의 크기를 나타낸다. Equity Financing에서 투자자의 課稅 後 配當所得은 동일한 규모의 金融投資를 이자율  $i$ 로 했을 때의 豫想收益(機會費用)과 일치해야 하므로 다음 식이 성립한다.

$$(1 - m_d)\theta \cdot \rho = (1 - m_z)i \Rightarrow \rho = (1 - m_z)i / (1 - m_d)\theta \dots\dots (16)$$

$(1 - m_d)\theta \cdot \rho$ 는  $\rho$ 단위의 법인세 과세 후의 投資利益(社內留保利益)이 배당될 때 주주들이 받게 되는 源泉課稅 後의 配當額이며  $(1 - m_z)i$ 는 그 機會費用이 된다. 이때,  $\theta$ 는 각국의 相異한 法人稅制에 따라 상이한 값을 지닌다. Classical System에서는  $\theta=1$ , Imputation System에서는  $\theta=1/(1-c)$ , Split-rate System에서는  $\theta=(1+t_a-t_e)$ , 그리고 Integration System에서는  $\theta=1/(1-t)$ 가 된다<sup>7)</sup>. 이때,  $t_e$ 는 配當額에 대한 法人稅率,  $t_e$ 는 留保額에 대한 法人稅率, 또한  $C$ 는 imputation率이다. 또 Equity Financing의 경우 配當所得의 稅後收益率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 = (1 - m_d)i_e - \pi \dots\dots\dots (17)$$

( $i_e$ =平均配當收益率)

7) Classical System은 납부된 法人稅額이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所得稅 납부시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제도(예컨대, 미국의 법인세제)임에 반해 Integration System은 납부된 法人稅額이 全額 控除되는 제도이다. Imputation System과 Split-rate System은 납부된 법인세액이 部分的으로 控除되는 제도로서 Imputation System하에서는 imputation율만큼 공제되고 Split-rate System하에서는 법인세 납부시부터 법인수익 중 법인유보부분과 배당부분에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過重한 稅負擔이 防止된다.

위의 式들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居住地國 課稅를 고려치 않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所得源泉地國 課稅와 投資者의 居住地國 課稅를 함께 고려할 경우에는 원천지국과 거주지국간의 二重課稅를 여하히 조정하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法人稅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서 일반적으로 지켜지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은 그 사업장이 속한 나라에서만 과세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원천지국에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그리고 減價償却에 대한 투자지원 효과도 源泉地國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앞서 式 (3)을 제외한 나머지의 式들은 源泉地國 및 居住地國 課稅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에도 공히 적용된다. 다만 式 (3)의 내용은 二重課稅를 除去하는 方法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에 있어서는 源泉地國에서 과세된 이자나 配當所得을 居住地國에서 稅額控除하거나(Tax-credit-methods : 外國稅額控除制度),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Exemption-methods : 外國所得免稅制度) 두 가지 방법 중 택일된다.

利子所得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세조약에서 二重課稅防止方法으로 外國稅額控除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外國稅額控除制度下에서는 源泉地國에 납부된 利子所得에 대한 源泉所得稅가 거주지국의 과세에서 공제되므로 사실상 源泉地國에서의 源泉所得稅率의 크기는 궁극적인 투자자의 세부담이 결정되는 것과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투자자가 법인이라고 가정하면 투자자의 居住地國의 稅負擔은 投資法人의 居住地國의 法人稅率에 좌우된다. 그러나 원천지국의 원천세율이 투자법인의 거주지국 법인세율보다 높을 경우 일반적으로 거주지국에서 그 차액을 돌려주는 관행은 없으므로 外國稅額控除制度下에서는 다음 式이 성립하게 된다.

$$S = (1 - \max(t_g^W, m_z^Q)) i - \pi \dots\dots\dots (3a)$$

(W : 居住地國, Q : 源泉地國)

각국이 제공하고 있는 法人稅制度和 租稅減免制度의 有效租稅負擔을 비교하기 위하여는 어느 한 국가의 자본이 각국에 투자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이로부터의 有效租稅負擔率을 산출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資本輸出國의 投資所得에 대한 課稅制度의 差異에 따라 有效租稅負擔率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資本輸入國의 投資立地를 그 나라들의 有效租稅負擔率 水準으로써 判定하려는 이 모델의 의도가 왜곡되게 된다. 따라서 어느 한 국가의 자본이 각국에 투자되는 것을 가정하여야 하는데 이 국가를 美國이나 日本 등 어느 나라로 가정하여도 문제는 없으나 편의상 여기서는 韓國과 같은 수준의  $i$ 와  $\pi$ 를 가지는 假想의 資本輸出國을 가정한다<sup>8)</sup>. 이 경우 式(3), (3a)에서  $i$ 와  $\pi$ 는 韓國의  $i$ 와  $\pi$ 가 모든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 假想의 資本輸出國의 法定法人稅率을 40%로 본다면<sup>9)</sup> 法人投資者를 가정할 경우  $t_w^* = 0.4$ 가 되고  $m_i^*$ 는 자본수입국의 이자소득에 대한 源泉所得稅率이 적용된다. 이때  $m_i^*$ 는 式(3)의  $m_i$ 와는 다른 값을 갖는 것으로  $m_i$ 가 각국의 稅法에 규정된 源泉所得稅率임에 비해  $m_i^*$ 는 예컨대, 美國이나 日本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源泉所得稅率이다. 租稅條約에 따른 源泉稅率은 각국의 稅法에 규정된 源泉所得稅率보다 낮은 세율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t_w^* (=0.4)$ 가 모든 자본수입국의  $m_i^*$ 보다 높으므로 外國稅額控除制度下의 式(3a)에서  $S$ 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 있고 모든 자본수입국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S$ 는 동일한 값을 가진다.

$$S = (1 - t_w^*) i - \pi \dots \dots \dots (3b)$$

---

8) 이는 비교대상 국가들의 平均利率이 韓國의 利率인 10%에 가깝기 때문이다.  
 9) 이는 비교대상 국가들의 平均 法定法人稅率이 40% 정도이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는 이 가상 국가의 법인세율이 20%이든 50%이든 상관이 없다.

外國稅額控除制度下에서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S의 값이 동일하므로 P-S가 아니라 P 자체가 T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즉, 有效租稅負擔率을 산출하지 않고 각 나라의 기업과세제도가 제공하는 資本의 課稅前 收益率 P(必要稅前收益率)를 有效租稅負擔率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T \equiv P \dots\dots\dots (2a)$$

#### 나. 比較對象 國家들의 外國法人에 대한 課稅制度

비교대상 국가들의 必要稅前收益率을 산출해 내기 위하여 各國의 法人稅制度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各國의 法人稅制度의 방대한 정보 중에서 논의를 되도록 간략하게 하기 위하여 必要稅前收益率을 산출해 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만을 수집하였다.

各國의 投資支援制度(高速減價償却, 세액공제를 통한 投資支援金, 租稅休日制度)의 支援效果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각국이 모든 투자분야에 一律적으로 適用하고 있는 法人稅制度和 投資支援制度를 정리해 보고 다음으로 각국이 特定產業分野나 特定地域에의 投資에 적용하고 있는 법인세제도와 투자지원제도를 정리하였다. 개별국가들은 여러 등급의 투자지원을 개별산업분야나 지역에 제공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각국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강도가 높은 투자지원분야만을 선별하여 國際比較를 행하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투자 중에 機械類에 대한 투자만을 선별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또 Debt Financing을 통한 資金調達 方法和 Equity Financing을 통한 資金調達 方法 중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Debt Financing을 통한 資金調達 方法에 대해서만 必要稅前收益率을 산출하기로 한다. Equity Financing을 통한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必要稅前收益率 산

출을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각국의 平均配當收益率( $i_e$ )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나 그것이 여의치 않고 둘째, 식 (16)에서 보듯이 Equity Financing에 있어서는  $\rho$ 와  $i$ 의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 租稅差別指數  $\theta$ 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이  $\theta$ 는 各國의 法人稅制度의 형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을 지니기 때문이다. 各國의 法人稅制度의 형태를 반영하여  $\theta$ 를 구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지니는 제도의 복잡성 때문에  $\theta$ 의 값이 왜곡될 소지가 크다. 그리고 세번째 이유는 本研究의 주된 관점이 投資資本의 必要稅前收益率로 나타나는 각국의 投資支援制度에 의한 투자지원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해 보자는 것이므로 자금조달 방법이 必要稅前收益率에 미치는 효과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1월부터 외국기업의 海外로부터의 短期借入(만기 3년 이하)을 허용하고 있으며 3년 이상의 長期借入도 앞으로 허용할 계획이다<sup>10)</sup>. 1993년 1월부터 1994년 7월까지의 우리나라에 대한 外國人 投資가 도착기준으로 11억 8,200만달러인 데 비해 동 기간 외국기업의 海外短期借入이 37개사의 6억 5,600만달러인 것을 보면 海外借入이 외국인 투자의 주된 자금원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一般投資分野와 特別投資分野에 적용되는 각국의 法人稅制度와 投資支援制度, 韓國과 맺은 租稅條約에 나타난 利子所得에 대한 源泉所得稅率을 정리해 보면 각각 <表 IV-1>, <表 IV-2>와 같다.

<表 IV-1>과 <表 IV-2>에 나타난 자료들을 앞의 節에서 설명한 모델에 투입하여 각국의 必要稅前收益率을 산출해 내기 위하여 다소간 이 자료들을 가공하여야 한다. 우선 기계류의 종류가 다양한 관계로 各國의 機械類에 대한 法定減價償却率이나 耐用年數도 여러 가지 값을 가지는데 그 最高値와 最低値를 算術平均化하기로 한다. 이러

10) 外國企業은 一般投資의 경우 투자액의 50% 범위 내에서, 그리고 高度技術部門의 경우 투자액의 100%까지 海外短期借入을 허용하고 있다.

〈表 IV-1〉 一般投資分野

(單位: %, 年)

	法定 法人稅率	減價償却制度 (機械類) <sup>9)</sup>	投資支援率 <sup>11)</sup>	租稅休日 期 間		租稅休日 期間의 稅率		源泉利子 所得稅率 <sup>12)</sup>	利子率 <sup>14)</sup> (1992)	消費者物價 上昇率(1992)
韓 國	32 <sup>1)</sup>	정률법:내용연수 7.97년, 잔존가액 10%	-	-	-	-	-	12	10.00	6.2
美 國	35 <sup>2)</sup>	이중채감법 <sup>10)</sup> :내용연수 5년	-	-	-	-	-	12	6.25	3.0
日 本	37.5 <sup>3)</sup>	정률법:내용연수 9.66년, 잔존가액 5%	-	-	-	-	-	12	6.15	1.7
英 國	35 <sup>4)</sup>	정률법:감가상각률 25%	-	-	-	-	-	15	9.41	3.7
獨 逸	50 <sup>5)</sup>	정액법:감가상각률 10~20%	-	-	-	-	-	15	13.59	4.1
프 랑 스	33½ <sup>6)</sup>	정액법:감가상각률 10~15%	-	-	-	-	-	15	16.01	2.4
네덜란드	40 <sup>6)</sup>	정액법:내용연수 10년	-	-	-	-	-	15	12.75	3.7
臺 灣	25 <sup>7)</sup>	정액법:내용연수 2~5년	-	-	-	-	-	20 <sup>13)</sup>	9.25	4.5
싱가포르	31	정액법:내용연수 5~16년, 투자연도에 총투자액의 20% 상각	-	-	-	-	-	10	5.95	2.3
泰 國	30 <sup>8)</sup>	정액법:감가상각률 5%	-	-	-	-	-	10	15.00	4.1
말레이시아	35	정액법:감가상각률 8~20% 투자연도에 총투자액의 20% 상각	-	-	-	-	-	15	8.13	4.7

- 註: 1) 課稅標準金額이 1억원 이하이면 18%, 1억원 초과이면 초과금액에 32%의 세율이 적용됨.  
 2) 5만달러 이하는 15%, 5만달러 초과 7만 5천달러 이하는 25%, 7만 5천달러 초과 1천만달러 이하는 34%, 그리고 1천만달러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됨.  
 3) 一般法人의 경우이며 公益法人은 27%임.  
 4) 25만과운드 이하는 25%, 25만과운드 초과 125만과운드 이하는 35%, 125만과운드 초과는 33%의 세율이 적용됨.  
 5) 留保利潤의 경우이며 配當利潤은 36%임.  
 6) 25만길다 이하는 40%, 25만길다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됨.  
 7) 最高稅率임.  
 8) 上場法人의 경우이며 기타는 35%임.  
 9) 韓國, 美國, 日本, 네덜란드는 平均 法定耐用年數임.  
 10) 二重遞減法은 定率法과 기본적으로는 같으나 매년 減價償却率의 2배를 減價償却하는 방법임.  
 11) 전체 투자액 중 投資支援金の 비중임. 稅額控除도 포함됨.  
 12) 韓國과 맺은 각국의 조세조약에 규정된 이자소득에 대한 制限稅率 基準임. 韓國의 源泉利子所得稅率은 韓·美間 租稅協約 基準임.  
 13) 臺灣과 韓國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없고 臺灣의 國內稅法에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이 20%로 규정되어 있음.  
 14) 연평균 은행대출이자율 기준임. 말레이시아는 1991년, 프랑스와 泰國은 1989년 수치임.

資料: 臺灣 中央銀行, 『金融統計月報』, 各號.  
 大韓商工會議所·韓國租稅研究院, 『企業의 減價償却實態와 政策示唆性』, 1994. 6.  
 財務部 稅制室 國際租稅課, 『日本の 國稅解說』, 1993. 8.  
 ———, 『日本の 稅制概要』, 1993. 3.  
 統計廳, 『主要海外經濟指標』, 1993.  
 ———, 『韓國經濟指標』, 1993. 4/4.  
 韓國租稅研究院, 『아시아 主要國의 稅法』, 內部研究用 資料, 1994. 5.  
 ———, 『外國의 減價償却制度』, 內部研究用 資料, 1994. 5.  
 ———, 『EC加盟國의 稅法』, 內部研究用 資料, 1994. 4.  
 ———, 『G7의 稅制』, 內部研究用 資料, 1994. 5.  
 玄鎮權, 「減價償却政策的 改善方向」, 韓國租稅研究院 政策討論會 主題發表, 1994. 5.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Nov. 1993.

(表 IV-2) 特別投資分野

(單位: %, 年)

	法定 法人稅率	減價償却制度 (機械類) <sup>9)</sup>	投資支援率 <sup>10)</sup>	租稅休日 期 間		租稅休日 期間의 稅率		源泉利子 所得稅率 <sup>24)</sup>	利子率 <sup>25)</sup> (1992)	消費者物價 上昇率(1992)
韓 國	32 <sup>1)</sup>	정률법:내용연수 7.97년, 잔존가액 10%	-	4 <sup>22)</sup>	2 <sup>22)</sup>	0 <sup>22)</sup>	16 <sup>22)</sup>	12	10.00	6.2
美 國	35 <sup>2)</sup>	이중채감법 <sup>10)</sup> :내용연수 5년	10 <sup>17)</sup>	-	-	-	-	12	6.25	3.0
日 本	37.5 <sup>3)</sup>	정률법:내용연수 9.66년, 잔존가액 5% 투자연도에 총투자액의 75% 상각 <sup>11)</sup>	-	-	-	-	-	12	6.15	1.7
英 國	35 <sup>4)</sup>	정률법:감가상각률 25%	-	-	-	-	-	15	9.41	3.7
獨 逸	50 <sup>5)</sup>	정액법:감가상각률 10~20% 투자연도에 총투자액의 50% 상각 <sup>12)</sup>	-	-	-	-	-	15	13.59	4.1
프 랑 스	33⅓	정액법:감가상각률 10~15%	50 <sup>18)</sup>	-	-	-	-	15	16.01	2.4
네 덜 란 드	40 <sup>6)</sup>	정액법:내용연수 10년	-	-	-	-	-	15	12.75	3.7
臺 灣	25 <sup>7)</sup>	정액법:내용연수 1~2.5년 <sup>13)</sup>	5~20 <sup>19)</sup>	-	-	-	-	20 <sup>26)</sup>	9.25	4.5
싱 가 포 르	31	정액법:내용연수 3년 <sup>14)</sup>	50 <sup>20)</sup>	5~10 <sup>28)</sup>	-	0	-	10	5.95	2.3
泰 國	30 <sup>8)</sup>	정액법:감가상각률 5%	25 <sup>21)</sup>	3~8 <sup>21)</sup>	5 <sup>21)</sup>	0 <sup>21)</sup>	15 <sup>21)</sup>	10	15.00	4.1
말 레 이 시 아	35	정액법:감가상각률 8~20% 투자연도에 총투자액의 60% 상각 <sup>15)</sup>	-	5 <sup>15)</sup>	-	0 <sup>15)</sup>	-	15	8.13	4.7

- 註: 1) 課稅標準金額이 1억원 이하이면 18%, 1억원 초과이면 초과금액에 32%의 세율이 적용됨.
- 2) 5만달러 이하는 15%, 5만달러 초과 7만 5천달러 이하는 25%, 7만 5천달러 초과 1천만달러 이하는 34%, 그리고 1천만달러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됨.
- 3) 一般法人의 경우이며 公益法人은 27%임.
- 4) 25만파운드 이하는 25%, 25만파운드 초과 125만파운드 이하는 35%, 125만파운드 초과는 33%의 세율이 적용됨.
- 5) 留保利潤의 경우이며 配當利潤은 36%임.
- 6) 25만길다 이하는 40%, 25만길다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됨.
- 7) 最高稅率임.
- 8) 상장법인의 경우이며 기타는 35%임.
- 9) 韓國, 美國, 日本, 네덜란드는 平均 法定耐用年數임.
- 10) 二重遞減法은 定律法과 기본적으로는 같으나 매년 減價償却率의 2배를 減價償却하는 방법임.
- 11) 特別償却限度額은 대상설비 취득가액의 4~75%인데, 에너지유효이용제조설비, 석유자원공급안정화설비 등에 대해서는 最高 特別償却率인 75%를 인정해 줌.
- 12) 舊東獨地域 投資時 자산의 取得原價·製造原價에 대해 인정하는 특별상각률임. 순자산 24만DM 이하 또는 과세표준 자본액이 50만DM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취득동산의 취득연도에서 20%의 특별상각이, 또 2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4년간은 통상의 감가상각에 더하여 취득가액 전액을 상각할 수 있음.
- 13) 株式會社 固定資産의 耐用年數에 있어서, 연구개발, 실험, 품질검사에 전용하는 기계설비 및 에너지를 절약 또는 대체하는 機械設備은 2년의 가속상각이 인정되며, 산업구조조정, 경상규모의 개선 및 생산방법의 수요에 근거하여 특정 산업에 대해 그 기계설비의 償却年數를 1/2로 단축하는 것이 허용됨.
- 14) 기계 및 설비 중 특정 신규구입자산에 대해 취득가액의 1/3 비율로 特別償却이 인정되므로 기계 및 설비의 범주에 속하는 자산은 3년간 全額 償却이 가능함.
- 15) 건설업과 토목업의 기계 및 설비의 高速減價償却率(取得時 償却率)은 60%이며 기타업은 20%임. 말레이시아 경제발전이 이롭다고 판정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당국이 인정하는 경우 5년간 면제됨.
- 16) 선채 투자액 중 투자지원금의 비중임.
- 17) 기계설비, 일정한 공익사업용 자산 등의 적격자산에 대한 투자에 관해 투자액의 10%(加速償却制度에 의한 耐用年數가 3년인 자산은 6%)의 所得控除 또는 法人稅 稅額控除가 자산을 사용하기 시작한 使用年度에 있어서 인정됨.
- 18) 회사가 대기·수질오염방지장치를 취득한 경우 그 初年度에 50%의 상각이 인정되고 있으며 次年度 이후는 통상의 상각률이 적용됨.

- 19) 주식회사가 自動化生産設備 또는 기술에 대한 투자, 오염방지시설 또는 기술의 매입, 연구개발, 인재훈련과 국제적 브랜드 확립에 대한 투자 등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의 5~20%를 당해연도 납부의 營利事業所得에서 控除할 수 있음.
- 20) 經濟擴大獎勵法の 우대조치를 받고 있지 않는 회사가 노동력 절약을 위해 공업용로봇 및 특정 자동화설비를 도입한 경우에는 투자액의 50%까지 투자공제가 인정됨.
- 21) 投資獎勵地域의 獎勵對象企業에 대해 法人稅가 3~8년간 면제되고 해당기간 종료 후에도 추가로 5년간에 걸쳐 法人稅의 50%가 감면됨. 이러한 장려대상기업은 통상의 감가상각 이외에 설비의 건설 또는 설비에 드는 원가의 25%를 한도로 공제가 인정됨.
- 22)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사업,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事業開始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와 그 다음 課稅年度부터 3년 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法人稅 (또는 所得稅)를 전액 감면하며, 그 다음 2년 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50%를 감면함.
- 23) 파이어니어 기업은 파이어니어 제품의 생산개시일로부터 5~10년간의 免稅期間이 인정됨.
- 24) 韓國과 맺은 각국의 조세조약에 규정된 이자소득에 대한 制限稅率 기준임. 韓國의 源泉利子所得稅率은 韓·美間 租稅協約 基準임.
- 25) 年平均 銀行貸出利率 기준임. 말레이시아는 1991년, 프랑스와 태국은 1989년 수치임.
- 26) 臺灣과 韓國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없고 臺灣의 國內稅法에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이 20%로 규정되어 있음.

資料: 臺灣 中央銀行, 『金融統計月報』, 各號.

大韓商工會議所·韓國租稅研究院, 『企業의 減價償却實態와 政策示唆性』, 1994. 6.

財務部 稅制室 國際租稅課, 『日本の 國稅解說』, 1993. 8.

———, 『日本の 稅制概要』, 1993. 3.

統計廳, 『主要海外經濟指標』, 1993.

———, 『韓國經濟指標』, 1993. 4/4.

韓國租稅研究院, 『아시아 主要國의 稅法』, 內部研究用 資料, 1994. 5.

———, 『外國의 減價償却制度』, 內部研究用 資料, 1994. 5.

———, 『EC加盟國의 稅法』, 內部研究用 資料, 1994. 4.

———, 『G7의 稅制』, 內部研究用 資料, 1994. 5.

玄鎮權, 「減價償却政策의 改善方向」, 韓國租稅研究院 政策討論會 主題發表, 1994. 5.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Nov. 1993.

한 算術平均化는 投資支援金制度和 租稅休日制度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또 特別投資分野에서 臺灣이 제공하는 감가상각지원제도상의 지원대상과 투자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다르므로 이는 두 경우(臺灣 A, 臺灣 B)로 나누어 취급하고 싱가포르에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경우(싱가포르 A, 싱가포르 B, 싱가포르 C)로 나눈다. 그러나 泰國과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투자지원금과 조세휴일제도, 그리고 租稅休日制度和 高速減價償却制度가 동시에 같은 지원분야에 적용되므로 구분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모델에 투입될 外生變數들의 값은 <表 IV-3> 및 <表 IV-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表 IV-3> 一般投資分野에 대한 外生變數

	$t_g$	L	a	b	i	$\pi$	$m_i^*$
韓 國	0.32		0.25		0.1	0.062	0.12
美 國	0.35		0.40		0.0625	0.03	0.12
日 本	0.375		0.26		0.0615	0.017	0.12
英 國	0.35		0.25		0.0941	0.037	0.15
獨 逸	0.5	6.7			0.1359	0.041	0.15
프 랑 스	0.33	8			0.1601	0.024	0.15
네덜란드	0.4	10			0.1275	0.037	0.15
臺 灣	0.25	3.5			0.0925	0.045	0.2
싱가포르	0.31	10.5		0.2	0.0593	0.023	0.1
泰 國	0.3	20			0.15	0.041	0.1
말레이시아	0.35	7.14		0.2	0.0813	0.047	0.15

〈表 IV-4〉 特別投資分野에 대한 外生變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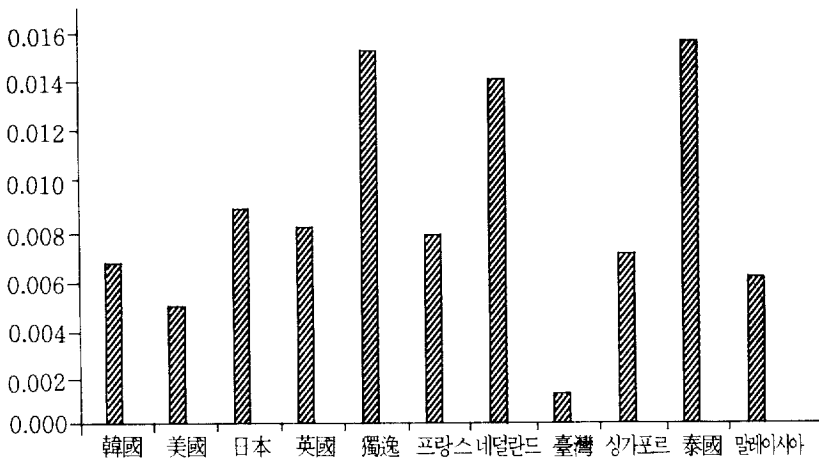
	$t_g$	L	a	b	g	$H_0$	$H_1$	$t_{g1}$	$t_{g2}$	i	$\pi$
韓 國	0.32		0.25			4	2	0	0.16	0.1	0.062
美 國	0.35		0.40		0.1					0.0625	0.03
日 本	0.375		0.26	0.75						0.0615	0.017
英 國	0.35		0.25							0.0941	0.037
獨 逸	0.5	6.7		0.5						0.1359	0.041
프 랑 스	0.33	8			0.5					0.1601	0.024
네덜란드	0.4	10								0.1275	0.037
臺 灣 A	0.25	1.75								0.0925	0.045
臺 灣 B	0.25	3.5			0.125					0.0925	0.045
싱가포르A	0.31	3								0.0595	0.023
싱가포르B	0.31	10.5			0.5					0.0595	0.023
싱가포르C	0.31	10.5				7.5		0		0.0595	0.023
泰 國	0.3	20			0.25	5.5	5	0	0.15	0.15	0.041
말레이시아	0.35	7.14		0.6		5		0		0.0813	0.047

다. 必要稅前收益率 算出

1) 一般投資分野

〈表 IV-5〉 各國의 一般投資分野 必要稅前收益率

		必要稅前收益率			
韓	國	0.0069			
美	國	0.0049			
日	本	0.0090			
英	國	0.0082			
獨	逸	0.0153			
프	랑	스	0.0079		
네	덜	란	드	0.0142	
臺	灣	0.0012			
싱	가	포	르	0.0071	
泰	國	0.0155			
말	레	이	시	아	0.0059



위에서 설명한 모델에 의거하여 과세제도상의 자료를 이용한 결과 위와 같은 各國의 必要稅前收益率을 구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必要稅前收益率의 概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Debt Financing에서 課稅後 資本收益率이 一定하므로 어느 특정 국가의 주어진 課稅制度(稅率 및 各種 投資支援制度를 함께 고려함) 下에서, 그리고 주어진 課稅後 資本收益率下에서 자본의 限界費用과 限界收益이 일치하는 限界投資 상태의 필요한 최소한의 課稅前 資本收益率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정해진 최소한의 자본수익률이 必要稅前收益率의 개념이다. 따라서 必要稅前收益率이 높다는 것은 실제의 資本收益率이 높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특정 국가의 과세 제도하에서의 투자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의 課稅前 投資收益率은 거두어 들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必要稅前收益率이 낮다는 것은 낮은 수준의 課稅前 投資收益率로도 어느 특정 국가의 과세제도하에서 투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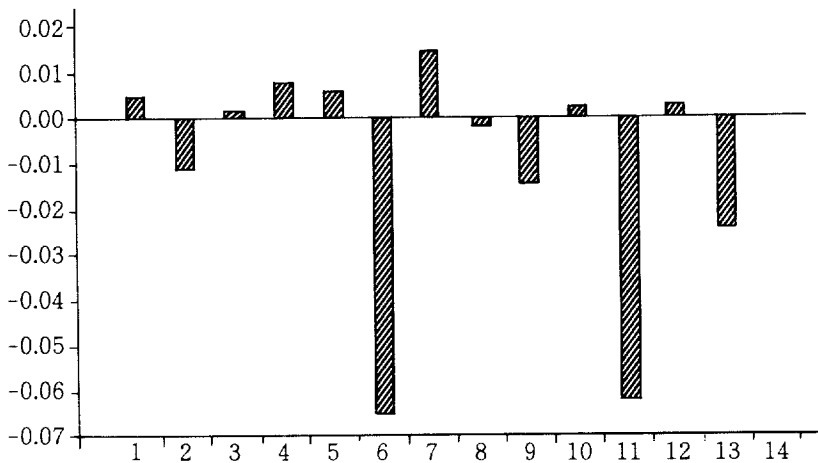
一般投資分野에서의 韓國의 必要稅前收益率은 전체 11개국 중에서 獨逸, 네덜란드, 泰國보다는 낮으나 美國, 臺灣보다는 높고 그의 국가들과는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臺灣을 제외한 아시아국가들보다 美國과 같은 資本輸出國家가 낮은 必要稅前收益率을 보인다는 것은 意外的 發見이다.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각국의 必要稅前收益率의 높이가 이런 격차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다음 節에서 각각의 요인들마다 실제의 경우와는 다른 가정에서 구한 必要稅前收益率과 實際의 必要稅前收益率을 비교함으로써 밝혀 보기로 한다.

이 모델에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설정된 가정들(예를 들어  $\delta=1/10$ )이 있으므로 각국의 必要稅前收益率의 절대치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다만 必要稅前收益率의 국가간의 相對值를 비교함으로써 각국의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제도가 投資立地 決定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외국과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2) 特別投資分野

〈表 IV-6〉 各國의 特別投資分野 必要稅前收益率

		必要稅前收益率
韓	國	0.0040
美	國	-0.0102
日	本	0.0008
英	國	0.0082
獨	逸	0.0067
프	랑	-0.0652
네	덜	0.0142
란	드	
臺	灣	-0.0003
臺	灣	-0.0151
싱	가	0.0017
가	포	-0.0617
포	르	0.0024
르	C	
泰	國	-0.0229
말	레	-0.0000
이	시	
아		



- |            |            |         |           |            |
|------------|------------|---------|-----------|------------|
| 1. 韓國      | 2. 美國      | 3. 日本   | 4. 英國     | 5. 獨逸      |
| 6. 프랑스     | 7. 네덜란드    | 8. 臺灣 A | 9. 臺灣 B   | 10. 싱가포르 A |
| 11. 싱가포르 B | 12. 싱가포르 C | 13. 泰國  | 14. 말레이시아 |            |

일반투자분야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각국의 선별된 特別投資分野에 대한 投資의 必要稅前收益率을 산출하여 비교할 경우 韓國은 英國, 獨逸, 네덜란드보다는 낮으나 그외 모든 다른 경우들보다는 必要稅前收益率이 높다. 프랑스, 싱가포르 B가 가장 낮은 必要稅前收益率을 가지며 泰國, 美國, 臺灣 B가 그 다음 순위이다.

일반투자분야와 특별투자분야를 비교할 경우 韓國은 일반투자분야의 투자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지 않은 稅前收益率을 보이나 특별투자분야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必要稅前收益率을 나타냄으로써 特別投資分野의 支援을 위한 韓國의 投資支援制度가 별다른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 2. 各種 投資支援制度의 投資支援效果 分析

### 가. 法人稅率 引下의 支援效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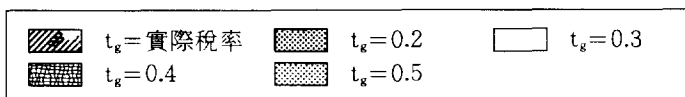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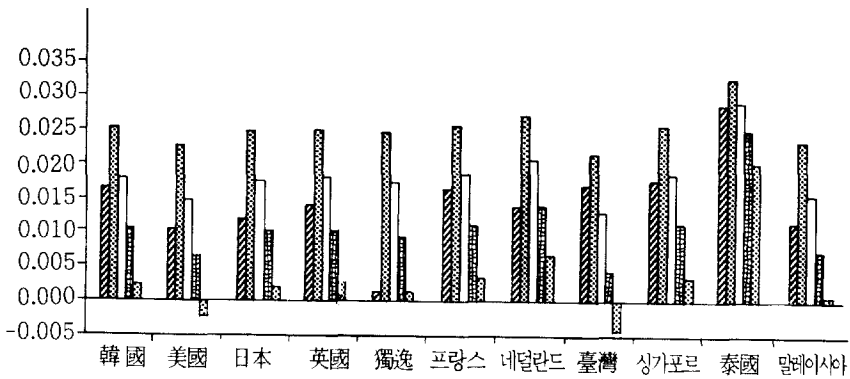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감가상각제도나 투자지원금제도 등 각종 投資支援制度和 法人稅率 引下 등의 投資支援 效果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러한 투자지원 수단들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와 실제 경우를 비교해 본다.

#### 1) 一般投資分野

法定法人稅率의 引上이 必要稅前收益率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閉鎖經濟下의 경우와 開放經濟下의 경우를 구분하여 각 경우에 개별 국가들에 있어서 기업의 필요세전수익률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閉鎖經濟下에서는 국가간에 자본이동이 없으므로 이자율  $i$ 나  $\pi$ ,  $t_g$  등은 개별 국가의 수치를 적용해야 하며 거주지국이나 국제시장의 이자율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개별 국가들의 필요세전수익률을 살펴보면 <表 IV-7>과 같다.

〈表 IV-7〉 法人稅率과 一般投資分野의 必要稅前收益率(閉鎖經濟下)

	必要稅前收益率				
	$t_g = \text{實際稅率}$	$t_g = 0.2$	$t_g = 0.3$	$t_g = 0.4$	$t_g = 0.5$
韓國	0.0167	0.0252	0.0181	0.0106	0.0027
美國	0.0108	0.0229	0.0149	0.0065	-0.0022
日本	0.0122	0.0249	0.0178	0.0103	0.0022
英國	0.0144	0.0252	0.0181	0.0106	0.0027
獨逸	0.0012	0.0247	0.0173	0.0095	0.0012
프랑스	0.0167	0.0257	0.0188	0.0114	0.0035
네덜란드	0.0142	0.0272	0.0210	0.0142	0.0067
臺灣	0.0175	0.0218	0.0132	0.0044	-0.0047
싱가포르	0.0181	0.0256	0.0188	0.0115	0.0036
泰國	0.0294	0.0328	0.0294	0.0253	0.0204
말레이시아	0.0119	0.0236	0.0159	0.0078	0.0008



〈表 IV-7〉에서는 모든 나라에서 法定法人稅率을 增加시키면 必要稅前收益率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살펴보자. 우선 法定法人稅率( $t_g$ )의 인상은 有效法人稅率( $t$ )<sup>11)</sup>의 인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必要稅前收益率( $P$ )을 상승시키는 한편〈式 (7)〉 減價償却制度로 인한 投資支援效果( $A$ )를 향상시켜서〈式 (9)~(12)〉  $P$ 를 하락시키는 역할도 한다. 또 法定法人稅率( $t_g$ )의 인상은 기업의 內部割引率( $\rho$ )을 하락시키는데〈式 (15)〉 이는 우선  $P$ 를 직접 하락시키는 역할을 하고〈式 (7)〉 한편으로는  $A$ 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통하여〈式 (9)~(12)〉  $P$ 를 다시 한 번 하락시킨다. 이러한 관계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begin{array}{rcl}
 t_g \uparrow & \left[ \begin{array}{l} t \uparrow \\ \rho \downarrow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l} P \uparrow \\ A \uparrow - P \downarrow \end{array} \right. & \begin{array}{l} \textcircled{1} \\ \textcircled{2} \end{array} \\
 & & \left[ \begin{array}{l} P \downarrow \\ A \uparrow - P \downarrow \end{array} \right. & \begin{array}{l} \textcircled{3} \\ \textcircled{4} \end{array}
 \end{array}$$

이러한 관계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法定法人稅率( $t_g$ )의 引上이  $t$ 의 인상을 통하여  $P$ 에 미치는 영향, 즉 ①과 ②의 효과는 서로 상쇄되는 방향을 보임으로써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比較靜態分析을 적용하여 본 결과

$$\frac{dp}{dt} = \frac{C_1(1-g - \frac{C_2 t}{L\rho})}{(1-t)^2} - \frac{C_2 C_1}{(1-t)L\rho} = \frac{C_1 L\rho(1-g) - C_2 t - C_2 C_1(1-t)}{(1-t)^2 L\rho}$$

으로 여기서  $C_1 = \delta + \rho - \pi$ ,  $C_2 = 1 - e^{-L\rho}$ 이며,  $C_1, C_2 > 0$ 이다. 따라서  $C_1 L\rho(1-g) > 0$ ,  $C_2 t > 0$ ,  $C_2 C_1(1-t) > 0$ , 그리고  $(1-t)^2 L\rho > 0$ 이며 결과적으로  $\frac{dp}{dt} \leq 0$  으로 부호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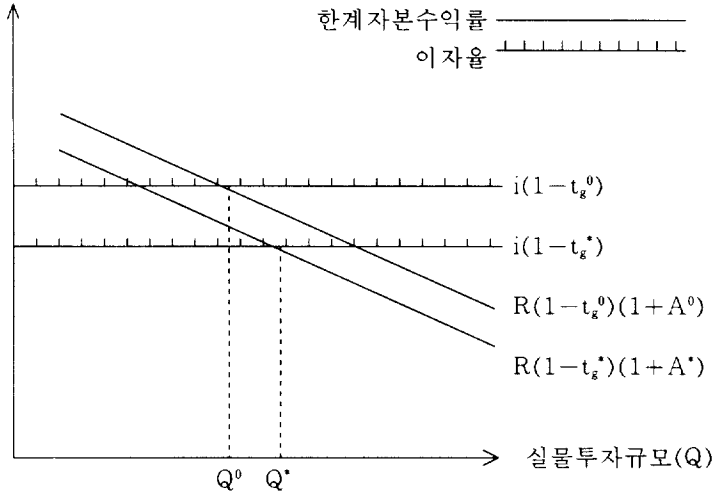
11) 有效法人稅率( $t$ )은 有效租稅負擔率과는 다른 개념이며 法定法人稅率( $t_g$ )에다가 다만 租稅休日制度로 인한 稅輕減 效果를 내생화한 것이다.

즉,  $t$ 가  $P$ 에 미치는 영향이 肯定的인지 否定的인지는 알 수 없다. 이는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감가상각제도의 투자지원효과 상승으로 必要稅前收益率을 낮추는 효과와 법인세율 인상이 직접적으로 必要稅前收益率을 높여 주는 효과가 상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율의 인상은 기업의 內部割引率  $\rho$ 를 감소시키는데  $\rho$ 의 감소가  $P$ 에 미치는 영향은 위의 ③, ④에서 보듯이 뚜렷이 必要稅前收益率을 떨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法定法人稅率의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內部割引率  $\rho$ 의 감소는 해당 투자프로젝트단위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最小限의 稅前收益率  $P$ 를 낮추어 준다. 또  $\rho$ 의 감소는 감가상각제도로 인한 未來의 投資支援效果를 現在價値化하는데 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을 뜻하므로  $A$ 가 증가하고 이는  $P$ 를 낮추어 준다.

이와 같이 法定法人稅率의 引上은 위의 경로를 통해 全般的인 投資促進 效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를 두고 세율 인상이 투자자의 순이익을 증대시켰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기업가의 순이익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촉진되는 것은 이 모델에서 가정된 實物投資와 金融投資間의 代替關係 때문이다. 모델에서 모든 기업가에게는 명목이자율만큼의 수익률을 보이는 金融投資가 實物投資의 機會費用이며 금융투자와 실물투자 모두 그 수익은 法人稅로써 과세된다. 實物投資는 감가상각규정에 의해 투자지원효과를 누릴 수 있음에 반해 金融投資는 마찬가지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면서도 투자지원효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法人稅率이 높을수록 고세율이 금융 및 실물투자에 함께 적용되는 반면 減價償却規程으로 인한 투자지원효과  $A$ 는 커지기 때문에, 法人稅率의 引上은 金融投資보다 實物投資를 有利하게 하여 投資를 促進시킨다는 결론이 가능해진다. 이런 관계는 [圖 IV-1]과 같은 단순화된 그림으로 좀더 가시적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圖 IV - 1〕 限界資本收益率과 利率에 의한 投資資本 決定



어떤 시점에서 자본의 限界收益率  $R^0$ 와 法人稅率  $t_g^0$ 하의 實物投資規模는  $Q^0$ 로 결정된다. 즉, 稅後 限界資本收益率과 稅後 利率이 一致하는 점에서 투자규모가 결정된다. 여기서  $t_g^0$ 가  $t_g^*$ 로 상승되는 경우 상승된 세율만큼 이자율  $i$ 가 더 많이 할인되어 기업의 실물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작용하게 되고 限界資本收益率 曲線도 상승된 세율만큼 하향이동하게 되나 實物投資의 경우 減價償却規定 등의 投資支援效果로 인하여 그 하향이동 정도가 약하다<sup>12)</sup>. 그 결과에 따른 새로운 均衡點  $Q^*$ 는  $Q^0$ 보다 더 큰 투자규모가 실현됨을 의미한다<sup>13)</sup>.

安鍾錫(1994)은 주어진 투자지원제도하에서 法定法人稅率 變化의 投資支援效果는 有效稅率( $t_e$ )과 法定法人稅率( $t_g$ )의 상대적 변화에

12) 감가상각제도 등으로 인한 투자지원 효과  $A$ 가 法定法人稅率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즉,  $t_g^* > t_g^0$ 이면  $A^* > A^0$ 이다.

13) 이로써 앞에서 설명된 주요 資本輸出國인 美國, 日本, 獨逸 등의 必要稅前收益率이 예상과 달리 낮은 이유가 설명된다. 즉, 이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法人稅率이 높고 減價償却規定이 관대하기 때문이다.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sup>14)</sup>.  $\varphi = (\frac{1-t_e}{1-t_g})$ 라 할 때  $\frac{d\varphi}{dt_g} > 0$  이면, 즉  $t_g$ 의 증가율보다  $t_e$ 의 증가율이 낮은 경우에는 法定法人稅率의引下는 투자를 오히려 감소시킬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법정법인세율과 투자는 負(-)의 상관관계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本論文에서 나타난 법인세율 인상의 投資誘引 效果는 한국의 현행 제도가 前者에 가깝기 때문이고, 이러한 法人稅率 引上和 投資規模 사이의 正(+)의 相關關係를 보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각 나라가 활용하고 있는 各種 投資支援制度로 인하여  $t_g$ 의 증가율보다  $t_e$ 의 증가율이 높을 경우는 실제로 발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有效稅率  $t_e$ 와는 다른 개념인 必要稅前收益率  $P$ 와  $t_g$ 의 관계로 보더라도 어떤 나라가 전혀 투자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frac{dP}{dt_g} = 0$ 으로 法定法人稅率增減이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조금이라도 投資支援制度를 활용한다면  $\frac{dP}{dt_g} < 0$ 이 성립하여 세율인상은 必要稅前收益率을 낮추어서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기타 대부분의 나라들이 投資支援制度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法定法人稅率의 引上和 投資增大의 正(+)의 相關關係는 특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본 논문이 중점을 두고 있는 開放經濟下에서의 必要稅前收益率은 폐쇄경제하에서의와 조금 다르다. 개방경제하에서는 투자자에게 거주지국 이자율(혹은 국제시장 이자율)  $i$ 로의 금융투자 기회가 상존한다고 보므로 식 (15)의 기업의 內部割引率  $\rho = (1-t_g)i$ 에서  $t_g$ 와  $i$ 는 居住地國의 利子率과 法人稅率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모든 나라의 투자에 동일한  $\rho$ 가 적용된다. 이렇게 얻어진 결과가 <表 IV-8>에 나타난 必要稅前收益率이다. 여기서의 결과가 <表 IV-7>과

14) 安鍾錫, 『租稅政策이 國內外 直接投資에 미치는 效果 分析』, 韓國租稅研究院, 근간예정. 有效稅率과 必要稅前收益率의 개념은 本章 p. 59의 각주 2)와 p. 62를 참조하기 바란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주된 이유는 앞서 설명한  $t_e$ 의 변화가 필요세전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①~④의 네 가지 경로 중  $\rho$ 가 모든 국가에 있어서 동일하기 때문에 ③과 ④의 경로를 통한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즉, 法人稅率의引上이 P를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인세율의 인하가 필요세전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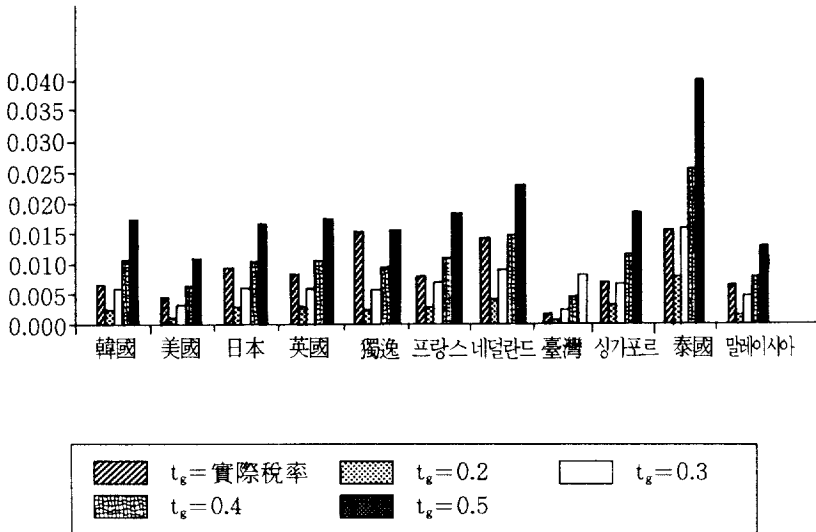
〈表 IV-8〉에서 한국의 예를 들어 설명할 경우 법인세율을 50%에서 40%로 10% 인하할 경우 필요세전수익률은 0.64%밖에 인하되지 않으며 이 인하폭은 법인세율을 40%에서 30%로, 그리고 30%에서 20%로 인하시킬 때 더욱 줄어들어 각각 0.45%, 0.34%의 필요세전수익률 인하만을 가져온다. 이는 한 나라에서 세제상 허용된 減價償却이 投資財 實質磨耗分の 經濟的 價値보다 높은 경우<sup>15)</sup> 이로 인한 투자지원 효과는 세율과 비례하게 되므로 세율인하 자체로 인한 투자지원 효과가 감가상각제도를 통한 투자지원 효과의 감소를 통해 일정부분 相殺되기 때문이다<sup>16)</sup>.

1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의 稅制上 허용된 減價償却 規程은 모델에서 가정하고 있는 自然磨耗率 10%보다 대체적으로 높다.

16) Hans-Werner Sinn, *Capital Income Taxation and Resource Allocation*, Amsterdam: North-Holland, 1987; D. Schneider, *Investitionen, Finanzierung und Besteuerung*, Wiesbaden: Opladen, 1990, p. 206; Hans-Werner Sinn, *Kapitaleinkommensbesteuerung*, Tübingen: J.C.B. Mohr, 1985, p. 131.

〈表 IV-8〉 法人稅率과 一般投資分野의 必要稅前收益率(開放經濟下)

	必要稅前收益率				
	$t_g$ =實際稅率	$t_g=0.2$	$t_g=0.3$	$t_g=0.4$	$t_g=0.5$
韓國	0.0069	0.0027	0.0061	0.0106	0.0170
美國	0.0049	0.0012	0.0035	0.0065	0.0108
日本	0.0090	0.0026	0.0059	0.0103	0.0164
英國	0.0082	0.0027	0.0061	0.0106	0.0170
獨逸	0.0153	0.0023	0.0054	0.0095	0.0153
프랑스	0.0079	0.0030	0.0066	0.0114	0.0182
네덜란드	0.0142	0.0041	0.0084	0.0142	0.0223
臺灣	0.0012	0.0004	0.0021	0.0044	0.0076
싱가포르	0.0071	0.0031	0.0067	0.0115	0.0182
泰國	0.0155	0.0082	0.0155	0.0253	0.0389
말레이시아	0.0059	0.0017	0.0043	0.0078	0.0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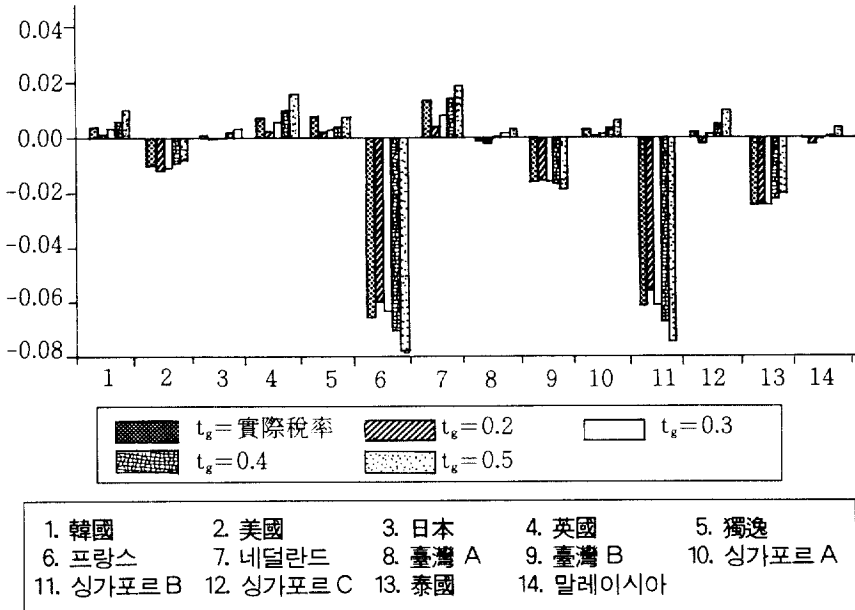


2) 特別投資分野

여기에서도 一般投資分野에서 나타난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表 N-9〉 法人稅率과 特別投資分野의 必要稅前收益率

	必要稅前收益率				
	$t_g$ =實際稅率	$t_g=0.2$	$t_g=0.3$	$t_g=0.4$	$t_g=0.5$
韓國	0.0040	0.0011	0.0034	0.0063	0.0100
美國	-0.0102	-0.0111	-0.0105	-0.0098	-0.0088
日本	0.0008	-0.0009	-0.0000	0.0011	0.0026
英國	0.0082	0.0027	0.0061	0.0106	0.0170
獨逸	0.0067	0.0002	0.0017	0.0038	0.0067
프랑스	-0.0652	-0.0582	-0.0634	-0.0702	-0.0798
네덜란드	0.0142	0.0041	0.0084	0.0142	0.0223
臺灣 A	-0.0003	-0.0008	0.0001	0.0013	0.0030
臺灣 B	-0.0151	-0.0149	-0.0154	-0.0160	-0.0169
싱가포르 A	0.0017	0.0001	0.0016	0.0035	0.0063
싱가포르 B	-0.0617	-0.0569	-0.0612	-0.0668	-0.0747
싱가포르 C	0.0024	-0.0010	0.0021	0.0059	0.0110
泰國	-0.0229	-0.0243	-0.0229	-0.0213	-0.0194
말레이시아	-0.0000	-0.0015	-0.0006	0.0006	0.0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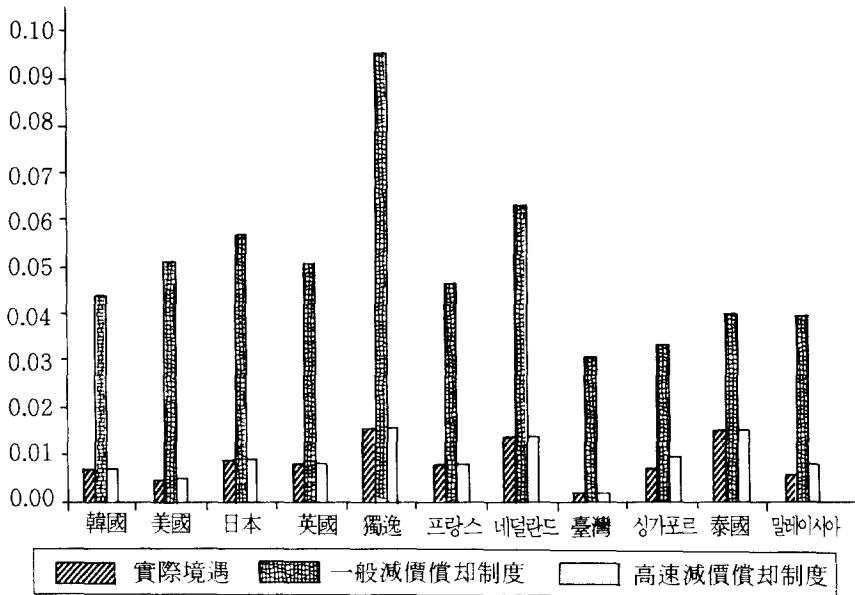


나. 減價償却制度의 支援效果

1) 一般投資分野

〈表 IV-10〉 減價償却制度와 一般投資分野의 必要稅前收益率

	必要稅前收益率		
	實際 境遇	一般減價償却制度를 통한 支援效果가 없는 境遇 (A <sub>1</sub> =0)	高速減價償却制度를 통한 支援效果가 없는 境遇 (A <sub>2</sub> =0)
韓國	0.0069	0.0441	0.0069
美國	0.0049	0.0508	0.0049
日本	0.0090	0.0568	0.0090
英國	0.0082	0.0508	0.0082
獨逸	0.0153	0.0960	0.0153
프랑스	0.0079	0.0463	0.0079
네덜란드	0.0142	0.0633	0.0142
臺灣	0.0012	0.0307	0.0012
싱가포르	0.0071	0.0332	0.0094
泰國	0.0155	0.0400	0.0155
말레이시아	0.0059	0.0402	0.0078



一般減價償却制度를 통한 支援效果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의 우리나라의 必要稅前收益率은 美國, 日本과 유럽의 자본수출국가들보다는 낮으며 아시아의 경쟁국가들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實際境遇의 必要稅前收益率과 이 假定下의 必要稅前收益率의 격차, 즉 一般減價償却制度의 投資支援效果는 모든 국가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獨逸, 네덜란드, 日本, 美國의 경우 그 격차가 각각 8.07%, 4.91%, 4.78%, 4.59%로서 가장 큰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격차는 3.72%로 臺灣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泰國를 제외하고는 가장 작은 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감가상각제도를 통한 투자지원제도의 효과는 각국에서 평균 4% 이상 이므로 앞에서 法人稅率을 10% 인하했을 때의 투자지원 효과가 평균 0.5% 미만이었다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규모이며 이를 통한 투자지원의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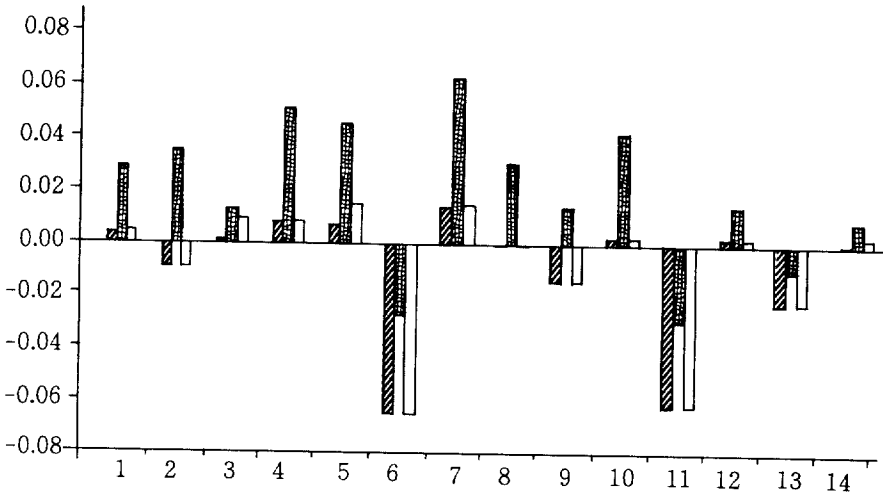
一般減價償却制度를 改善하는 경우의 투자지원 효과는 <表 IV-10>과 <表 IV-11>의 대만과 싱가포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특별투자분야의 대만 A와 싱가포르 A는 각각 일반투자분야의 대만과 싱가포르의 경우보다 일반감가상각 규정을 관대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 두 경우의 必要稅前收益率의 격차는 각각 0.15%, 0.54%로서 작은 투자지원효과를 보여준다. 이는 대만과 싱가포르가 일반감가상각제도를 개선하기 이전에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이미 상당히 관대한 감가상각 규정을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결과는 일반감가상각제도 자체가 가지는 지원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며 각국이 가지고 있는 감가상각규정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高速減價償却制度의 投資支援效果는 위의 <表 IV-10>에서 고속감가상각제도를 통한 지원효과가 없는 경우( $A_2=0$ )와 실제경우와의 必要稅前收益率의 격차로 나타난다. 일반투자분야의 경우 이 연구의 비교대상 국가들 중 싱가포르과 말레이시아만이 高速減價償却制度를 사용하고 있는데 必要稅前收益率 격차는 각각 0.23%, 0.19%로 그다지 크지 않다.

이 결과는 위 <表 IV-7>의 결과와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 가지 상황은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 <表 IV-7>은 一律的인 減價償却規定下에서 法人稅率의 變化가 必要稅前收益率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가 있으며 <表 IV-10>은 法人稅率이 주어진 경우 減價償却率의 變化가 必要稅前收益率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가 있다. 감가상각률의 변화가 법인세율의 변화보다 必要稅前收益率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式 (9), (10) 및 (11)에서 알 수 있다. 法人稅率은 매기간의 감가상각에 적용되고 그 다음 기간의 감가상각 규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한 支援效果  $A_1$ 은 항상 法人稅率에 比例하게 된다. 반면에 上昇된 減價償却率은 다음 해나 그 다음 기간의 감가상각을 줄이므로 이 경우  $A_1$ 은 감가상각률에 비례하여 높아질 수 없다.

<表 IV-11> 減價償却制度和 特別投資分野의 必要稅前收益率

	必要稅前收益率		
	實際 境遇	一般減價償却制度를 통한 支援效果가 없는 境遇 ( $A_1=0$ )	高速減價償却制度를 통한 支援效果가 없는 境遇 ( $A_2=0$ )
韓國	0.0040	0.0289	0.0040
美國	-0.0102	0.0357	-0.0102
日本	0.0008	0.0127	0.0090
英國	0.0082	0.0508	0.0082
獨逸	0.0067	0.0470	0.0153
프랑스	-0.0652	-0.0269	-0.0652
네덜란드	0.0142	0.0633	0.0142
臺灣 A	-0.0003	0.0307	-0.0003
臺灣 B	-0.0151	0.0143	-0.0151
싱가포르A	0.0017	0.0420	0.0017
싱가포르B	-0.0617	-0.0290	-0.0617
싱가포르C	0.0024	0.0151	0.0024
泰國	-0.0229	-0.0104	-0.0229
말레이시아	-0.0000	0.0087	0.0030



實際境遇
  一般減價償却制度
  高速減價償却制度

- |            |            |         |           |            |
|------------|------------|---------|-----------|------------|
| 1. 韓國      | 2. 美國      | 3. 日本   | 4. 英國     | 5. 獨逸      |
| 6. 프랑스     | 7. 네덜란드    | 8. 臺灣 A | 9. 臺灣 B   | 10. 싱가포르 A |
| 11. 싱가포르 B | 12. 싱가포르 C | 13. 泰國  | 14. 말레이시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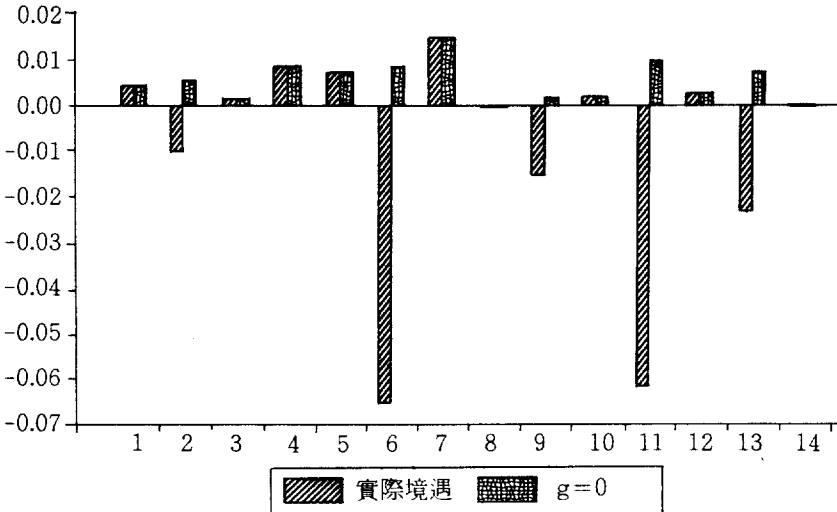
2) 特別投資分野

特別投資分野에서 高速減價償却制度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日本, 獨逸, 말레이시아이다. 이들 나라의 고속감가상각제도로 인한 투자지원효과는 0.72%, 0.86%, 0.30%로 나타났고 위의 일반투자분야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高速減價償却制度를 통한 투자지원 효과는 法人稅率 引下를 통한 투자지원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감가상각 규정을 관대히 하고 동시에 고속감가상각을 적용받는 부분의 폭을 늘려줄 경우의 투자지원 효과는 법인세율 인하효과보다 강력한 것이다.

다. 投資支援金制度의 支援效果

〈表 IV-12〉 投資支援金과 必要稅前收益率(特別投資分野)

	必要稅前收益率	
	實際 境遇	投資支援金制度를 통한 支援效果가 없는 境遇( $g=0$ )
韓 國	0.0040	0.0040
美 國	-0.0102	0.0049
日 本	0.0008	0.0008
英 國	0.0082	0.0082
獨 逸	0.0067	0.0067
프 랑 스	-0.0652	0.0079
네 덜 란 드	0.0142	0.0142
臺 灣 A	-0.0003	-0.0003
臺 灣 B	-0.0151	0.0012
싱 가 포 르 A	0.0017	0.0017
싱 가 포 르 B	-0.0617	0.0094
싱 가 포 르 C	0.0024	0.0024
泰 國	-0.0229	0.0069
말 레 이 시 아	-0.0000	-0.0000



- |            |            |         |           |            |
|------------|------------|---------|-----------|------------|
| 1. 韓國      | 2. 美國      | 3. 日本   | 4. 英國     | 5. 獨逸      |
| 6. 프랑스     | 7. 네덜란드    | 8. 臺灣 A | 9. 臺灣 B   | 10. 싱가포르 A |
| 11. 싱가포르 B | 12. 싱가포르 C | 13. 泰國  | 14. 말레이시아 |            |

이 연구의 비교대상 국가들은 일반투자분야에서 投資支援金制度를 통하여 투자지원을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를 비교할 수 없다.

특별투자분야의 비교대상 국가들 중 美國, 프랑스, 臺灣, 싱가포르와 泰國이 投資支援金制度(投資稅額控除制度 포함)를 통하여 투자를 행하고 있다. 實際境遇와 투자지원금제도를 통한 투자지원효과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 경우의 必要稅前收益率의 격차는 프랑스와 싱가포르 B의 경우에 7.31%와 7.11%로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며 美國의 경우 1.51%, 臺灣 B 1.63%, 泰國 2.98%로 그다지 크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프랑스와 싱가포르의 投資支援金 支給率과 美國, 臺灣, 泰國의 그것이 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高速減價償却制度和 投資支援金制度를 통한 투자지원효과를 비교 상태분석을 이용하여 비교하여 볼 수 있다.

$$\frac{dp}{db} = -\frac{(1 - \frac{1 - e^{-L\rho}}{L\rho})(\delta + \rho - \pi)t}{1 - t}$$
이며 
$$\frac{dp}{dg} = -\frac{(\delta + \rho - \pi)}{1 - t}$$
이므로  
 高速減價償却制度를 통한 投資支援效果는 투자지원금제도를 통한 투자지원효과보다  $(1 - \frac{1 - e^{-L\rho}}{L\rho})t$ 배만큼 약하다. 여기서  $1 - e^{-L\rho} > 0$ 이므로  $(1 - \frac{1 - e^{-L\rho}}{L\rho})t$ 가 1보다 클 수는 없다.

이렇게 볼 때 모든 투자지원제도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지니는 것은 投資支援金制度인 것이 분명하다. 즉, 비교대상 국가들 중 가장 적은 투자지원금률을 보이는 美國의 경우(〈表 IV-2〉 참조)에도 투자지원금제도에 의한 지원효과는 1.51%로서 법인세율 인하나 고속감가상각제도, 일반감가상각제도 등의 지원효과보다 강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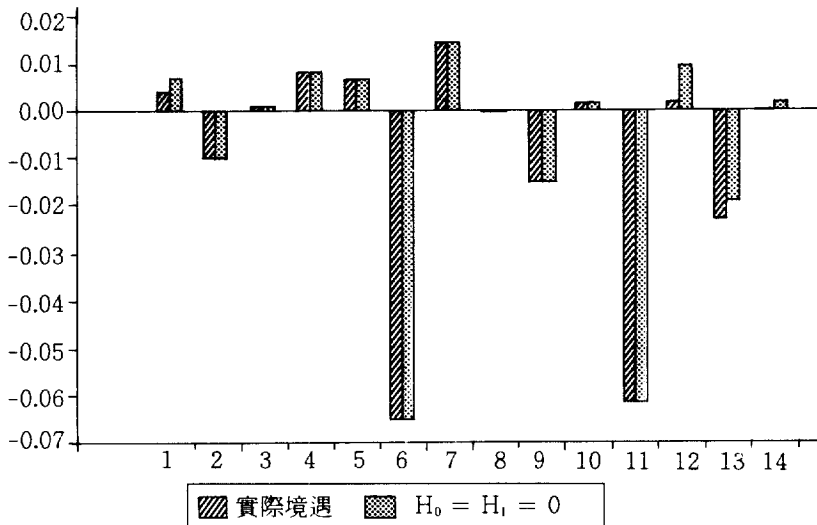
이 연구의 비교대상 국가들은 一般投資分野에서 租稅休日制度를 통하여 투자지원을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를 비교할 수 없다.

特別投資分野의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 韓國과 싱가포르, 泰國, 말레이시아만이 租稅休日制度를 활용하고 있다. 이 네 나라에서 모두

라. 租稅休日制度의 支援效果

〈表 IV-13〉 租稅休日制度와 必要稅前收益率(特別投資分野)

	必要稅前收益率	
	實際 境遇	租稅休日을 통한 投資支援效果가 없는 境遇 ( $H_0 = H_1 = 0$ )
韓國	0.0040	0.0069
美國	-0.0102	-0.0102
日本	0.0008	0.0008
英國	0.0082	0.0082
獨逸	0.0067	0.0067
프랑스	-0.0652	-0.0652
네덜란드	0.0142	0.0142
臺灣 A	-0.0003	-0.0003
臺灣 B	-0.0151	-0.0151
싱가포르 A	0.0017	0.0017
싱가포르 B	-0.0617	-0.0617
싱가포르 C	0.0024	0.0094
泰國	-0.0229	-0.0195
말레이시아	-0.0000	0.0019



- |            |            |         |           |            |
|------------|------------|---------|-----------|------------|
| 1. 韓國      | 2. 美國      | 3. 日本   | 4. 英國     | 5. 獨逸      |
| 6. 프랑스     | 7. 네덜란드    | 8. 臺灣 A | 9. 臺灣 B   | 10. 싱가포르 A |
| 11. 싱가포르 B | 12. 싱가포르 C | 13. 泰國  | 14. 말레이시아 |            |

조세휴일제도를 투자지원제도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의 必要稅前收益率이 實際境遇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즉, 두 경우의 격차가 韓國은 0.29%, 싱가포르 C 0.70%, 태국 0.34%, 말레이시아 0.19%로 조세휴일제도는 투자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綜合評價 및 向後 政策方向

美國, 日本 및 유럽의 대표적인 資本輸出國들 그리고 아시아의 競爭國家와 韓國을 비교할 때 課稅 및 投資支援制度가 이들 나라에 투자되는 자본에 어떠한 수준의 必要稅前收益率을 요구하는지에 관해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현행 제도상 一般投資分野에 있어서 韓國에 대한 投資는 높은 必要稅前收益率을 요구하지 않으나 特別投資分野에 있어서는 비교대상 국가들에 대한 투자보다 상당히 높은 必要稅前收益率을 감수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제도는 特別投資分野의 경우 외국에 비하여 과중하다.

둘째, 개별 국가들에 있어서는 法定法人稅率을 引下하는 것이 기업의 필요세전수익률을 낮추어 주는 데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법인세율 인하를 통하여 외국자본 유치에 뚜렷한 효과를 보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셋째, 稅額控除를 포함한 投資支援金制度가 가장 강력한 지원수단이다. 또 特別減價償却制度도 일반감가상각제도와 결합될 경우 상당한 지원효과가 있다.

넷째, 법인세율 인하, 고속감가상각제도, 일반감가상각제도, 그리고 조세휴일제도는 개별적으로 볼 때 지원효과가 미약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制約條件下에서 얻어진 결론이므로 그 자체가 정책결정에 직접적인 示唆點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우선 위의 분석은 Debt Financing을 전제로 하였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함께 고려하지 못한 Equity Financing의 경우에는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 Debt Financing 중에서도 投資者의 居住地國에서 투자액을 차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投資 源泉地國의 現地借入은 고려하지 않았다. 두번째로 위의 분석은 투자자의 居住地國에서 源泉地國으로부터 송금된 利子所得에 대하여 外國稅額控除制度를 통해 二重課稅를 防止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는데 이는 현실에 부합되는 전제조건이다. 세번째로 實物投資의 대체로 항시 이자율  $i$ 의 수익이 가능한 金融投資를 상정하였는데 이는 閉鎖經濟下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으나 開放經濟下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이다. 앞의 분석결과는 이처럼 여러 가지 前提條件下에서 얻어진 결론이기 때문에 이러한 前提條件들(특히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결론도 가능하다. 즉, 다른 조건하에서 예컨대 Equity Financing이나 留保所得으로 投資財源을 조달할 경우 한 나라에서의 法人稅率 引下는 企業의 競爭力 強化와 經營與件의 改善, 나아가 外國으로부터의 投資增大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편 외국인자본을 우리나라에 유치한다는 투자유인 정책목표 이외에 租稅收入이 確保라는 정책목표에서 볼 때에는 외국세액공제제도가 일반적으로 시행되어지고 있는 국제관계에서는 法人稅率의 引下, 投資稅額控除制度, 租稅休日制度보다 減價償却制度의 改善이 더욱 바람직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稅率引下를 통한 投資支援은 투자자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에서 看做外國稅額控除制度를 채택하지 않는 한 외국인투자에 전혀 동기유발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조세감면보다는 內國人投資者와 外國人投資者에게 同等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리고 必要稅前收益率을 줄여 줄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가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減價償却制度의 改善을 통한 투자지원이 必要稅前收益率을 줄여 주는 좋은 투자지원제도로 보여지며 다음으로 특정 산업분야의 지원에는 投資稅額控制制度를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sup>17)</sup>.

---

17) R. M. Bird and O. Oldman, *Tax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4th Ed., 1990, p. 130.

## V. 國際的 二重課稅 排除 方法에 대한 評價 및 改編方向

### 1. 國際的 二重課稅 排除 方法

#### 가. 國際的 二重課稅 排除 方法

國際的 二重課稅<sup>1)</sup>는 租稅의 公平性과 中立性을 왜곡시켜 資源의 公平하고도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二重課稅 排除 措置가 필요하다.

國際的 二重課稅 排除 方法에 대한 평가에 앞서 國際課稅原則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제과세원칙에는 源泉地國課稅原則(source rule)과 居住地國課稅原則(residence rule)이 있는데, 전자는 所得의 發生源泉에 초점을 맞춰 國內에서 발생의 원천을 가지는 소득에 대해서만 당해국가에서 과세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所得발생의 원천에 관계 없이 自國 內 居住者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 거주지국에서 과세권을 가진다는 것을 말하고, 이는 이른바 全世界 所得課稅(worldwide income taxation)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源泉地國은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할 우선적 권리가 있으며, 居住地國은 외국원천소득에 대해서 원천지국이

---

1) 國際的 二重課稅는 동일한 과세대상 이 2개국 이상의 과세관할권하에 놓여 있어서 課稅權이 重複되거나 競合되어 납세자의 租稅負擔이 加重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국제적 이중과세는 經濟的 二重課稅(economic double taxation)의 성격을 지닌 國內的 二重課稅와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는 어떤 소득이 두 나라 이상의 과세관할권하에 들어감으로써 한 번 이상 과세되는 현상을 가르키며, 후자의 전형적인 사례로는 고전적 법인세제도하에서 일어나는 配當所得의 二重課稅이다.

과세한 뒤에 과세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居住地國 課稅와 원천지국 과세의 중복 또는 경합에 의한 國際的 二重課稅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居住地國이 일방적으로 국내세법으로 外國所得免除制度<sup>2)</sup>, 外國所得控除制度<sup>3)</sup>, 外國稅額控除制度<sup>4)</sup>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국가간에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外國所得免稅制度나 외국세액공제제도 중 택일하며 외국세액공제제도를 택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규정을 통하여 원천지국세율의 한도를 제한한다.

그러면 h國의 居住者가 f國에 投資하여 100의 所得( $\pi_f$ )을 얻고, h國의 稅率( $t_h$ )이 50%, f國의 稅率( $t_f$ )이 40%일 때의 가장 단순한 事例를 통하여 이 세 가지 制度가 가져오는 稅負擔의 크기를 비교하면

- 2) 外國所得免除制度는 居住地國이 源泉地國에서 과세된 外國事業所得을 국내 과세대상으로부터 免除해 주는 제도로, 실지 租稅管轄權은 源泉地國만이 가지게 되어 국제적 이중과세가 완전히 해결된다.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는 이 제도의 변형으로서 累進附免除制度(exemption with progression)를 택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에서 과세된 해외원천소득에 대해서 居住地國에서 과세하지 않으나 國內所得에 대한 累進稅率 적용시 과세소득에서 제외된 外國所得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 3) 外國所得控除制度는 원천지국에서 과세된 외국세액을 居住地國의 課稅對象 所得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이 경우는 외국에서 부담한 課稅額은 진출기업이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데 소요되었던 經常經費로 취급된다. 外國稅額控除制度和 外國所得控除制度의 차이는 前者가 內國稅에 대해서 이미 납부한 外國稅額을 공제하는 제도인 반면, 後者는 과세표준에서 外國稅額을 공제하는 제도라는 데 있다.
- 4) 外國稅額控除制度는 투자자의 외국원천소득에 대해서 源泉地國이 부과한 세액을 居住地國의 정부가 투자자의 과세부담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外國所得免除制度和 外國稅額控除制度의 차이는 前者가 소득 그 자체에 착안하여 外國所得에 대하여 課稅權을 포기하는 제도인 반면, 後者는 소득에 과세된 租稅에 착안하여 課稅權을 유보하면서 실제적인 세부담면에서 조정하려는 제도라는 점에 있다. 外國稅額控除制度에는 居住地國이 외국에서 납부한 투자자의 세액을 自國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전액공제하는 完全稅額控除方法(full credit)과 당기의 법인세액에 그 全世界所得에 대한 國外所得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인정해주는 通常稅額控除方法(ordinary credit)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外國所得을 발생국가별로 과세하느냐 합산하여 계산하느냐에 따라 國別限度制(per country limitation)와 一括限度制(overall country limitations)로 구분된다.

〈表 V-1〉과 같다. 外國稅額控除制度下에서의 투자자의 궁극적인 세 부담은 居住地國의 세율높이에 상응하나 外國所得控除制度下에서의 세 부담은 居住地國의 세율높이보다 커서 二重課稅가 발생한다. 外國所得免除制度下에서는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원천지국의 세율 크기에 따라 투자자의 최종적인 세 부담은 居住地國의 세율높이와 차이가 난다.

〈表 V-1〉 國際的 二重課稅 排除 制度의 比較

	外國稅額控除 (tax credit)	外國所得免除 (tax exemption)	外國所得控除 (tax deduction)
外國子會社의利益 (a)	100	100	100
外國稅率 (b)	40%	40%	40%
外國納付稅額 (c)	$40 = (a) \times (b)$	$40 = (a) \times (b)$	$40 = (a) \times (b)$
母企業에支給된 配當金 (d)	$60 = (a) - (c)$	$60 = (a) - (c)$	$60 = (a) - (c)$
本國稅率 (e)	50%	50%	50%
外國稅額控除前 本國稅額 (f)	$50 = (a) \times (e)$	—	$30 = (d) \times (e)$
外國稅額控除額 (g)	$40 = (c)$	—	—
本國納付稅額 (h)	$10 = (f) - (g)$	—	$30 = (f)$
總納稅額 (i)	$50 = (c) + (h)$	$40 = (c)$	$70 = (c) + (h)$
實效稅率 (j)	$50 = (i)/(a)$	$40 = (i)/(a)$	$70 = (i)/(a)$

나. 國際的 二重課稅 排除 方法에 대한 評價의 準據

봉쇄경제하의 바람직한 조세정책은 個人間 租稅負擔의 公平한 分布를 이룩하고, 民間部門의 生産資源의 效率的 配分을 가능한 한 저해하지 않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방경제하의 조세정책에 있어

서는 個人間 負擔配分상의 公平性(inter-individual equity)과 資源利用의 效率性和 같은 문제들은 물론이고 國家間 公平性(inter-nation-equity) 같은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 또 開放經濟下에서 자본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資本輸出國과 資本輸入國의 經濟的 利害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2. 國際的 二重課稅 排除 方法에 대한 評價

### 가. 公平性的 觀點에서 본 國際的 二重課稅 排除 方法

개방경제하에서의 租稅政策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公平性(Equity)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複數의 조세관할권 아래서 소득을 획득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평하게 과세부담을 배분하는 문제, 다시 말해서 個人間 公平性的의 문제이며 둘째, 國際去來에서 발생하는 稅源을 국가 사이에 공평하게 분할하는 國家間 公平性 문제이다.

#### 1) 個人間 公平性

個人間 公平性的의 기준을 따르면 소득의 원천이 외국이든 또는 국내이든 간에 그 소득액이 동일하면 最終的으로 納付해야 될 個人的 課稅負擔은 같아야 한다<sup>5)</sup>. 個人的 課稅負擔은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定義될 수 있다<sup>6)</sup>.

첫째, 個人間 公平性的의 유지에 대한 國際的 觀點(international view)에 의하면 자국 혹은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과세대상소득이 발생하더라도, 同一한 居住地國의 同一한 所得者에게 부과되는 租稅負

5) R. A. Musgrave and P. B. Musgrave, "Inter-Nation Equity," R. M. Bird and J. F. Head(eds.), *Modern Fiscal Issues: Essays in Honor of Carl S. Shoup*,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2, p. 68.

6) R. A. Musgrave, *Fiscal System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69, p. 243.

擔과 같아야 한다. 따라서 個人間 公平性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居住地國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부터 외국에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外國稅額控除制度). 이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居住地國에서 납부할 세액보다 적다면, 그 差額만큼 內國稅가 부과되고, 만일 많다면 그 초과액만큼 납세자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둘째, 個人間的 公平性에 대한 國家的 觀點(national view)에 의하면 居住地國은 源泉地國에서 납부한 세금을 控除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마치 國內所得과 같이 간주하여 과세한다. 그러므로 源泉地國에서 납부한 所得稅는 海外事業活動에 따른 費用으로 간주되는 것이다(外國所得控除制度).

셋째, 個人間的 公平性에 관한 極端的인 國家的 觀點(ultra-national view)에 의하면 외국에서 납부된 세금은 일체 인정되지 않고, 居住地國은 국내에서나 외국에서나 課稅되기 以前의 總所得에 대해 居住地國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 2) 國家間 公平性

개방경제의 경우 폐쇄경제에서와는 달리 個人間 公平性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國家間에 租稅收入을 公平하게 配分할 것인가의 國家間 公平성과 같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國家間的 公平性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國家的 得失(national gain or loss)과 國庫의 得失(treasury gain or loss)의 개념을 구별해야 한다. 國家間 公平性은 資本輸出國과 資本輸入國間的 稅收分割, 즉 國家間 得失의 문제이지 特定國 內에서 납세자와 정부간의 득실의 배분, 즉 國庫의 得失 문제가 아니다. 만약, h국의 거주자가 f국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소득은 h국의 國家的 所得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f국이 그 소득에 과세한다면 h국은 이 課稅措置에 의해 감소되는 外國投資所得額만큼 國家的 損失을 입는데 이것이 國家間 公平性 문제이며, 그 손실 정도는 f국의 稅率 크기 여하에 달려 있다. 이때 f국의 收益은 政府收入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表 V-2〉 國家의 損失과 國庫의 損失 比較

	外國納付稅額(h國의 國家的 損失)	h國의 納付稅額 (가)	純粹國內源泉所得이 100일 때 h國의 納付稅額(나)	h國의 國庫 損失 [(나)-(가)]
國際的 觀點 (外國稅額 控除 制度)	$\pi_f \cdot t_f = 40$	$(t_h - t_f) \cdot \pi_f = 10$	50	40
國家的 觀點 (外國所得 控除 制度)	$\pi_f \cdot t_f = 40$	$(\pi_f - 40) \cdot t_h = 30$	50	20
極端的 國家的 觀 點	$\pi_f \cdot t_f = 40$	$\pi_f \cdot t_h = 50$	50	0

註:  $t_h, t_f$  = h國과 f國의 稅率,  $\pi_f$  = f國에서 발생한 h國 居住者의 所得,  $f$  = 源泉地國,  $h$  = 居住地國,  $t_f = 40\%$ ,  $t_h = 50\%$ ,  $\pi_f = 100$ .

〈表 V-2〉에서 알 수 있듯이 h국의 국가적 손실은 원천지국(f) 납부세액만의 함수이며, 居住地國(h)이 행하는 이중과세 배제 방법과는 독립적이어서 언제나 h국의 國家的 損失은 40이다. 한편 h국 國庫의 損失은 f국 납부세액뿐만 아니라 h국이 적용하는 이중과세 배제 방법에 따라 國家的 損失과 一致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sup>7)</sup>. 그러므로, 이것은 外國納付稅額을 控除하고 남은 소득 60을 h국의 國庫와 投資者間에 어떻게 配分할 것인가의 내부적 移轉의 문제이다. 반면에 국가간 조세수입의 배분의 문제인 國家的 得失은 f국의 稅率에

7) h국의 國家的 損失은 同等한 國庫의 損失을 수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예컨대, h국이 개인간 公平성의 國家的 觀點을 취한다면(外國所得控除制度), 국가적 손실은 국고의 손실보다 크게 된다. 다음으로 개인간 公平성의 國際的 觀點을 취한다면(外國稅額控除制度), 국가적 손실은 국고의 손실과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개인간 公平성의 超國家的 觀點을 택해서 f국이 부과한 세금을 완전히 무시한다면, h국의 국고손실은 일어나지 않으나 납세자가 모든 손실을 떠맡게 된다.

따라 달라지며, 위의 사례에서 h국의 國家的 損失(즉, f국의 國家的 收益)은 f국의 稅率이 40%일 때는 40, 50%일 때는 50이 되므로 f국은 되도록이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 稅率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즉, 居住地國의 國庫의 損失은 居住地國이 外國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에 따라 국고와 납세자간의 國家內 移轉(intra-nation transfer)에 달려 있는 반면에, 國家的 損失은 오로지 源泉地國의 세율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源泉地國은 外國투자소득에 대해 稅率을 높일수록 보다 많은 租稅收入을 올릴 수 있으며 居住地國에서 해외소득에 대한 二重課稅 排除 方法으로 外國稅額控除制度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投資者의 稅後純利益은 원천지국의 세율 높이에 상관없으므로<sup>8)</sup> 원천지국에 투자되는 外國資本의 規模에도 지장이 없다. 따라서 外國稅額控除制度가 居住地國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상 원천지국으로서는 稅率을 居住地國 水準에 완전히 육박시키는 것이 自國의 經濟的 利害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될 것이며<sup>9)</sup> 이 경우 居住地國의 해외투자소득으로부터의 조세수입은 쪼이 될 것이다. 이것은 極端的인 國家間 租稅收入配分の 不公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居住地國이 二重課稅 排除 方法으로 外國세액공제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居住地國과 원천지국은 租稅條約을 통하여 해외자본의 국내소득에 대한 源泉地國의 稅率을 制限함으로써 이러한 국가간 세원배분의 불공평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 나. 世界的 資源配分の 效率性 觀點에서 본 國際的 二重課稅 排除 方法

二重課稅 排除 方法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으로 가장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자원의 세계적 효율적 배분에

8) 단, 源泉支國의 稅率은 居住地國의 稅率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9) 이는 Sørensen의 견해와 일치한다. Peter B. Sørensen, "Optimal Capital Taxation in a Small Capital-importing Economy," Vito Tanzi(ed.), *Public Finance, Trade and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44th Congress of the IIPF, Istanbul, 1988, p. 56.

적합한가 하는 것이다.

全世界的 觀點에서 資源을 效率的으로 配分하려면 자본이 투하된 장소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조세 제도가 외국에 투자할 것인가 또는 국내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납세자의 선택을 좌우하지 않을 때 國際的 租稅中立性(international tax neutrality)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國際的 租稅中立性은 資本輸出의 中立性(capital export neutrality)으로 뿐만 아니라 資本輸入의 中立性(capital import neutrality)으로도 이해되어질 수 있다. 資本輸出의 中立性은 자본수출국이 국내와 외국원천의 소득을 과세하는 데 있어서의 무차별주의로 정의되어지는 반면에, 資本輸入의 中立性은 자본수입국에서 여러 나라로부터 투하된 자본이 똑같은 조세조건하에서 경쟁할 때의 상태로 정의된다.

資本輸出의 中立性은 완전한 外國稅額控除制度로 달성되어질 수 있다. 국내투자자와 외국투자 이윤율에 대한 조세부담은 완전한 세액 공제제도를 통해 동일해진다. 만약 內國稅率이 外國稅率보다 높은 경우에는 海外投資의 超過利益分이 附加的인 內國稅로 없어지고, 외국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還給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sup>10)</sup>.

반면에 資本輸入의 中立性 요구는 外國에 進出한 投資家は 現地國

10) 그러나 일반적으로 居住地國은 세수 확보를 위해 控除限度額을 두어 居住地國 세율보다 원천지국 세율이 높아질 경우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居住地國 세율보다 원천지국 세율이 낮을 때에만 外國稅額控除制度는 中立性을 보장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租稅猶豫制度가 허용되는 경우도 조세중립성에 문제를 일으킨다. 租稅猶豫制度는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려고 居住地國에서 해외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되, 그 과세를 그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하지 않고, 居住地國에 그 소득이 송금된 시점까지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국적기업은 課稅猶豫된 소득을 再投資하거나 輕課稅國(tax haven)을 이용하여 국제적 조세회피를 할 수 있으므로 居住地國의 조세수입이 줄어들고, 해외투자가 국내투자에 비교하여 필요 이상으로 우대되므로 租稅中立性이 유린된다.

에서 現地國의 競爭者나 第三國의 投資家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資本輸入의 中立性을 달성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國內課稅로부터 外國源泉所得을 免除하는 방법이다(外國所得免除制度).

資本輸出의 中立性과 資本輸入의 中立性이 동시에 달성될 때 租稅는 外國投資 意思決定을 왜곡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두 가지 中立性은 모든 나라의 稅率이 똑같은 때 동시에 달성되어지며 이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만약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의 세율이 다른 경우 어느 개념이 國際的 二重課稅 排除의 基本原理로서 보다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자본수출의 中立性이 보다 적합한 개념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sup>11)</sup> 이는 外國所得免除制度下에서는 資本輸出國의 경우 國內投資와 海外投資間의 效率的인 配分이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競爭的 條件下에서 世界的 效率性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資本輸入의 中立性은 여러 나라의 투자자들이 동일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中立적이지만, 모든 나라에서 세율이 일치하지 않는 한 國際的 資本移動에 대해서는 非中立的이다. 예컨대, 자본수출국의 세율이 자본수입국의 그것보다 낮다면 자본은 자본수출의 中立性, 즉 世界的 效率性의 達成 상태 아래에서의 자본이동량보다 많을 것이고, 만약 그 반대라면, 자본수출의 中立性이 요구하는 것보다 자본의 흐름이 적을 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에 투자된 자본에 대하여 그 자본소유주 居住地國들의 세율 차이로 말미암아 競爭의 中立性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資本의 世界的인 效率的 配分을 해치는 요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資本輸出의 中立性이 국제적 자본이동에 中立적이라는 논리는 첫째로 稅率, 즉 歲入側面만 고려하고 歲出側面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두번째로 投資의 中立性뿐만 아니라 貯蓄을

11) R. A. Musgrave, *op. cit.*, pp. 254~255.

통한 資本形成의 中立性도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자본수출의 중립성과 자본수입의 중립성은 어느 것도 그 우열을 구별할 수 없는 중요한 國際課稅의 基本原則이라는 주장은 세입과 세출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相應性 觀點과 투자와 저축의 中立性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課稅水準과 公共서비스水準의 相應性 觀點(Equivalence Theorem)

課稅制度의 資源의 效率的 配分에 대한 中立性을 한 나라 안에서 課稅水準이 그 나라가 제공하는 公共서비스 수준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한 나라에서(기업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와 부과되는 課稅額은 각각 상품의 효용과 가격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資本收益率에 미치는 한 나라의 純財政效果(公共서비스로부터의 効用 - 稅費用)가 零이 되도록 하는 과세원칙이 資源의 效率的 配分에 대한 課稅의 中立性을 보다 잘 지켜 준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수출국보다 자본을 필요로 하는 資本輸入國들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낮다. 또 資本輸出國의 課稅水準이 資本輸入國보다 높은 것이 보통이다. 세율은 비슷한 수준이더라도 자본수입국들은 여러 가지 稅制上 投資支援制度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實效稅率은 자본수출국수준보다 일반적으로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자본수입국에서 발생되고 과세된 소득이 자본수출국으로 송금된 뒤 그 곳에서 外國稅額控除制度를 통해 과세된다면 外國所得免稅制度나 看做外國稅額控除制度를 통하는 것보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가 된다. <表 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단순화시킨 예에서 外國所得免稅制度下에서는 純財政效果가 零으로 세부담으로 인한 投資適地 決定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외국세액공제

제도하에서는 純財政效果가 f國에 투자하는 경우에 h國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陰의 값을 나타냄으로써 투자적지 결정에 中立性을 해친다.

〈表 V-3〉 純財政效果 I

	h國에 投資하는 境遇	f國에 投資하는 境遇
公共서비스 水準(A)	50	30
投資現地國의 課稅水準	50	30
資本輸出國의 追加的 課稅		
外國稅額控除制度下	0	20
外國所得免稅制度下	0	0
總稅負擔(B)		
外國稅額控除制度下	50	50
外國所得免稅制度下	50	30
純財政效果(A-B)		
外國稅額控除制度下	0	-20
外國所得免稅制度下	0	0

註 : h國은 資本輸出國이며 稅率은 50%, f國은 資本輸入國이며 세율은 30%, 投資者는 h國, 즉 國內에 投資할 것인가 혹은 f國, 즉 海外에 投資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h國과 f國에서의 投資收入은 각각 100임을 가정함.

그러나 투자자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그 投資適地로서  $f_1$ 국과  $f_2$ 국 중에서 선택하려는 경우, 그리고  $f_1$ 국과  $f_2$ 국이 같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과세수준이 다른 경우에는 外國稅額控除制度가 보다 課稅의 中立性에 적합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h國에서 外國稅額控除制度로써 외국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f_1$ 국이  $f_2$ 국보다 외국자본에 보다 낮게 과세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

〈表 V-4〉 純財政效果 II

	h國에 投資하는 境遇	f國에 投資하는 境遇
公共서비스 水準(A)	30	30
投資現地國의 課稅水準	30	50
資本輸出國의 追加의 課稅		
外國稅額控除制度下	20	0
外國所得免稅制度下	0	0
總稅負擔(B)		
外國稅額控除制度下	50	50
外國所得免稅制度下	30	50
純財政效果(A-B)		
外國稅額控除制度下	-20	-20
外國所得免稅制度下	0	-20

註 :  $f_1$ 國과  $f_2$ 國은 모두 資本輸入國이며 稅率은  $f_1$ 國 30%,  $f_2$ 國 50%,  
h國 50%이고, h國의 投資者는  $f_1$ 國과  $f_2$ 國 중에서 投資를 결정하  
며  $f_1$ 國과  $f_2$ 國에서의 投資收益은 각각 100%임을 가정함.

려는 動機誘發을 상쇄시키게 되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 2) 投資에 대한 中立性和 貯蓄에 대한 中立性 觀點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은 주로 投資에 대한 課稅의 中立性에 관한 것이었으나 貯蓄에 대한 과세의 중립성도 또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기준이다. 投資適地의 決定에 있어서 투자자가 염두에 두는 것은 국내나 외국의 투자대상에서 얻을 수 있는 純資本所得이다. 합리적인 투자결정은 國內과 外國의 2國家모델의 경우 국내와 외국의 투자대상으로부터 얻어지는 課稅 後의 限界資本所得이 일치하는 때까지

국내와 외국에의 투자량을 분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國內외의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이 차등적인 경우 國內외의 總資本所得 그리고 이와 더불어 資本의 限界生産性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자본수출국에서 外國稅額控除制度를 통하여 國內외의 투자대상에서 얻어지는 자본소득에 과세되는 세부담의 수준을 일치시켜 주지 않는 경우 資本의 國際間 效率的 配分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外國稅額控除制度下에서는 국내와 국외의 자본소득이 거주지국의 세율의 높이( $t_h$ )로 결정되므로 국내와 국외의 총자본소득  $r_h$ 와  $r_f$ , 그리고 두 나라에서의 限界資本生産性은 일치하게 된다.

$$(1-t_h)r_h = (1-t_h)r_f \Rightarrow r_h = r_f,$$

$$dF_h(K \cdot L)(1-t_h)/dK = dF_f(K \cdot L)(1-t_h)/dK$$

여기에서  $F_h$ 와  $F_f$ 는 生産要素로 資本(K)과 勞動(L)을 가진 국내와 국외의 생산함수이다. 그러나 外國所得免稅制度下에서는 국내와 국외의 資本所得은 각기 틀린 세율로 과세되고 균형점에서 단위투자액에 대한 純資本所得은 일치하되 總資本所得은 일치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資本의 限界生産性도 두 나라에서 일치하지 않게 된다.

$$(1-t_h)r_h = (1-t_f)r_f, t_h \neq t_f \Rightarrow r_h \neq r_f,$$

$$dF_h(K \cdot L)(1-t_h)/dK \neq dF_f(K \cdot L)(1-t_h)/dK t_h$$

外國稅額控除制度가 국제간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는 투자결정의 경우와는 달리 家計의 貯蓄決定에 있어서는 外國所得免稅制度가 국제간의 효율적인 貯蓄資本形成에 기여한다. 이유인즉 外國所得免稅制度를 통해 이루어진 國內외간의 단위투자로부터의 순자본소득의 균등화는 現在消費( $C_p$ )와 未來消費( $C_f$ )의 相對的 價格을,

그리하여 국내와 국외에서의 時間選好度(Time Preference Rate)를 양국의 소득세율의 높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일치시켜 준다.

$$\begin{aligned} r_h(1-t_h) &= r_f(1-t_f) \Rightarrow \frac{dU_h/dC_p}{dU_h/dC_f} \\ &= 1+r_h(1-t_h) = 1+r_f(1-t_f) = \frac{dU_f/dC_p}{dU_f/dC_f} \end{aligned}$$

여기에서  $U_h$ 와  $U_f$ 는 국내와 국외에서  $C_p$ 와  $C_f$ 의 소비선택권을 가지는 民間部分의 效用函數이다.

반면에 外國稅額控除制度를 통하여 단위투자로부터의 총자본소득의 높이가 두 나라에서 일치하게 되는 경우 양국의 세율높이가 차이가 난다는 가정하에서 純資本所得의 높이를 차등하게 만들고 이에 따라 時間選好度를 차이나게 함으로써 국제간에 효율적인 저축자본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sup>12)</sup>.

$$r_h = r_f, t_h \neq t_f \Rightarrow 1+r_h(1-t_h) \neq 1+r_f(1-t_f),$$

$$\frac{dU_h/dC_p}{dU_h/dC_f} \neq \frac{dU_f/dC_p}{dU_f/dC_f}$$

## 다. 資本輸出國과 資本輸入國의 經濟的 利害

### 1) 資本輸出國

일반적으로 국제조세에 관한 이론적 문헌에서는 資本輸出國의 經

12) Hans-Werner Sinn, *Kapitaleinkommensbesteuerung*, Tübingen: J.C.B. Mohr, 1985, p. 172. 그러나 Giovannini는 貯蓄보다는 投資가 경험적으로 利率에 더욱 민감하므로 저축보다는 投資의 效率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전체적인 효율성 관점에서 중요하며 따라서 外國稅額控除制度가 外國所得 免稅制度보다 우월하다고 본다(A. Giovannini, "National Tax Systems vs. the European Capital Market," *Economic Policy*, Vol. 4, 1989, pp. 345~386).

濟的 利害에 부합되는 과세제도로써 外國所得控除制度, 다음으로 外國稅額控除制度, 그리고 마지막으로 外國所得免稅制度를 자본수출국에게 가장 불리한 제도로 들고 있다<sup>13)</sup>. 그러나 이는 資本輸出國의 財政收入의 측면에서만 본 것이고 포괄적인 자본수출국의 경제적 이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결론도 가능하다.

外國稅額控除制度下에서는 한 투자대상국 내의 경쟁에서 高率課稅國으로부터의 資本이 低率課稅國으로부터의 資本에 비해 불리해진다. 이와 비교하여 外國所得免稅制度下에서는 高率課稅國에 투자된 자본이 低率課稅國에 투자된 자본에 비해 불리하다. 다시 말해서 고용과세국이 투자대상국으로서의 불리한 평점을 받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資本輸出國들은 高率課稅國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外國稅額控除制度와 外國所得免稅制度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적 의미의 관정은 다음의 문제로 압축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資本輸出國 所有의 資本이 不利해지는 것과 자본수출국 내에 투자된 자본, 즉 投資對象國으로서의 資本輸出國<sup>14)</sup>의 立地가 不利해지는 것 중 어느 것이 자본수출국의 경제적 이해에 상대적으로 더 큰 손해를 주느냐 하는 것이다. 資本輸出國 소유의 자본이 불리해진다면 收益率이 떨어지면서 이 나라의 成長率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투자대상국으로서의 입지가 나빠진다면 국민생산에 손해를 끼치고 고용에 지장을 줄

13) E. W. Bond and L. Samuelson, "Strategic Behaviour and the Rules for International Taxation of Capital," *The Economic Journal*, Vol. 99, 1989, p. 1107; P. B. Musgrave, *United States Taxation of Foreign Investment*, Cambridge, 1969; M. Feldstein and D. Hartman, "The Optimal Taxation of Foreign Source Investment Incom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79, pp. 624~626; D. Hartman, "The Effect of Taxing Foreign Investment Incom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3, 1980, p. 229.

14) 資本輸出國도 國內投資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모순되지 않는다. G. Krause-Junk, "Volkswirtschaftliche Aspekte des deutsch-kanadischen Doppelbesteuerungsabkommens," L. Fischer(ed.), *Investitionen in Kanada*, Baden-Baden: Nomos-Verlag, 1985, p. 105.

것이다. 일반적으로 投資適地로서의 조건 중 租稅要因은 다른 많은 요인 중의 하나이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지는 않는다. 반면에 외국에 투자된 자본이 居住地國에서 高稅率로 과세되는 것은 고세율로 과세되지 않는 다른 나라의 자본과 경쟁에서 크게 불리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정하에서 본다면 資本輸出國의 經濟的 利害에는 外國所得免除制度가 더 부합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高率課稅國이 아닌 資本輸出國에게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資本輸入國

資本輸入國의 입장에서는 外國所得免除制度下에서 자국에 투자된 자본에 부과되는 總租稅負擔을 單獨으로 決定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제도하에서 자본수입국은 정책결정에 따라 고율로 과세함으로써 財政收入을 높이는 정책을 수행하거나 저율로 과세함으로써 외국자본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投資誘致를 꾀할 수 있다<sup>15)</sup>.

## 3. 國際的 二重課稅 排除 方法에 대한 綜合的 評價

일반적으로는 效率性的 觀點(국제간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서 外國稅額控除制度가 선호되고 있으나 조사 결과 외국세액공제제도가 오히려 公平性的 觀點에서 外國所得免稅制度보다 우월하다고 보여지고<sup>16)</sup>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그 우월성의 판단이 뚜렷하지 못한 결과

15) K. Hamada, "Strategic Aspects of Taxation on Foreign Investment Incom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0, 1966, p. 368; C. C. Findlay, "Optimal Taxation of International Income Flows," *The Economic Record*, 1986, pp. 209~211; Peter B. Sørensen, *op. cit.*

16) 단, 국제간 세원의 공평한 분배, 즉 國家間 公平性은 源泉地國에서 제한세율 설정을 전제로 한다.

17) 資本輸出國이 資本輸入國에 비하여 高稅率國家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 나오고 있다. 자본수출국의 경제적 이해에는 稅收確保 次元에서는 外國稅額控除制度가 외국소득면세제도보다 적합하나<sup>17)</sup> 資本輸出國의 包括的인 經濟的 利害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外國所得 免稅制度가 더 우월하다. 그러나 資本輸入國의 입장에서는 外國稅額 免稅制度가 외국세액공제제도보다 명확히 선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資本輸出國의 입장과 資本輸入國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高稅率國家로서의 資本輸出國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外國所得免稅制度가 자본수출국으로서 우리의 包括的인 經濟的 利害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본수출국이며 동시에 자본수입국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외국세액공제제도와 외국소득면세제도가 각각 長短點이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으나 다음 절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자본수출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입장이 더 중요시되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계속 外國稅額控除制度를 실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VI. 外國資本의 課稅와 關聯한 其他 問題點과 改編方案

### 1. 租稅條約政策의 問題點과 改編方案

#### 가. 租稅條約의 基本틀로서 OECD모델條約<sup>1)</sup>

우리나라는 開發途上國들과의 조세조약체결에서는 OECD모델에 가깝도록 그리고 先進國들과의 조세조약체결시에는 UN모델을 근간으로 하는 條約締結을 목표로 함으로써 經濟的 利害의 極大化를 도모하고 있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는 조약의 각 세부조항 중에서 우리의 경제적 이해에 유리한 쪽으로 UN모델이나 OECD모델 중에서 선택하여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 등의 고정사업장 관정시에 그 期限 등은 UN모델을 따르고 있고 그외 其他 固定事業場 關聯 規定은 OECD모델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정책은 正反對의 相對締約國의 입장과 직면하게 된다. 즉, 先進國들은 우리나라와 되도록이면 OECD모델에 가까운 조세조약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開發途上國들은 UN모델에 따르기를 원함으로써 租稅條約 締結時 摩擦이 생긴다. 또 相對締約國들은 우리나라가 상대체약국에 따라 租稅條約政策을 달리하는 것을 비판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韓國의 조세조약정책은 체결된 조세조약 내용을 살펴볼 때 相對締約國의 相反되는 立場 때문에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제Ⅲ장의 〈表 Ⅲ-3〉과 〈表 Ⅲ-5〉

1) OECD모델條約과 UN모델條約에 대한 설명은 제Ⅲ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先進國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있어서의 制限稅率 平均이 開發途上國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있어서의 制限稅率 平均과 큰 差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租稅主權을 포기하고서라도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자국의 경제적 이해에 부합하리라는 정책판단에 근거하여 源泉地國 制限稅率을 아주 낮게 설정하고 있는 까닭에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들과 맺은 조세조약에 나타난 制限稅率의 平均은 아주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韓國은 OECD모델이나 UN모델 중 선택하여 장래에는 조세조약체결이나 개정시 이를 따르고 一貫된 政策을 유지함으로써 相對締約國들의 理解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OECD모델과 UN모델 중 韓國이 OECD에 가입하고 이 조약이 先進國들간의 自由로운 資本交流에 適合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를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表 V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外國에 대한 投資規模가 우리나라에 대한 外國인의 투자규모를 1990년 이후 크게 앞서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OECD모델條約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 한국의 經濟的 利害에도 부합된다고 보여진다. 다만 OECD모델條約의 입장을 따름으로 하여 國內외적으로 심각한 課稅上의 不公平을 야기시킬 수 있는 證券讓渡差益 非課稅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UN모델조약을 따를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아야 할 것이다<sup>2)</sup>.

2) 이는 우리나라가 1998년도 이후에 證券讓渡差益에 대한 課稅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本節의 「마」에서 상술한다.

〈表 VI-1〉 外國人直接投資 規模와 內國人的 海外投資 規模 比較

(單位: 百萬달러)

	1989	1990	1991	1992	1993
外國人的 國內投資	1,090	803	1,396	894	1,044
製造業	729	583	1,069	648	526
서비스業	359	219	326	244	517
內國人的 海外投資	943	1,624	1,605	1,210	1,845

註: 認可 基準.

資料: 鄭德龜, 「外國人 投資誘致 基本戰略」, 外國人 投資環境 改善方案에 관한 討論會 發表資料, 1994. 5. 19.

#### 나. 二重課稅 排除 方法의 基本으로 外國稅額 控除制度의 採擇

國際的 二重課稅 排除의 일반적인 방법인 外國稅額控除制度와 外國所得免除制度가 조세조약에서는 選擇적으로 채택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資本輸出國에는 外國稅額控除制度가 그리고 資本輸入國에게는 外國所得免除制度가 유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3)</sup>. 따라서 조세조약체결시 자본을 수출하는 입장의 나라와 자본을 수입하는 입장의 나라 사이에서 二重課稅 排除 方法의 選擇에서 摩擦의 소지가 크다.

그러나 資本輸出國에는 外國稅額控除制度가 그리고 資本輸入國에는 外國所得免稅制度가 유리하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조세조약 체결 당사자가 資本輸出國과 資本輸入國으로 뚜렷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즉, 상호간의 자본교류가 활발한 경우) 어떤 이중과세 배제 방법이 國際間的 資源의 效率의 配分과 國際間 稅源의 公正한 配分에 適合한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우월하다고 보여지는 이중과세 배제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우리의 二重課稅 排除 方法의 基本原則으로 함으로써 조세

3) 자세한 설명은 제V장에 나타나 있다.

조약체결시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의 이중과세 배제 방법에 대한 평가는 一般的인 資本輸出國과 一般的인 資本輸入國의 經濟的 利害에 비추어 본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經濟적 이해에 비추어 본다면 조금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一般的인 자본수출국과는 달리 高稅率國家로 판단되기 어렵다. 즉, 우리나라가 迂廻輸出을 위하여 선진국 등에 자본수출을 하는 경우 그 나라들에 비하면 高稅率國家가 아니므로 위의 평가처럼 資本輸出國의 포괄적 經濟적 이해에 外國所得免除制度가 더 적합하다는 평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 資本輸入國으로서의 우리의 입장으로는 外國所得免除制度가 유리하다.

위의 '가' 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앞으로 資本輸出國으로서의 위치가 자본수입국으로서의 위치보다 중요시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외국소득면세제도보다 外國稅額控除制度를 앞으로의 조세조약 체결시 二重課稅 排除 方法의 基本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보여진다.

#### 다. 固定事業場 歸屬事業所得 計算方法으로 歸屬主義의 採擇

우리나라가 일본 및 인도네시아와의 조세조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事業所得計算方法으로서의 總括主義는 OECD규범에 비추어 보아 상당히 동떨어진 방법이다. 이로 인하여 일본계 국내진출기업으로부터의 과세수입이 줄어들더라도 이를 歸屬主義 原則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투자촉진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라. 外國所得에 대한 租稅減免의 廢止나 看做外國稅額控除制度의 擴大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기업에 제공하는 조세감면이 그 기업에게 실제적인 혜택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에 투자를 계속하려는 동기가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外國企業의 居住地國이 看做外國稅額控除

制度를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에서 채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가 제공한 조세감면은 우리나라의 국고손실이 外國企業의 居住地國의 國庫收入 增加로 이어지는 것만을 뜻하게 된다.

〈表 VI-2〉 우리나라의 外國企業에 대한 租稅減免 規模

(單位: 億원)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外國資本 輸入規模 <sup>1)</sup>	753	974	1,599	2,102	4,112	4,956	6,117
美    國	449	438	534	1,071	1,388	803	1,599
日    本	159	258	745	612	2,302	2,962	3,029
E    C <sup>2)</sup>	67	55	65	221	210	376	828
其    他	79	224	255	199	213	814	660
外國企業으로부터의 法人稅收入 <sup>3)</sup>	940	1,083	1,216	1,454	1,742	2,239	3,109
外國企業에 提供한 租稅減免 規模 <sup>3)</sup>	826	894	1,122	689	773	471	423

註: 1) 到着 基準임. 美달러貨로 된 수치를 年平均 對美달러換率로 換算 하였음.

2) 英國, 西獨,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 5개국 기준임.

3) 全業種 基準이면서 法人稅 以外的 所得稅 減免 等 外資導入法上의 租稅減免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資料: 李光哲, 『對韓進出 多國籍企業에 대한 租稅政策의 檢討』, 1991. 2.

財務部, 『財政金融統計』, 1994. 3~4.

1994년 6월 30일 현재 우리나라가 51개국과 체결한 租稅條約 중 나이지리아와 모로코와의 租稅條約을 제외한 49개의 租稅條約 가운데 35개국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看做外國稅額控除制度를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자본을 수출하는 나라 중 대표적인 나라인 美國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國庫損失을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表 VI-2〉에서와 같이 1982~88년간의 우리나라 總資本輸入規模(약 2조 613억원) 중 美國으로부터

터의 資本輸入規模(약 6,282억원)는 평균 30%의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같은 기간 동안 매년 평균 약 740억원 정도의 租稅減免을 외국기업에 제공하였으므로 매년 약 222억원 정도의 稅收損失이 投資誘引 效果를 거두지도 못하면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모의 조세감면이 實效性 있는 減免이 되기 위하여서는 조세조약의 상대체약국이 看做外國稅額控除制度를 채택하도록 租稅條約을 改正하든가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实效性 없고 국고손실만 가져오는 租稅減免을 廢止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세조약의 개정은 相對締約國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데 美國은 이 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완고한 반대입장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고 또 어떤 특정 나라로부터 투자된 자본에 대하여만 選別的으로 租稅減免을 廢止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마. 國內 證券讓渡에 대한 非課稅 規定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국내법상 외국인이 國內에서 證券讓渡所得을 거두는 경우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세조약을 통하여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거두어 들인 國內證券讓渡所得은 非課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국내거주자가 證券讓渡所得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것과 課稅衡平上 문제가 없는 규정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현재의 證券去來稅를 證券讓渡所得稅로 대체해 나갈 것인바, 이 경우 내국인만 과세되고 외국인(체약상대국의 외국인) 비과세되는 衡平性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본시장이 개방될 경우 가장 관심을 갖고 진출할 나라들로는 대량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日本과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발한 美國 및 EC諸國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당분간 資本輸入國이 될 전망이 크며 이 경우 막대한 稅收缺損이 예상된다. 따라서 外國人의 證券讓渡所得에 대하여도 이자나 배당에 대한 OECD모델조약의 제한세율(15%)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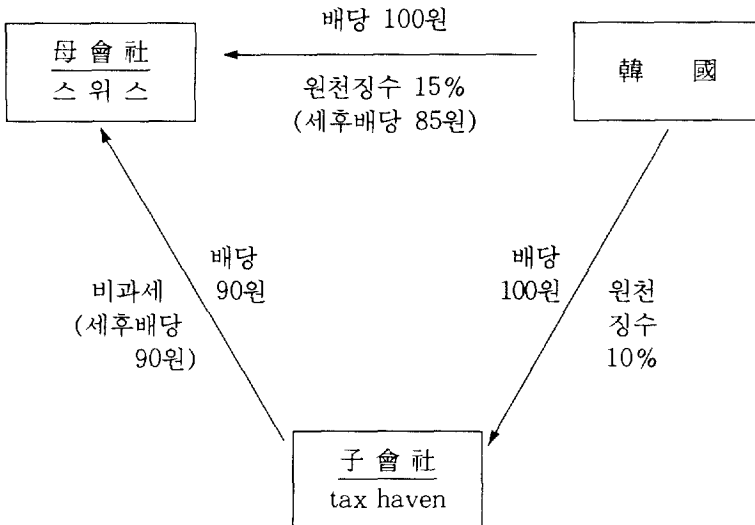
준의 源泉稅率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기존 조세조약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바. 租稅條約을 통한 租稅回避 防止

多國籍企業의 Treaty Shopping은 違法的 行爲는 아니나 租稅條約이 의도하고 있지 않는 條約上 租稅惠澤을 향유하기 위하여 영업상의 명확한 목적이 없이 특정 국가에 경제적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거래를 위장하는 것이므로 租稅條約 本來의 趣旨에 어긋나는 것이다.

[圖 VI-1]에서와 같이 스위스의 母會社가 우리나라에 株式投資를 하여 지급받는 配當金에 대해서는 15%를 源泉徵收함에 따라 85원을 수취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와 배당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이 15%보다 낮은 조세조약을 맺고 있으며 外國投資會社에 非課稅하는 tax haven을 이용할 경우 90원을 수취할 수 있다.

[圖 VI-1] Treaty Shopping을 통한 租稅回避의 例



租稅條約은 국제적 二重課稅를 배제함으로써 締約國間에 재화 및 용역의 이동과 자본 및 인적교류를 촉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租稅條約을 이용한 第3國 居住者의 租稅回避는 規制되어 야 한다.

Treaty Shopping은 어떤 국가가 國內法을 아무리 완벽하게 규정한다 할지라도 조세조약 규정이 미비한 경우에는 완전히 방지될 수 없다. 이는 租稅條約이 國內法에 優先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조약을 양국간에 체결할 때 第3國 居住者가 당해 조약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내용을 당해 조약에 규정하여야 한다. 즉, 美國과의 조약처럼 투자회사나 지주회사 등에 대한 條約特惠를 排除하거나<sup>4)</sup> 벨기에나 네덜란드와의 조약처럼 相對國居住者證明制度<sup>5)</sup>의

4) 우리나라가 美國과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지주회사나 투자회사를 통한 Treaty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條約特惠排除規定을 두고 있다. 韓·美租稅條約 第17條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타방채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配當, 利子, 使用料 또는 讓渡所得을 발생시키는 일방채약국의 법인은 다음의 경우에 제12조(배당), 제13조(이자), 제14조(사용료) 또는 제16조(양도소득)상의 惠澤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a) 特別措置에 의한 이유로 同 配當, 利子, 使用料 또는 讓渡所得에 대하여 상기 일방채약국이 동 법인에 부과하는 조세가, 동 일방채약국이 法人所得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은 경우.

(b) 同 法人資本의 25% 이상이 상기 一方締約國의 個人居住者가 아닌(또는 한국법 인의 경우에는 미국시민인) 1인 이상의 人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양 채약국의 책임 있는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달리 결정되는 경우.

이 규정은 第3國 居住者가 韓·美租稅條約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 이자, 사용료 및 양도소득에 대한 특혜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동 소득에 대하여 課稅上 特惠를 부여하고 있는 어느 締約國(美國 또는 韓國)에 있는 지주회사나 투자회사를 통한 租稅回避를 防止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소득에 대한 동 조세조약상 主要 惠澤으로는 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한 制限稅率과 원천지국에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非課稅를 들 수 있다.

5) 우리나라는 현재 벨기에 및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벨기에 또는 네덜란드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配當, 利子 또는 使用料 所得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가 이들 국가의 조세당국이 자국 거주자임을 확인하는 居住者證明書를 우리나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制限稅率 惠澤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效果는 제3국 거주자가 조세조약상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이 자국 거주자임을 확인할 때 당해 납세자의 海外源泉所得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導入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최근의 조약에서는 소득의 실질적 소유자를 말하는 收益的 所有者 概念(beneficial ownership concept)<sup>6)</sup>을 규정하여 第3國 居住者가 조세혜택을 받기 위해 相對 締約國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투자하고 租稅惠澤을 받으면서 投資所得을 수령하려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Treaty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租稅條約들에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租稅條約들의 改正이 불가피하다.

## 2. 現行 國內法上의 外國資本 課稅에 관한 其他 個別的인 問題點들

### 가. 人的對象의 判定基準

소득에 대한 과세는 居住地國 課稅原則과 源泉地國 課稅原則에 따라 개인에 있어서는 居住者와 非居住者로 법인에 있어서는 內國法人과 外國法人으로 구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租稅法規上 이러한 구별은 소득을 얻은 자가 어느 국가의 납세자인가를 결정하여 주며 한편으로는 각자의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결정하여 준다.

#### 1) 居住者 非居住者의 區分基準

현행 우리나라의 個人所得課稅는 居住者에게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고, 非居住者는 國內源泉所得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때 적용되는 居住者의 基準에 관하여 所得稅法 第1條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居所를 둔 個人”이라고 하

6) 利子·配當·使用料의 收益的 所有者가 相對締約國의 거주자인 경우에만 조약상 制限稅率이 적용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第3國 居住者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相對締約國에 있는 代理人을 통하여 투자를 하고 동 투자소득을 그 대리인을 통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소득의 實質的 受惠者가 아니므로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여기에서 “收益的 所有者”란 당해 소득의 實質的 所有者를 의미한다.

였으며, 非居住者는 “居住者가 아닌 者로서 國內源泉所得이 있는 個人”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同 施行令에서 住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資產有無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관정한다”고 하였으며 동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國內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직업이나 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居住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國內에 住所를 가진 것으로 본다 고 하였다. 居所에 대하여는 “住所 이외의 장소에 상당 기간 居住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一般的 生活關係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場所”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外國인이 外國기업의 國內지점 등에 派遣되어 가족과 함께 國內에 1년 이상 2년 미만 체류하는 때에도 居住者로 관정되어 全世界所得에 대하여 納稅義務가 발생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居住者 또는 內國法人의 해외과건 임직원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을 國外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가진 때에도 居住者로 보기 때문에, 거주자에 관한 기준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국가와 전세계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할 것인바, 二重居住者가 되어 重複課稅를 피할 수 없게 된다. 1~2년 정도 國內체류 거주자에 대한 國外源泉所得을 國內에서 綜合課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고 國外源泉所得에 대해서는 과세기술상 課稅根據의 捕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국적지과세국에게는 二重課稅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外國과건 내국인에 대한 居住者 判定基準을 보다 합리화하고 外國인의 경우는 永住居住者에게만 거주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경제적 생활관계에 부합될 것이다.

## 2) 內國法人과 外國法人의 區分

우리나라의 民法 및 商法에는 法人은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민법이나 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內國法人이며, 外國法律에 의하여 설립된 法人은 外

國法人으로 정하고 있어 本店所在地主義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外國의 경우 外觀的 基準이 아닌 법인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관리 지배되고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內·外國人을 구분하는 實質管理支配主義를 채택하는 국가도 있다. 이는 법인의 사업이 지배되는 이사회 등 법인의 최고의사결정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는 各國의 主權的인 事項이지만 各國의 內·外國法人을 구별하는 기준을 달리함으로써 특정 법인이 우리나라 이외에도 다른 나라의 내국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二重國籍 法人 문제가 발생된다. 과세상 내국법인으로 할 것인지 외국법인으로 할 것인지의 內·外國法人 區分 問題는 앞에서 언급한 課稅所得의 範圍, 課稅所得의 計算方法 등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그 구분 기준은 당해 기업의 이해와 관계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設立準據法主義에 따라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에 본점,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서 韓國 내에 관리 및 지배의 중심지가 있는 경우 外國法人으로 취급되는 등 僞裝會社(paper company)의 課稅處理 문제도 발생된다. 따라서 본점, 주사무소 기준 외에 管理支配中心地 基準이 보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 3) 支店의 課稅上 取扱

외국법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子會社 등 現地法人을 설립하는 방법과 지점, 사무소 등의 本店이 직접 진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現地 子會社와 같이 支店 등도 現行 法人稅法上 國內源泉所得이 발생하는 固定事業場을 구성하는 경우는 外國法人의 課稅方法을 준용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現地 子會社는 각 사업연도 소득뿐만 아니라 配當所得에도 조세를 부담하게 되나 支店의 경우는 配當所得에 관한 조세부담은 없기 때문에 국내진출 외국기업은 租稅負擔 回避를 위해 子會社보다는 支店을 선호하게 되어 자회사 형태와 지점 형태간에 조세부담상 불

균형을 가져 오고 있다. 직접투자 형태의 현지 자회사와 직접진출 형태의 지점과의 租稅負擔의 衡平을 기하려는 이론적 배경에서 나타난 조세조약으로서는 현재 시행되는 프랑스, 캐나다, 濠洲, 필리핀과의 조세조약이 있다. 이들 국가와의 租稅條約에서는 支店利潤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후 소득에 대한 支店稅(branch tax)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支店이나 子會社의 租稅負擔이 동일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國內法上의 節次, 稅率 등에 관한 規定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되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국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지점, 자회사 중 어느 형태라도 조세부담이 동일한 데 비하여 해당국의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租稅負擔上 差異가 나타난다.

支店과 子會社間에 租稅負擔上 差異를 둘 필요가 없다면 우리나라도 支店利潤課稅制度를 도입하여 그 對象을 普遍化하거나 조세조약상 지점소득과세 규정이 있는 국가에 대하여서 만이라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固定事業場 關聯 課稅問題

우리나라의 固定事業場 關聯條項은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OECD기준보다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고 외국법인의 국내건설공사를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하는데 建設期間에 대한 制限規定이 없는 등 외국으로부터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또 固定事業場에 귀속되는 課稅標準을 결정하는 우리나라 國稅廳의 慣行에 대하여도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sup>7)</sup>.

#### 다. 移轉價格 課稅制度

우리나라의 移轉價格 課稅制度에서 獨立企業間 價格을 찾아내는

7) 이는 제Ⅲ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방법은 比較可能 第3者價格法, 再販賣價格法, 原價加算法, 其他 合理的인 方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바, OECD기준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OECD기준에서는 再販賣價格法과 原價加算法에 적용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한 韓國에서는 기술이전, 자금대여, 서비스거래에 대하여서 상품거래에 준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各 去來別 特性의 고려가 미흡하다. 그리고 移轉價格 決定方法 중에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상품거래의 경우 比較可能第3者價格法을 적용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再販賣價格法과 原價加算法 중 실현이 가능한 것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規定을 改正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原價加算法과 再販賣價格法 중 어느 것이 獨立企業間原則에 더 적합한가 하는 것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위의 세 가지 방법이 모두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다음으로 其他 合理的이라고 認定되는 方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형재산의 이전거래에 관한 경우 시장가격과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간에는 상응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原價加算法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 따라서 比較可能第3者價格法, 再販賣價格法 그리고 其他 合理的인 方法의 순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서비스를 받는 업체가 동종의 서비스를 다른 업체에게 제공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서비스에 대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의 적용순위는 比較可能第3者價格法, 原價加算法 그리고 其他 合理的인 方法으로 改正되어야 한다.

法人稅法 施行令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特殊關係者의 범위가 국제적 관례와 차이가 있다. 同法 施行令 제46조 제2항에서는 소액주주를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라고 규정

되어 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少額株主의 範圍를 좁게 규정한 것이고 따라서 特殊關係者의 範圍를 넓게 해석한 셈이 되며 國內源泉所得을 넓게 잡은 것이다. 반대로 同法 施行令 제46조 제5항에서는 해당 법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만을 特殊關係者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으로 國際社會에서 third-tier까지 特殊關係者의 範圍를 擴大시키는 것에 비하여 이러한 점에서는 우리나라가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좁게 두고 있는 것이다.

#### 라. 使用料所得의 課稅에 관한 問題

使用料所得의 課稅에 있어서 우리나라 제도는 使用代價뿐만 아니라 讓渡代價까지 사용료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OECD모델조약에서는 使用代價에 대한 지급금만 규정하고 讓渡代價에 대한 지급금은 사용료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1992년의 OECD모델條約 改正에서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사용 또는 사용의 대가는 제외하였는데, 이는 使用料 所得에서 設備貸與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設備貸與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모델조약에 따르면 使用料所得이 아니라 事業所得에 해당된다. 국내 稅法에는 운수장비의 대여는 賃貸所得(法人稅法 제55조 제1항)으로 규정하였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使用料所得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용료소득의 범위를 OECD모델조약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조세조약 중 美國과의 租稅條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代價를 支給하는 國家에 사용료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韓美租稅條約의 경우에는 使用 또는 使用할 權利의 代價로 규정하여 使用地를 사용료소득의 원천으로 규정하고 있다. 國內法에서는 法人稅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자산,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使用地主義와 支給地主義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1988년 稅法改正 이전의 경우에는 使用地主義만 규정하였는데, 1988년 稅法改正에서 국내에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는 使用地主義와 支給地主義를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OECD국가들로부터 使用料所得 範圍를 너무 擴大解釋하는 것으로 자주 지적받고 있다.

#### 마. 國內源泉所得 範圍의 不明確

國內稅法上 內國法人이 발행한 有價證券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國內源泉所得이 되어 과세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과세가 불가능하다. 즉, 현행 稅法에는 內國法人의 出資證券 및 株式과 內國法人 또는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이 發行한 其他 有價證券을 讓渡함으로써 發生하는 所得을 國內源泉所得으로 규정하고 과세토록 되어 있으나 外國에서 賣買되는 경우 그 세액징수가 양도인의 자진납부 또는 양수인의 원천징수에 의해서만 가능하여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이를 이행치 아니하더라도 우리나라 課稅當局이 달리 이를 強制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 바. 推計課稅에 관한 問題

法人稅法 第32條 第3項에 정부가 納稅者의 各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推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同法 施行令 第93條 第1項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由를 “1. 所得金額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帳簿 또는 證憑書類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未備

또는 虛僞인 때, 2. 帳簿의 내용이 施設規模, 從業員數와 原資材,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虛僞임이 明白한 때, 3. 帳簿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虛僞임이 明白한 때”로 열거하고 있는데 記帳內容에 허위가 있는 경우 虛僞라고 판단할 수 있는 根據를 제외하고 보충근거를 바탕으로 課稅標準을 결정하는 것이 다음 순서임이 타당한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推計課稅를 통하여 稅額을 決定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비추어 보아 지나친 대응이다.

#### 사. 相互合議節次 進行中の 國內法上 權利救濟 節次の 進行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租稅條約의 兩 締約國은 해외진출법인의 과세문제에 대해 납세자의 요구에 따라 相互合議節次(mutual agreement procedure)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경우 美國 등에서는 既定된 稅額을 징수하는 것을 猶豫시켜 주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국내 규정에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 國內規定으로는 相互合議節次를 사유로 國內法上의 行政救濟節次를 延期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납세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行政制度 改編이 고려될 수 있다.

### 3. 現行 國內法上 未備된 外國資本 課稅規定

#### 가. 過少資本規制

국가간 자본이동의 두 가지 통로인 出資資本 형태의 資金供與와 貸出에서 생기는 收益, 즉 配當과 利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支給利子에 대해서는 費用控除를 인정하나 配當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치 않는다. 이로 인하여 해외의 모기업은 실제적인 지분소유를 대출인 것처럼 위장시키려는 경향이 발생하게 되는데 各國은 이를 過少資本

規定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자소득에 대한 分離課稅 및 이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이 綜合所得稅率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과소자본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各種의 支給利子 損金不算入 規定을 마련해 놓고 있을 뿐이다. 즉, 우리의 法人稅法 規定에는 주주 등 특수관계자로부터의 借入金에 대하여 지불한 利子率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초과되는 이자를 損金不算入하고 이를 配當處分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移轉價格에 대한 稅制이지 過少資本稅制은 아닌 것이며 주식취득자금 등에 대하여 부채 대 자본비율에 따라 支給利子を 損金不算入하는 규정도 있으나 이 역시 負債를 資本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없어 배당처분이 아닌 기타 社外流出로 처분하므로 過少資本制度라 할 수 없다.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생소한 이러한 과소자본에 대한 규제가 외국에서는 매우 흔한 조세문제로 등장하기 때문에<sup>8)</sup> 우리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看過하여 不利益을 받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外國企業의 租稅回避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불이익에 대한 對外協商의 根據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過少資本規制 規定 마련의 필요성은 있으나 이를 국내에서 시행할 경우 대부분의 국내기업이 차입금을 통한 資本調達比重이 높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인하여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국내기업의 활동상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어 아직 시행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 나. 國內外居住者에 대한 證券讓渡差益에 대한 資本利得 課稅의 衡平性 問題

國內居住者에 대한 증권양도차익 비과세제도는 非居住者의 證券

8) 美國에서는 이 제도가 Earnings Stripping Rules라는 이름으로 외국기업을 규제하고 있다.

讓渡差益에 25%를 과세하는 것과 함께 內·外國人間의 衡平課稅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즉, 국내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個人投資者의 證券讓渡差益에 非課稅하는 제도는 內·外國人間 衡平課稅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과세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불가피하나, 증권매매 이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各 證券社의 電算網이 미비한 상황에서 資本利得稅 導入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외국자본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자본이득에 비과세를 한다는 것도 막대한 稅收減少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 다. 租稅條約의 精神에 違背되는 國內法 規定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수의 조세조약에 看做外國稅額控除制度和 間接外國稅額控除制度가 규정되어 있으나 1986年の 稅法改正으로(租稅 減免規制法 제28조의 제3항) 看做外國稅額控除制度를 실현할 수 있는 국내법규정이 마련되었을 뿐 아직 間接外國稅額控除制度를 실현할 국내법적 규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 VII. 要約 및 結論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資本流出에 관한 문제와 資本流入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 資本流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外國資本에 대한 課稅制度이다. 外國資本에 대한 課稅政策의 變化는 外國자본의 流入量과 流入形態, 그리고 그로부터의 租稅收入을 變化시킬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外國자본이 直接投資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그 유입량의 변화에 미치는 外國資本에 대한 課稅政策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그로부터의 조세수입의 변화에는 중점을 두지 않는다. 이는 조세수입보다는 外國資本이 우리에게 주는 技術移轉的, 巨視經濟的 效果가 더 큰 경제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國家間 資本移動은 크게 直接投資와 증권시장을 통한 포트폴리오投資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별로 우리나라의 外國資本 流入의 推移를 살펴보면 外國人 直接投資는 총투자 기준으로 1962~66년간의 약 5천만달러에서 1977~81년간의 약 7억달러를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의 빠른 성장속도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미흡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外國人 直接投資가 198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 1982~86년간은 총투자 기준으로 약 18억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이전의 5년간에 비해 145.3%의 증가속도를 보였고 1987~91년간은 56억달러를 상회함으로써 218.8%의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證券市場 開放으로 인한 海外資本 流入規模도 급

속히 불어나고 있는데, 1992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개방된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外國人 株式投資는 순액 기준으로 개방원년인 1992년에 20억달러를 상회함으로써 外國人直接投資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자본이 유입되게 되었고 1993년에는 약 57억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280.0%의 매우 급속한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다 올해 7월 1일의 債券市場 開放으로 인한 해외의 우리나라에 대한 債券投資까지 감안한다면 해외자본의 유입이 보다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海外資本 流入規模의 增加趨勢는 기본적으로 한국증권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에 기인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한국경제의 국제적 위치의 지속적 상승에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開放要求에 부응한 韓國政府의 漸進的 開放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商品交易에서의 不均衡 深化로 선진제국들이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서비스產業(특히 金融產業)에 대한 개방압력이 높아졌고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국제 분산투자를 위한 韓國證券에 대한 需要가 增大함으로써 외국투자자의 증권시장 직접참여에 대한 개방과 證券業 參與 要求가 점증되어 왔다.

이렇게 자본거래 규모가 증대되고 한국이 기존의 資本輸入國的 立場에서 資本輸出國의 立場도 아울러 지니게 됨에 따라 종래에 자본수입국으로서 외자도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의 外國資本에 대한 課稅制度를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외국자본에 대한 租稅支援의 必要性和 우리나라의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제도가 제공하는 租稅支援의 實效性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국자본에 대한 課稅制度의 改編方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外國資本에 대한 課稅制度의 問題點과 改編方案을 본 논문에서는 開放化 時代의 企業課稅制度 改編方案, 二重課稅 排除方法의 評價 및 改編方案, 그리고 기타 外國資本 課稅와 관련한 問題點과 改編方案으로 부문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開放化 時代의 韓國의 企業課稅制度 改編方案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韓國의 現行 企業과세제도를 必要稅前收益率 算出을 통하여 평가해 보았고 韓國의 現行 投資支援制度의 實效性을 분석함으로써 그 改編方案을 제시해 보았다.

一般投資分野에서의 韓國의 必要稅前收益率은 전체 11개국 중에서 독일, 네덜란드, 태국보다는 낮으나 미국, 대만보다는 높고 그의 국가들과는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각국의 선별된 特別投資分野에 대한 投資의 必要稅前收益率을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韓國은 英國, 獨逸, 네덜란드보다는 낮으나 그의 모든 다른 경우들보다는 必要稅前收益率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法定法人稅率의 引上이 必要稅前收益率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閉鎖經濟의 경우와 開放經濟下的 경우를 구분하여 각 경우에 개별 국가들에 있어서 기업의 필요세전수익률 변화를 살펴보았다.

閉鎖經濟下的 시뮬레이션에서는 모든 나라에서 法定法人稅率을 增加시키면 필요세전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두 가지 방향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우선 첫번째로 한 나라에서 세제상 허용된 減價償却이 投資財 實質磨耗分の 經濟的 價値보다 높다면 이로 인한 투자지원 효과는 세율과 비례하게 되므로 稅率引下 自體로 인한 投資支援 效果가 減價償却制度를 통한 投資支援 效果의 減少를 통해 一定部分 相殺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法人稅率의 引上이 기업의 內部割引率을 하락시켜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를 두고 稅率引上이 투자자의 純利益을 增大시켰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기업가의 순이익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投資가 促進되는 것은 이 모델에서 가정된 實物投資와 金融投資間的 代替關係 때문이다. 모델에서 모든 기업가에게는 명목이자율만큼의 수익률을 보이는 金融投資가 實物投資의 機會費用

이며 金融投資와 實物投資 모두 그 수익은 法人稅로써 과세된다. 實物投資는 감가상각규정에 의해 투자지원 효과를 볼 수 있음에 반해 金融投資는 마찬가지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면서도 투자지원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法人稅率이 높을수록 高稅率이 金融 및 實物投資에 함께 적용되는 반면 감가상각규정으로 인한 투자지원 효과는 커지기 때문에, 法人稅率의 상승은 金融投資보다 實物投資를 有利하게 하여 投資를 促進시킨다는 결론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본 논문이 중점을 두고 있는 開放經濟下에서의 必要稅前收益率은 閉鎖經濟下에서와 조금 다르다. 法人稅率의 引下가 각국의 必要稅前收益率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관한 조사에서 발견된 결과는 法人稅率의 引下가 미약하기는 하나 必要稅前收益率을 낮추어 준다는 것이다. 이는 위의 閉鎖經濟下의 경우에 비해 開放經濟下에서는 기업이 居住地國 또는 國際市場 利率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源泉地國의 法人稅率 引上이 企業의 內部割引率을 하락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美國, 日本 및 유럽의 대표적인 資本輸出國들 그리고 아시아의 競爭國家와 韓國을 비교할 때 課稅 및 投資支援制度가 이들 나라에 투자되는 자본에 어떠한 수준의 必要稅前收益率을 요구하는지에 관해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현행 제도상 一般投資分野에 있어서 韓國에 대한 投資는 높은 必要稅前收益率을 요구하지 않으나 特別投資分野에 있어서는 비교대상 국가들에 대한 투자보다 상당히 높은 必要稅前收益率을 감수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제도는 特別投資分野의 경우 外國에 비하여 過重하다.

둘째, 개별 국가들에 있어서 분석에서 法定法人稅率을 引下하는 것이 기업의 必要稅前收益率을 낮추어 주는 데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법인세율 인하를 통하여 외국자본 유치에 뚜렷한 효과를 보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셋째, 稅額控除를 포함한 投資支援金制度가 가장 강력한 지원수단이다. 또 特別減價償却制度도 一般減價償却制度和 결합될 경우 상당한 지원효과가 있다.

넷째, 법인세율 인하, 고속감가상각제도, 일반감가상각제도, 그리고 조세휴일제도는 個別的으로 볼 때 支援效果가 微弱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制約條件下에서 얻어진 결론이므로 그 자체가 정책결정에 직접적인 示唆點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우선 위의 분석은 Debt Financing을 전제로 하였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함께 고려하지 못한 Equity Financing의 경우에는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 Debt Financing 중에서도 투자자의 居住地國에서 投資額을 借入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투자 원천지국의 현지차입은 고려하지 않았다. 두번째로 위의 분석은 투자자의 居住地國에서 源泉地國에서 送金된 利子所得에 대하여 外國稅額控除制度를 통해 二重課稅를 防止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는데 이는 현실에 부합되는 전제조건이다. 세번째로 實物投資의 대체로서 항시 利子率  $i$ 의 수익이 가능한 金融投資를 상정하였는데 이는 閉鎖經濟下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으나 開放經濟下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이다. 앞의 분석결과는 이처럼 여러 가지 전제조건하에서 얻어진 결론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조건들(특히 첫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결론도 가능하다. 즉, 다른 조건하에서 예컨대 Equity Financing이나 留保所得으로 投資財源을 조달할 경우 한 나라에서의 法人稅率 引下는 企業의 競爭力 強化와 經營與件의 改善, 나아가 外國으로부터의 投資增大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편 외국자본을 우리나라에 유치한다는 투자유인 정책목표 이외에 租稅收入의 確保라는 정책목표에서 볼 때에는 外國稅額控除制度가 일반적으로 시행되어지고 있는 국제관계에서는 法人稅率의 引下, 投資稅額控除制度, 租稅休日制度보다 減價償却制度의 改善이 더욱

바람직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稅率引下를 통한 投資支援은 투자자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에서 看做外國稅額控除制度를 채택하지 않는 한 외국인투자에 전혀 동기유발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租稅減免보다는 內國人投資者와 外國人投資者에게 同等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리고 必要稅前收益率을 줄여 줄 수 있는 租稅支援制度가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減價償却制度의 改善을 통한 투자지원이 必要稅前收益率을 줄여주는 좋은 투자지원제도로 보여지며 다음으로 특정 산업분야의 지원에는 投資稅額控除制度를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國際的 二重課稅 排除方法으로 일반적으로는 效率性的 觀點(국제간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서 外國稅額控除制度가 선호되고 있으나 조사 결과 外國稅額控除制度가 오히려 公平性的 觀點에서 外國所得免稅制度보다 우월하다고 보여지고 效率性的 觀點에서는 그 우월성의 판단이 뚜렷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자본수출국의 경제적 이해에는 稅收確保 次元에서는 外國稅額控除制度가 外國所得免稅制度보다 적합하나 資本輸出國의 包括的인 經濟的 利害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外國所得免稅制度가 더 우월하다. 그러나 資本輸入國의 입장에서는 外國稅額免稅制度가 外國稅額控除制度보다 명확히 선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資本輸出國의 입장과 資本輸入國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高稅率國家로서의 資本輸出國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外國所得免稅制度가 資本輸出國에서의 우리의 包括的인 經濟的 利害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본수출국인 동시에 자본수입국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外國稅額控除制度와 外國所得免稅制度가 각각 長短點이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으나 OECD 加入과 더불어 資本輸出國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입장이 더 중요시되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 앞으로 계속 外國稅額控除制度를 실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開發途上國들과의 租稅條約 締結에서는 OECD모델에 가깝도록 그리고 先進國들과의 조세조약체결시에는 UN모델을 근간으로 하는 條約締結을 목표로 함으로써 經濟的 利害의 極大化를 도모하고 있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는 조약의 각 세부조항 중에서 우리의 經濟的 利害에 유리한 쪽으로 UN모델이나 OECD모델 중에서 선택하여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 등의 고정사업장 판정시에 그 期限 등은 UN모델을 따르고 있고 그외 其他 固定事業場 關聯規定은 OECD모델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정책은 正反對의 相對締約國의 입장과 직면하게 된다. 즉,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되도록이면 OECD모델에 가까운 조세조약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개발도상국들은 UN모델에 따르기를 원함으로써 租稅條約 締結時 摩擦이 생긴다. 또 상대체약국들은 우리나라가 상대체약국에 따라 조세조약 정책을 달리하는 것을 비판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OECD모델이나 UN모델 중 선택하여 장래에는 조세조약체결이나 개정시 이를 따르고 一貫된 政策을 유지함으로써 相對締約國들의 理解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OECD모델과 UN모델 중 韓國이 OECD에 가입하고 이 조약이 先進國들간의 自由로운 資本交流에 適合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를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國際的 二重課稅 排除의 일반적인 방법인 外國稅額控除制度와 外國所得免除制度가 조세조약에서는 選擇的으로 채택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資本輸出國에는 外國稅額控除制度가 그리고 資本輸入國에게는 外國所得免除制度가 有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조세조약체결시 자본을 수출하는 입장의 나라와 자본을 수입하는 입장의 나라 사이에서 二重課稅 排除 方法의 選擇에서 摩擦의 소지가 크다. 그러나 자본수출국에는 외국세액공제제도가 그리고 자본수입국에는 외국소득면세제도가 유리하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조세조약 체결 당사자가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으로 뚜렷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즉, 상호간의 자본교류가 활발한 경우) 어떤 二重課稅 排除 方法이 國際間的 資源의 效率的 配分과 國際間 稅源의 公正한 配分에 適合한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우월하다고 보여지는 이중과세 배제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우리의 二重課稅 排除 方法의 基本原則으로 함으로써 조세조약체결시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의 二重課稅 排除 方法에 대한 評價는 一般的인 資本輸出國과 一般的인 資本輸入國의 經濟的 利害에 비추어 본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해에 비추어 본다면 조금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자본수출국과는 달리 高稅率國家로 판단되기 어렵다. 즉, 우리나라가 우회수출을 위하여 선진국 등에 자본수출을 하는 경우 그 나라들에 비하여 고세율국가 아니므로 위의 資本輸出國의 포괄적인 경제적 이해에 外國所得免除制度가 더 적합하다는 평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 資本輸入國으로서의 우리의 입장으로는 外國所得免除制度가 유리하다.

우리나라가 일본 및 인도네시아와의 조세조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事業所得計算方法으로서의 總括主義는 OECD規範에 비추어 보아 상당히 동떨어진 방법이다. 이로 인하여 일본계 국내진출기업으로부터의 과세수입이 줄어들더라도 이를 歸屬主義 原則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投資促進 效果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기업에 제공하는 租稅減免이 그 기업에게 실제적인 혜택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에 투자를 계속하려는 動機가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外國企業의 居住地國이 看做外國稅額控除制度를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에서 채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가 제공한 조세감면은 우리나라의 國庫損失이 外國企業의 居住地國의 國庫收入 增加로 이어지는 것만을 뜻하게 된다. 그러나 租稅條約의 改正은 相對締約國의 同意를 전제로 하는데 美國은

이 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완고한 반대입장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고 또 어떤 특정 나라로부터 투자된 자본에 대하여만 選別的으로 租稅減免을 廢止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국내법상 外國인이 國內에서 證券讓渡所得을 거두는 경우 課稅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세조약을 통하여 欸약당사국의 거주자가 거두어 들인 國內證券讓渡所得은 非課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國內居住者가 證券讓渡所得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것과 課稅衡平上 문제가 없는 규정이다.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우리나라도 현재의 證券去來稅를 證券讓渡所得稅로 대체해 나갈 것인바, 이 경우 내국인만 과세되고 외국인(欸약상대국의 외국인) 비과세되는 衡平性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본시장이 개방될 경우 가장 관심을 갖고 진출할 나라들로는 대량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日本과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발한 美國 및 EC諸國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당분간 資本輸入國이 될 전망이 크며 이 경우 막대한 稅收缺損이 예상된다. 따라서 外國人の 證券讓渡所得에 대하여도 利子나 配當에 대한 OECD모델條約의 制限稅率(15%) 수준의 源泉稅率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既存 租稅條約을 改正함이 바람직하다.

## 〈參 考 文 獻〉

- 金融產業發展審議會 國際金融分科委員會, 『外換 및 資本去來自由化  
推進方向』, 1993. 5. 10.
- 金裕燦, 「東유럽國家에 대한 投資의 有效限界租稅負擔」, 『韓國租稅  
研究』, 第8卷, 韓國租稅學會, 1992.
- 南相祐 外, 『資本市場開放의 推進方向』, 韓國開發研究院, 1991, p. 4.
- 大韓商工會議所·韓國租稅研究院, 『企業의 減價償却實態와 政策示唆  
性』, 1994. 6.
- 安鍾錫, 『租稅政策이 對內外 直接投資에 미치는 效果 分析』, 韓國租  
稅研究院, 近刊豫定.
- 尹建永·林周瑩, 『租稅支援制度의 現況과 改善方向』, 研究報告書 93  
-04, 韓國租稅研究院, 1993. 10.
- 李光哲, 「對韓進出 多國籍企業에 대한 租稅政策의 檢討」, 1991. 2.
- 張世元, 「固定事業場에 관한 研究」, 『學術論文集』, 第2輯, 韓國國際  
財政協會, 1985.
- 財務部, 『財政金融統計』, 各號.
- 財務部 稅制室 國際租稅課, 『日本의 國稅解說』, 1993. 8.
- \_\_\_\_\_, 『日本의 稅制概要』, 1993. 3.
- 財務部·韓國產業銀行, 『韓國外資導入 30年史』, 1993.
- 全周省, 「國際化 時代의 企業課稅 政策」, 『開放化·國際化에 따른 財  
政·金融政策의 方向』, KTI 開院 2周年紀念 심포지엄 資  
料, 1994. 11.
- 鄭德龜, 「外國人 投資誘致 基本戰略」, 外國人 投資環境 改善方案에  
관한 討論會 發表資料, 1994. 5. 19.

- 統計廳, 『主要海外經濟指標』, 1993.
- \_\_\_\_\_, 『韓國經濟指標』, 1993, 4/4.
- 韓國租稅研究院, 『金融所得綜合課稅와 開放化·國際化를 위한 稅制改革方案』, 1994. 6, p. 62.
- \_\_\_\_\_, 『아시아 主要國의 稅法』, 內部研究用 資料, 1994. 5.
- \_\_\_\_\_, 『外國의 減價償却制度』, 內部研究用 資料, 1994. 5.
- \_\_\_\_\_, 『EC加盟國의 稅法』, 內部研究用 資料, 1994. 4.
- \_\_\_\_\_, 『G7의 稅制』, 內部研究用 資料, 1994. 5.
- 韓國證券去來所, 『主要 證券·經濟 統計』, 1992.
- \_\_\_\_\_, 『證券統計年報』, 1992.
- 玄鎮權, 「減價償却政策의 改善方向」, 韓國租稅研究院 政策討論會 主題發表, 1994. 5.
- 臺灣 中央銀行, 『金融統計月報』, 各號.
- Andersson, K., "Taxation and the Cost of Capital in Hungary and Poland," *IMF Staff Papers*, Vol. 38, No. 2, 1991, pp. 327~355.
- Bird, R.M. and M. Sato, "International Aspects of the Taxation of Corporation and Shareholders," *IMF Staff Papers*, Vol. 22, 1975, pp. 384~455.
- Bird, R.M. and O. Oldman, *Tax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4th Ed., 1990, p. 130.
- Bond, E.W. and L. Samuelson, "Strategic Behaviour and the Rules for International Taxation of Capital," *The Economic Journal*, Vol. 99, 1989, p. 1107.
- Cho, Yoon Je and Jong Seok An, "Transfer Pricing Regulations and the Practices of Foreign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Korea," Working Paper 94-03, Korea Tax Institute, May 1994.

- Feldstein, M. and D. Hartman, "The Optimal Taxation of Foreign Source Investment Incom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79, pp. 624~626.
- Findlay, C.C., "Optimal Taxation of International Income Flows," *The Economic Record*, 1986, pp. 209~211.
- Giovannini, A., "National Tax Systems vs. the European Capital Market," *Economic Policy*, Vol. 4, 1989, pp. 345~386.
- Hall, R.E. and D.W. Jorgenson, "Tax Policy and Investment Behavior,"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7, 1967, pp. 391~414.
- Hamada, K., "Strategic Aspects of Taxation on Foreign Investment Incom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0, 1966, p. 368.
- Hartman, D., "The Effect of Taxing Foreign Investment Incom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3, 1980, p. 229.
- IBFD, *The Taxation of PE*, I.J.J. Burgers(ed.), Amsterdam, 1993.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Nov. 1993.
- Jacobs, O.H.(ed.), *Internationale Unternehmensbesteuerung*, München: Beck, 1991, pp. 224~225.
- King, M.M. and D. Fullerton(eds.), *The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A Comparative Study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Sweden and West German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Krause-Junk, G., "Volkswirtschaftliche Aspekte des deutsch-kanadischen Doppelbesteuerungsabkommens," L. Fischer (ed.), *Investitionen in Kanada*, Baden-Baden: Nomos-Verlag, 1985, p. 105.
- Mössner, J.M., and others, *Steuerrecht international tätiger Unternehmen*, Köln: Dr. Otto Schmidt KG, 1992, p. 76.

- Musgrave, P.B., *United States Taxation of Foreign Investment*, Cambridge, 1969.
- Musgrave, R.A., *Fiscal System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69, pp. 243~255.
- Musgrave, R.A. and P. B. Musgrave, "Inter-Nation Equity," R.M. Bird and J.F. Head(eds.), *Modern Fiscal Issues: Essays in Honor of Carl S. Shoup*,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2, p. 68.
- Schneider, D., *Investitionen, Finanzierung und Besteuerung*, Wiesbaden: Opladen, 1990, p. 206.
- Sinn, Hans-Werner, *Capital Income Taxation and Resource Allocation*, Amsterdam : North-Holland, 1987.
- \_\_\_\_\_, "Der Dollar und die amerikanische Steuerreform," *Hamburger Jahrbuch für Wirtschafts-und Gesellschaftspolitik*, Vol. 32, 1987, p. 17.
- \_\_\_\_\_, *Kapitaleinkommensbesteuerung*, Tübingen: J.C.B. Mohr, 1985, p. 131, 172.
- \_\_\_\_\_, "U.S. Tax Reform 1981 and 1986: Impact on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nd Capital Flows," *National Tax Journal*, Vol. 61, pp. 322~340.
- \_\_\_\_\_, "Why Taxes Matter: Reagan's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and the US Trade Deficit," *Economic Policy*, 1985, pp. 240~250.
- Sørensen, Peter B., "Optimal Capital Taxation in a Small Capital-importing Economy," Vito Tanzi(ed.), *Public Finance, Trade and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44th Congress of the IIPF, Istanbul, 1988, p. 56.
- Williams, Robert L., "Permanent Establishments in the United States," *Tax Lawyer*, Vol. 79, No. 2, pp. 289~290.

〈附表〉 韓國의 租稅條約上 二重課稅 防止方法

(1994.6.30現在)

番 號	區分		所得免除	一般外國 稅額控除	看做外國 稅額控除	間接外國 稅額控除
	條約國名	該當國				
1	日 本	韓 國	×	○	×	×
		日 本	×	▽	△	▽
2	泰 國	韓 國	×	▽	×	×
		泰 國	×	▽	×	×
3	美 國	韓 國	×	▽	×	△
		美 國	×	▽	×	△
4	덴 마 크	韓 國	×	▽	×	△
		덴 마 크	×	○	△	△
5	캐 나 다	韓 國	×	▽	×	×
		캐 나 다	×	▽	△	×
6	벨 기 에	韓 國	×	○	×	×
		벨 기 에	☆	△	△	×
7	노르웨이	韓 國	×	▽	×	×
		노르웨이	☆	△	△	×
8	濠 洲	韓 國	×	▽	×	×
		濠 洲	×	▽	△	×
9	뉴질랜드	韓 國	×	▽	×	×
		뉴질랜드	×	○	△	×
10	英 國	韓 國	×	▽	×	△
		英 國	×	▽	△	△
11	獨 逸	韓 國	×	○	×	×
		獨 逸	☆	△	△	×
12	프 랑 스	韓 國	×	○	×	×
		프 랑 스	☆	△	△	×

〈附表〉의 繼續

番 號	區分		所得免除	一般外國 稅額控除	看做外國 稅額控除	間接外國 稅額控除
	條約國名	該當國				
13	싱가포르	韓 國	×	√	△	×
		싱가포르	×	√	△	×
14	네덜란드	韓 國	×	○	×	×
		네덜란드	×	○	△	×
15	스 위 스	韓 國	×	√	×	×
		스 위 스	☆	△	△	×
16	핀 란 드	韓 國	×	√	×	×
		핀 란 드	×	○	△	×
17	스 웨 덴	韓 國	×	√	×	×
		스 웨 덴	×	○	△	×
18	말레이시아	韓 國	×	√	△	×
		말레이시아	×	√	△	×
19	스리랑카	韓 國	×	○	△	×
		스리랑카	×	○	△	×
20	룩셈부르크	韓 國	×	○	×	×
		룩셈부르크	×	○	△	×
21	인 도	韓 國	×	○	△	×
		인 도	×	○	△	×
22	방글라데시	韓 國	×	○	△	×
		방글라데시	×	○	△	×
23	필 리 핀	韓 國	×	○	△	×
		필 리 핀	×	○	×	×
24	터 키	韓 國	×	○	△	×
		터 키	×	○	△	×

〈附表〉의 繼續

番 號	區分		所得免除	一般外國 稅額控除	看做外國 稅額控除	間接外國 稅額控除
	條約國名	該當國				
25	파키스탄	韓 國	×	√	△	×
		파키스탄	×	√	△	×
26	오스트리아	韓 國	×	○	×	×
		오스트리아	☆	△	△	×
27	인도네시아	韓 國	×	√	△	×
		인도네시아	×	○	△	×
28	브 라 질	韓 國	×	√	△	△
		브 라 질	×	√	△	△
29	이탈리아	韓 國	×	√	△	×
		이탈리아	×	○	△	×
30	튀 니 지	韓 國	×	○	△	×
		튀 니 지	×	○	△	×
31	헝 가 리	韓 國	×	○	×	×
		헝 가 리	☆	△	×	×
32	아일랜드	韓 國	×	√	△	×
		아일랜드	×	√	△	×
33	폴 란 드	韓 國	×	√	×	×
		폴 란 드	×	○	×	×
34	몽 골	韓 國	×	√	×	×
		몽 골	×	○	×	×
35	체 코	韓 國	×	√	○	×
		체 코	×	○	○	×
36	슬로바키아	韓 國	×	√	○	×
		슬로바키아	×	○	○	×

## (附表)의 繼續

番 號	區分		所得免除	一般外國 稅額控除	看做外國 稅額控除	間接外國 稅額控除
	條約國名	該當國				
37	러 시 아	韓 國	×	√	×	×
		러 시 아	×	○	×	×
38	이 집 트	韓 國	×	○	△	×
		이 집 트	×	○	△	×
39	中 國	韓 國	×	○	△	×
		中 國	×	○	△	△
40	베 트 남	韓 國	×	○	△	×
		베 트 남	×	○	×	×
41	쿠웨이트	韓 國	×	○	△	×
		쿠웨이트	×	○	△	×
42	루마니아	韓 國	×	○	×	×
		루마니아	×	○	×	×
43	불가리아	韓 國	×	○	×	×
		불가리아	×	○	×	×
44	피 지	韓 國	×	○	△	×
		피 지	×	○	×	×
45	스 페 인	韓 國	×	○	×	×
		스 페 인	×	○	×	×
46	멕 시 코	韓 國	×	○	△	×
		멕 시 코	×	○	×	△
47	포르투갈	韓 國	×	○	×	×
		포르투갈	×	○	×	×
48	그 리 스	韓 國	×	○	△	×
		그 리 스	×	○	△	×

〈附表〉의 繼續

番 號	區分		所得免除	一般外國 稅額控除	看做外國 稅額控除	間接外國 稅額控除
	條約國名	該當國				
49	몰 타	韓 國	×	○	△	×
		몰 타	×	○	△	×

註：1. 해당국 중 韓國의 내용은 당해 조약에서 韓國이 韓國 居住者の 相對國 源泉所得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 二重課稅 防止方法을 의미하며, 相對國의 내용은 相對國이 自國 居住者の 韓國 源泉所得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 二重課稅 防止方法임. 각 부호가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許容  
 ×：不許  
 △：部分的 許容(세액공제로 인정되는 감면의 한도를 규정：보통 10% 정도)  
 √：國內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許容  
 ☆：累進附 免除

2. 모로코 및 나이지리아와 韓國間의 假署名된 租稅條約은 再協商을 통하여 내용이 修正되어야 하므로 제외하였음.

3. 日本의 경우 間接外國稅額控除制度를 國內법으로 수용하고 있음.

資料：財務部 稅制室 國際租稅課.